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767-14

한국의 인권통계 2023

2023. 11.



연구수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삶의질학회
연구책임자 한 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유은혜 (송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중우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김대훈 (스탯코리아 대표)

연구보조원 이시림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연구보고서는 연구자의 견해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 차

들어가며	1
I. 지역별 인권정책과 인권실태	5
1. 문제제기	7
2. 지역 단위 인권제도와 정책 현황	9
3. 연구 방법	15
4. 연구 결과	16
5. 결론 및 제언	36
II. 한국사회 혐오표현의 실태와 정책제안	39
1. 혐오표현 실태파악의 목적과 그 배경	40
2. 혐오표현 실태에 대한 기존 조사	42
3. 2023년 조사에 나타난 혐오표현 실태	44
4. 혐오표현에 대한 정책제언	64
III. 감염병 상황의 인권 쟁점에 관한 인식	69
1. 서론	70
2. 코로나19와 인권에 관한 기존의 논의	71
3. 인권의식실태조사를 활용한 코로나19와 인권상황 영향 요인에 관한 심층분석	85
4. 요약 및 결론: 감염병과 인권 정책에 관한 제언	111

IV. 인권통계의 분석: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격차	117
1. 인권통계의 작성	118
2. 계층 간 소득 격차와 사회안전망	119
3. 노동자 간 일자리 격차	126
4. 의료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	137
5. 디지털 정보화의 세대 간 격차	145
참고문헌	149
부록 1	155
부록 2	161

표 목 차

〈표 I-1〉 여러 수준에서의 인권의 제도화.....	8
〈표 I-2〉 광역 자치단체 수준의 인권 기본조례 제정 과정.....	10
〈표 I-3〉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인권 기본조례 제정 현황 (2023년 11월 현재).....	10
〈표 I-4〉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인권 관련 조례 제정 현황 (2023년 11월 현재).....	11
〈표 I-5〉 광역 자치단체 수준의 인권 기구 현황 (2022년 기준).....	13
〈표 I-6〉 광역 자치단체별 인권정책 현황 (2022년 기준).....	14
〈표 II-1〉 2023년 인권의식실태조사에 포함된 혐오 관련 문항.....	45
〈표 II-2〉 혐오표현 경험, 혐오표현 심각성, 혐오표현 법적규제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54
〈표 II-3〉 다중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56
〈표 II-4〉 인권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60
〈표 III-1〉 코로나19와 인권에 관한 국내 연구의 연구 주제.....	72
〈표 III-2〉 2022년 조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 설명.....	86
〈표 III-3〉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를 활용한 인권상황 영향 요인 검토 모형 구성 변수.....	88
〈표 III-4〉 코로나19가 인권 상황에 미친 영향에 관한 주요 요인의 선형회귀분석 결과.....	90
〈표 III-5〉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1순위와 그에 따른 인권 문제 인식.....	94
〈표 III-6〉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다항로지스틱회귀 분석 모형.....	95
〈표 III-7〉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선택 요인에 관한 다항로지스틱회귀 분석 결과.....	97
〈표 III-8〉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선택 요인 요약.....	99
〈표 III-9〉 코로나19 상황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교차분석.....	102
〈표 III-10〉 코로나19 상황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 다항로지스틱회귀 분석 모형.....	103
〈표 III-11〉 코로나19 상황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1순위) 선택 요인에 관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104
〈표 III-12〉 코로나19 상황의 심각한 인권 문제 선택 요인 요약.....	106
〈표 III-13〉 2020년 인권의식실태조사를 활용한 코로나19와 인권 쟁점 선형회귀분석 모형.....	107
〈표 III-14〉 2020년 인권의식실태조사의 코로나19 관련 응답 결과.....	110
〈표 III-15〉 2020년 인권의식실태조사의 코로나19 관련 문항 선형회귀분석 결과표.....	111
〈표 IV-1〉 성별 소득 격차와 상대적 빈곤율, 2011-2021.....	120

〈표 IV-2〉 연령별 소득 격차와 상대적 빈곤율, 2011-2021	121
〈표 IV-3〉 노인 성별 소득 격차와 상대적 빈곤율, 2011-2021	122
〈표 IV-4〉 비정규직 노동자 상대적 임금, 2007-2022	131
〈표 IV-5〉 고용형태 및 기업규모별 노동권리 수혜율, 2022	133
〈표 IV-6〉 취약계층 성 및 연령별 정보화 수준, 2022	147

그림 목 차

[그림 I-1] 연도별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인권 관련 조례 제정 개수	8
[그림 I-2] 지역별 인권존중의 통제 전과 후 비교	13
[그림 I-3] 지역별 권리존중의 통제 전과 후 비교	14
[그림 I-4] 지역별 지역 인권제도 필요성의 통제 전과 후 비교	14
[그림 I-5] 지역별 인권제도 인지의 통제 전과 후 비교	15
[그림 I-6] 지역별 인권지식의 통제 전과 후 비교	16
[그림 I-7] 지역별 인권침해 경험의 통제 전과 후 비교	16
[그림 I-8] 지역별 차별 경험의 통제 전과 후 비교	17
[그림 I-9] 지역별 인권쟁점 의견의 통제 전과 후 비교	18
[그림 I-10] 지역별 인권교육 이수율의 통제 전과 후 비교	18
[그림 I-11] 지역별 인권활동 정도의 통제 전과 후 비교	19
[그림 I-12] 지역별 인권조례 제정 비율과 인권 관련 조례 평균 개수	20
[그림 I-13] 지역별 인권제도 필요성 인지와 인권조례 제정 비율	21
[그림 I-14] 지역별 인권제도 필요성 인지와 인권조례 평균 개수	22
[그림 I-15] 지역별 인권조례 평균 개수와 인권제도에 대한 인지	22
[그림 I-16] 지역별 인권조례 제정 비율과 인권제도에 대한 인지	23
[그림 I-17] 지역별 인권지식 정도와 차별 경험의 인당 건수	24
[그림 I-18] 지역별 인권지식 정도와 인권침해 경험의 인당 건수	25
[그림 I-19] 지역별 차별 경험 건수와 인권존중 정도 평가	25
[그림 I-20] 지역별 인권침해 경험 건수와 인권존중 정도 평가	27
[그림 I-21] 지역별 인권침해 경험 건수와 권리존중 정도 평가	27
[그림 I-22] 지역별 인권조례 제정 비율과 인권교육 이수율	28
[그림 I-23] 지역별 인권조례 평균 개수와 인권교육 이수율	29
[그림 I-24] 지역별 인권교육 이수율과 인권지식 정도	29
[그림 I-25] 지역별 인권교육 이수율과 인권제도 인지 정도	31
[그림 I-26] 지역별 인권 쟁점에 대한 의견과 인권 활동 정도	31

[그림 II-1] 지난 1년 동안 혐오표현 경험	42
[그림 II-2] 혐오경로별 대응분석(성별/나이)	43
[그림 II-3] 가장 많이 접해본 혐오표현의 대상	44
[그림 II-4] 혐오표현의 대상 대응분석(연령/성별)	45
[그림 II-5] 혐오표현 대상별 대응분석(지역별)	46
[그림 II-6] 혐오표현을 들었을 때의 반응	47
[그림 II-7] 혐오표현의 심각성에 대한 시계열 분포	48
[그림 II-8]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대응분석(연령/성별)	49
[그림 II-9]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대응분석(지역별)	50
[그림 II-10] 변수의 계수(coefficient)값 비교	54
[그림 II-11] 인권교육을 받은 곳	55
[그림 II-12] 지난 1년동안 혐오표현 경험(인권센터/혐오표현학생조례)	58
[그림 II-13] 혐오표현 대상별 대응분석(인권센터/혐오표현학생조례)	59
[그림 II-14] 혐오표현 법적 규제에 대한 대응분석(인권센터/혐오표현학생조례)	60
[그림 III-1] 코로나19와 인권에 관한 국내 연구 주제의 변화 추이	69
[그림 III-2] 코로나19가 한국 인권 상황에 미친 영향 응답	83
[그림 III-3]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한 어려움 응답 결과	88
[그림 III-4]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인권 문제에 관한 인식 응답	96
[그림 IV-1] 취약계층의 상대적 가구소득 수준, 2021	115
[그림 IV-2] 노인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 2011-2021	119
[그림 IV-3] OECD 국가의 노인 상대적 빈곤율, 2020	119
[그림 IV-4] 노인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재분배 지수, 2011-2021	120
[그림 IV-5] OECD 국가의 노인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재분배 지수, 2020	121
[그림 IV-6] OECD 국가의 GDP 대비 노인공공복지 지출 비율, 2019	122
[그림 IV-7] 여성 노동자 상대적 임금, 2006-2022	123
[그림 IV-8] OECD 국가의 성별 임금 격차, 2020	124
[그림 IV-9] OECD 국가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 2020	125
[그림 IV-10] 관리직 취업자 비율, 2013-2022	126

[그림 IV-11] 기업규모별 상대적 임금, 2006-2022	128
[그림 IV-12] 기업규모별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 2021	130
[그림 IV-13] 산업재해자 연령집단별 비율, 2001, 2021	131
[그림 IV-14] 산재사망자 연령집단별 비율, 2001, 2021	131
[그림 IV-15] 산업재해자 근속년수별 비율, 2001, 2021	132
[그림 IV-16] 산재사망자 근속년수별 비율, 2001, 2021	133
[그림 IV-17]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 2022	134
[그림 IV-18]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022	134
[그림 IV-19] 시도별 종합병원 접근가능 시간, 2020	135
[그림 IV-20] 시도별 30분 이내 종합병원 접근가능인구 비율, 2020	136
[그림 IV-21] 시도별 의료 서비스 접근성 지수	137
[그림 IV-22]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기관 수, 2021	138
[그림 IV-23]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전문인력 수, 2021	138
[그림 IV-24] 시도별 사례관리자 1인당 정신질환자 수, 2021	139
[그림 IV-25] 시도별 1인당 정신보건 예산액, 2021	140
[그림 IV-26] 시도별 정신보건 서비스 접근성 지수	141
[그림 IV-27] 취약계층 정보화 수준, 2022	142

들어가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설립된 이후로 인권보호를 위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인권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국내에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식민지와 전쟁, 그리고 권위주의 국가 등 인권을 제약하고 위협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각계각층의 노력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언제나 함께 했다.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요한 줄기 중 하나로, 2019년 시작되어 정부 승인통계로 매년 조사, 발표되는 국가인권실태조사는 이러한 인권상황의 파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인권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인권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국민들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한 사람들은 얼마나 되며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빠르게 바뀌는 사회 환경 속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인권 쟁점들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인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권을 보호받고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는데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가? 이처럼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국가인권실태조사는 엄밀한 조사의 원칙을 지켜 국민의 경험과 생각을 심층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제 국가인권실태조사가 수행된 지 5년이 되었다. 국가인권실태조사의 결과 보고는 기본 보고서와 심층 보고서 형태로 나뉘어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조사 당해년에 기본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듬해 상반기에 심층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는 조사의 설계와 실사에 할애할 시간이 필요하여 자료의 검수와 분석을 한 해에 마무리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없었던 데에 그 이유가 있다. 이후 2020년부터 같은 해에 기본 보고서와 심층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2021년에는 조사의 시작부터 실사 대행을 맡았던 통계청에서 실사 기관이 민간 조사업체인 한국리서치로 바뀌었으며, 2022년에는 국가인권실태조사의 명칭이 ‘인권의식실태조사’로 변경되었다. 그동안 조사 결과 보고 형식은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보고서 자체는 기본 보고서와 심층 보고서를 하나로 합치는 등의 변화를 겪었다.

2022년 하반기 국가인권실태조사 업무가 인권정책과로 이관되면서 보고 형식을 개편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심층 보고서를 정책 분석의 형태로 바꾸고 자료의 분석을 통해 인권정책에 대한 조사의 함의를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실태조사의 기본보

고서 작성은 실사 업체인 한국리서치가, 심층 보고서 작성은 조사의 설계와 분석을 담당한 한국 삶의질학회가 맡는 것으로 분업이 이루어졌다. 변화된 심층 보고서는 단지 당해 연도의 조사자료만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조사 자료와 함께 국가인권통계로 수집된 자료들을 폭넓게 활용해서 현재 한국의 인권 정책에서 중요한 쟁점들을 발굴하여 통계 및 조사자료를 분석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했다.

오늘날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변화의 물결이 닥쳐오면서 인권 측면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미칠 파장에 대한 관심이 많다. 또한 한국의 인권실태와 상황은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본 보고서는 한국 사회를 둘러싼 거시적 변화들이 인권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음 내용의 글들이 포함하고 있다.

첫째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유례가 없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비상사태를 맞이하였다. 그 결과 인권 측면에서도 많은 신체 및 활동의 자유가 제약되기도 하고,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여러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팬데믹 기간 중에 국가인권실태 조사는 인권적 관점에서 팬데믹 상황이 낳은 결과들에 대한 문항들을 포함해 조사했다. 이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인권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글을 김중우가 집필하였다.

둘째로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서 글로벌화와 함께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정체성에 기반한 갈등과 대결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혐오가 전례 없이 늘어나게 되었다. 디지털화와 함께 사회적 미디어의 약진은 많은 사람에게 자유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혐오 표현이 이들 미디어에서 넘쳐나게 되는 문제를 낳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전쟁으로 번지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혐오와 증오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유은혜는 국가인권실태조사에서 조사된 혐오 표현 관련 자료를 분석해서 혐오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셋째 정치적 양극화와 함께 사회경제적 양극화, 즉 불평등의 문제는 21세기 들어 전 세계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이다. 급격히 이루어진 글로벌화와 디지털화, 그리고 팬데믹이 가세하여 불평등은 많은 사람에게 결핍과 박탈의 경험을 가져왔다. 불평등은 단지 생계만의 문제가 아닌 건강, 교육, 문화, 삶의 질 등 다양한 측면에 걸쳐 있으며,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 남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측면에서 인권 현황은 어떠하며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권리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김대훈이 그간 축적된 국가인권통계를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함께 전국적 차원에서 본격화된 인권보호의 정

책적 노력은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지역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한국에서 지역 수준의 인권규범으로서 인권조례와 인권기구인 광역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적 노력으로서 인권기본계획의 현황 및 그에 대한 국민의 인지, 이해와 평가를 파악하는 것은 그간의 정책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의 발전 방향을 가늠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광역 수준에서의 인권 규범, 기관, 정책에 대한 현황의 파악과 함께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나타난 지역 수준의 인권제도에 대한 인지와 평가를 한준이 분석, 집필하였다.

I. 지역별 인권정책과 인권실태

1. 문제제기
2. 지역 단위 인권제도와 정책현황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및 제언

I

지역별 인권정책과 인권실태

1 문제제기

한국은 20세기 중반 일제 식민지로부터의 해방 이후 냉전 하에서 분단과 오랜 권위주의 정치 체제를 경험하면서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에 대한 제도적 규범과 절차가 미비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사상과 신념의 자유는 물론 신체적 자유도 보장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결과 다수의 정치범들이 신체의 자유의 구속당함은 물론 권력에 의해 목숨을 잃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하지만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도 민주주의를 표방한 국가로서 국제적 인권규범을 전혀 무시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주의 정부에서도 국제적인 인권 규약에 대한 가입은 이루어졌다. 1966년 채택 및 1976년 발표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과 1990년에 가입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규약이 대표적이다. 그밖의 주요 주제 및 집단별 협약으로 한국은 권위주의 정치체제에서 「인종차별철폐 협약(1978)」, 「여성차별철폐협약(1984)」에 가입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이루어진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재확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에 반하는 법률과 제도들이 개정 혹은 폐지되었으며, 과거의 인권 침해사태들에 대한 재검토와 명예의 회복이 이루어져 왔다. 민주화 이후 국제적 인권협약 중 「아동권리협약(1991)」과 「고문방지협약(1995)」, 「장애인권리협약(2008)」에 가입했다.

이러한 인권 존중과 보호를 위한 노력의 결실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관으로서 설립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제도적 차원에서 한국의 인권 존중과 보호의 노력은 본격화되게 되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인권의 제도화는 오랜 기간 동안 인권 보호를 위해 싸운 인권운동의 결실인 동시에 엄중한 조건 속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지원해온 국제인권 운동 및 기구들의 도움의 결과이다. 또한 민주화 이후 정치적 노력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협력한 정치권의 성과이기도 하다.

민주화 이후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 국제적으로 인권상황을 비교, 평가하는 인권지수(Fariss, 2019)에서 한국은 1990년 183개국 중 122위로 열악했던 인권 상황이 2000

년 193개국 중 91위로, 2010년에는 194개국 중 57위로 개선되었으나 이후 다소 악화되기 시작해 2017년 195개국 중 67위로 후퇴하기도 했다.

홍성수(2012)는 인권이 제도화되는 수준을 아래 표와 같이 다층적으로 제시하였다. 글로벌 수준에서는 인권에 대한 규범이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규약에 의해 제시되고, UN산하를 포함한 국제인권기구들이 이를 실행에 옮기는 조직으로서 존재한다. 국가와 글로벌 중간 수준인 지역 수준에서는 유럽인권협약과 같은 지역인권협약이 규범으로서 역할하고, 유럽인권재판소와 같은 지역별 인권기구가 이러한 규범을 실천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한국이 속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통합적 지역 수준에서의 인권 규범이나 기구가 존재하지는 못한다. 현재 한국에서 인권에 대한 가장 최고 수준의 통합적 규범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각종 인권 관련 법령들이 존재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기구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조직들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지방 수준에서 인권 관련 규범은 지방의회가 제정한 인권조례들이 존재한다. 인권 조례는 지역 주민 전반에 대한 인권 존중과 보호를 명시화하는 경우도 있고, 청소년, 장애인, 노인, 특수 직종 종사자 등 인권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도 있다. 지방 수준에서 인권 규범을 실행하는 역할을 맡은 기구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인권기구들이 존재한다.

〈표 I-1〉 여러 수준에서의 인권의 제도화

	세계	지역	국가	지방
규범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지역인권규약 (예: 유럽인권협약)	헌법, 인권 관련 법령	인권 관련 조례
기구	국제인권기구	지역별 인권기구 (예: 유럽인권재판소)	정부, 국가인권기구	지자체, 지자체 인권기구

*출처: 홍성수, 2012

한국에서 인권의 제도화는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늦었지만 그 속도는 빠르게 이루어졌다. 인권의 제도화가 국가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각 지방 수준에서도 빠르게 이루어졌다. 지방 수준에서의 인권의 제도화는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을 통해 본격적으로 국가 수준에서 인권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10년 뒤 무렵부터 본격화되었다. 지역 수준에서의 인권의 제도화는 지방자치가 광역시와 도의 광역 단위와 시군구의 기초 단위로 층화되어 이루어지는 한국의 제도적 특성상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 단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광역 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별로 인권의 제도화 현황과 아울러 광역 단위에서의 인권 실태를 지역별 인권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자료들과 2023년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이용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국가인권실태조사는 전국적 수준에서 인권 실태의 연도별 변화를 인권의식, 인권 침해 및 차별 경험, 인권에 대한 의견, 인권교육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반면 광역이전 기초이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인권실태를 살펴본 적은 없었다. 지난 10여 년간 지방 수준에서의 인권의 제도화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에 비해 이러한 제도화가 지방 수준에서의 인권실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혹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작업은 거의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광역 자치단체 수준에서 인권기본정책을 세우는 기초 자료로 인권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한 경우도 있지만, 2019년 처음 실시된 이후 국가인권실태조사는 지방의 인권기본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주로 이용되어 왔다. 이 글은 이러한 현재까지의 연구 현황을 고려하여 개별 광역 자치단체만이 아니라 광역별로 나누어 인권제도, 인권정책과 인권실태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지방 수준에서의 인권제도의 발전과 인권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참고가 되고자 한다.

2 지역 단위 인권제도와 정책 현황

국가 수준에서의 인권의 제도화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함께 본격화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설립되어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 모체는 국제인권법이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이중적이고도 특수한 성격을 지닌 독립 국가기관이다. 지방자치제도를 1995년부터 지방의회와 자치단체를 포괄하여 전면적으로 실시해온 한국에서는 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인권의 제도화 또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광역 자치단체들 중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인권의 제도화를 선도하였다. 2007년 광주광역시는 광역 자치단체들 중에서 처음으로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인권 기구를 지역 단위에서 설립하였다. 그 뒤를 이어 2010년 경상남도과 전라북도가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국가인권위가 지자체 인권기본조례표준권고를 발표한 2012년에는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5개의 자치단체가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해서 지역 수준의 인권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2019년 인천광역시까지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광역 수준에서의 인권규범의 정착은 10년 여에 걸쳐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표 2는 광역 자치단체들이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한 과정을 연도별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 단위에서만 인권규범을 대표하는 인권조례가 제정된 것은 아니다. 광역 안의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정책적 노력을 시작하였다. 아래 표 3은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를 망라해서 광역별로 인권 기본조례가 제

정되어 있는 현황을 보여준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광역 자치단체별로 산하 기초 자치단체들의 인권조례 제정 정도는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산하 모든 기초 자치단체에 인권조례가 있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같은 곳이 있는가 하면, 산하 기초 자치단체들에서 인권 기본조례 제정 비율이 10%에 못미치는 충청북도나 10%를 겨우 넘는 경상북도 같은 곳도 있다. 전체 기초 자치단체들 중 인권 기본조례 제정 비율은 54%이며, 인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 자치단체는 산하 기초 자치단체 중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한 비율이 60%를 넘는다.

〈표 I-2〉 광역 자치단체 수준의 인권 기본조례 제정 과정

연도	인권 기본조례 제정 광역 자치단체
2007	광주광역시
2010	경상남도, 전라북도
2012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2013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2014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2015	제주특별자치도
2019	인천광역시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표 I-3〉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인권 기본조례 제정 현황 (2023년 11월 현재)

광역	광역	교육청	기초	기초자치체수	기초제정비율
서울	1	1	21	25	84%
부산	1		10	16	63%
대구	1		5	8	63%
인천	1		5	10	50%
광주	1	1	5	5	100%
대전	1		4	5	80%
울산	1		5	5	100%
세종	1				
경기	1	1	16	31	52%
강원	1		6	18	33%
충북	1		1	11	9%
충남	1	1	15	15	100%
전북	1	1	8	14	57%
전남	1		11	22	50%
경북	1		3	23	13%
경남	1		7	18	39%
제주	1	1			
총합계	17	6	122	226	54%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1. 지역별 인권정책과 인권실태

인권 기본조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은 특정 대상 특히 인권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한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도 많다. 인권조례의 대상이 되는 인권 취약집단으로는 장애인, 노인, 청소년과 같은 인구집단 외에 스포츠인, 아파트 경비원 등과 같은 특수 직업집단도 포함된다. 아래 표 4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별로 현재 제정된 모든 인권조례의 개수 현황을 보여준다. 광역 단위에서 가장 많은 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로 9개이며, 그 다음이 8개를 제정한 광주광역시와 충청남도 이다. 반면 가장 적은 수의 인권조례를 제정한 광역 자치단체는 경상북도, 전라남도도 4개이다. 산하 기초 자치단체의 평균 인권 관련 조례 제정 개수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인권조례를 제정한 기초 자치단체들이 속한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평균 4.8개이며, 그 다음이 대전광역시의 3.8개, 경기도의 3.7개이다. 가장 적은 수의 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한 기초 자치단체들은 평균 0.7개를 제정한 경상북도와 1.4개를 제정한 경상남도, 1.6개를 제정한 강원도의 순이다.

〈표 I-4〉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인권 관련 조례 제정 현황 (2023년 11월 현재)

광역	광역	기초	기초 지자체 수	기초 지자체당 수	합계
서울	7	90	25	3.6	97
부산	6	41	16	2.6	47
대구	6	26	8	3.3	32
인천	9	27	10	2.7	36
광주	8	24	5	4.8	32
대전	5	19	5	3.8	24
울산	5	17	5	3.4	22
세종	5				5
경기	9	115	31	3.7	124
강원	5	29	18	1.6	34
충북	5	27	11	2.5	
충남	8	43	15	2.9	51
전북	5	35	14	2.5	40
전남	4	50	22	2.3	54
경북	4	15	23	0.7	19
경남	5	25	18	1.4	30
제주	6				6
총합계	102	583	226	2.6	685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아래 [그림 I-1]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들이 제정한 인권 관련 조례들의 연도별 건수의 추이를 보여준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지역 수준에서의 인권 규범으로서 조례의 확산 속도를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광역 자치단체들에서 인권 기본조례들이 등장한 2010년을 전후한

시기에 2013년을 정점으로 해서 한 차례의 물결이 있었으며, 그 뒤를 이어 2016~7년을 정점으로 하는 또 한 차례의 물결이 있었고, 코로나 19 기간 중에 2021년을 정점으로 하는 또 한번의 물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세 번째의 물결이 이전의 확산에 비해 현재까지 가장 큰 규모였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2022년과 2023년에는 현저히 인권 관련 조례의 제정이 줄었다. 이것은 그동안 이미 많은 인권 관련 조례들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인권의 제도화가 둔화되거나 더 나아가 인권의 제도화가 후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림 I-1] 연도별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인권 관련 조례 제정 개수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다음으로 지역 수준에서 인권 규범인 인권 조례와 함께 인권 제도화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하는 인권 기구의 현황을 살펴보자. 아래 표 5는 광역 수준에서 인권 기구의 주된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광역 수준의 인권위원회, 인권보호관, 인권센터 및 행정부 내 인권 전담부서의 유무를 보여 준다. 이때 인권위원회는 자치단체별로 인권 관련된 조언 혹은 자문을 제공하고, 인권에 대한 홍보와 조사, 구제 등을 수행하는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위원회를 지칭한다. 인권 보호관은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해서 검토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는 구제 기능을 한다. 한편 인권센터는 주민의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인권 전담부서는 행정부 내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22년 현재 모든 광역 자치단체마다 인권위원회가 존재하고 행정부 내에 인권 전담부서가 존재한다. 또한 인권보호관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세종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광역 자치단체들에서 운영된다. 인권센터의 경우 강원도, 경기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와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설치되어 운영된다.

그런데 불과 1년 사이 최근 들어 일부 광역 자치단체에서 인권위원회 조직에 변동이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구광역시는 흥준표 시장 취임 후 2022년 시정개혁 차원에서 유명무실·업무중복 등을 이유로 190여개 위원회 중 50여개를 없애고, 2차 정비 중 9월 8일 '대구시 인권증진위'를 폐지했다. 그 이전까지 대구광역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4년 인권보장과 증진조례를 제정하였고, 2017년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2018년 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 충청남도에서는 2023년 9월 도의회에서 민간 청구안으로 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되어 의결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지방법원에서 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에 대한 효력 정지 처분이 이루어져 계속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조례 폐지가 최종 결정된다면 그에 근거하고 있는 인권위원회 및 대부분의 인권 제도들의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 대전광역시에서는 2023년 민간 위탁으로 운영해온 인권센터를 차별금지법 반대 주장을 해온 단체에 위탁해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이후 인권센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와 사업이 중복되는 데다 예산 대비 효과를 낮다고 평가해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

〈표 I-5〉 광역 자치단체 수준의 인권 기구 현황 (2022년 기준)

구분	인권위원회	인권 보호관	인권센터	인권전담부서
	조인(자문), 홍보, 조사구제	진정사건 통해 시정권고	주민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행정부 내 담당
서울	○	○	X	○
부산	○	○	○	○
대구	○	○	X	○
인천	○	○	X	○
광주	○	○	X	○
대전	○	○	○	○
울산	○	○	○	○
세종	○	X	X	○
경기	○	○	○	○
강원	○	○	○	○
충북	○	○	○	○
충남	○	○	○	○
전북	○	○	X	○
전남	○	○	○	○
경북	○	X	X	○
경남	○	X	X	○
제주	○	X	X	○

*출처: 인권정책연구소, 2022

**광역별로 별도의 추가 조사를 수행하지 못해서 지난 1년 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으며 주목할 변화는 본문에서 서술하였음.

마지막으로 지역 수준의 인권규범으로서 인권 조례에 근거하고, 인권기구로서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등이 참여해서 인권정책이 수립, 시행된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정책을 통해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역 자치단체들은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행정부 내 부처들이 이에 따라 인권증진 사업을 수행하며, 그 성과에 대한 평가도 진행한다. 아래 <표 I-6>은 광역 자치단체별로 인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 현황이며, 그에 따른 사업에 대한 평가 방식과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별도의 인권실태조사 수행 여부를 제시하고 있다.

<표 I-6> 광역 자치단체별 인권정책 현황 (2022년 기준)

	인권정책기본계획	사업평가	실태조사
서울	3차	통합	0
부산	2차	통합	0
대구	1차	별도	0
인천	1차	별도	0
광주	3차	통합	0
대전	2차	통합	X
울산	2차	통합	X
세종	2차	별도	0
경기	2차	통합	0
강원	2차	통합	0
충북	2차	통합	0
충남	2차	통합	0
전북	2차	별도	0
전남	2차	통합	0
경북	1차	통합	0
경남	1차	별도	X
제주	2차	통합	0

*출처: 인권정책연구소, 2022

현재 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광역 자치단체로는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가 있으며, 2차 기본계획 단계인 광역은 강원도, 경기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과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등이 있다. 1차 기본계획이 진행 중인 광역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이 있다. 광역 수준에서의 인권실태 조사의 경우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광역 자치단체마다 실시하고 있다.

3 연구 방법

지역 수준에서의 인권제도와 정책을 해당 지역의 인권실태의 여러 측면들과 연관시켜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는 인권정책과 인권실태의 여러 측면들을 광역 수준의 자치단체별로 계량화한 수치들로 측정하고, 이들 수치를 2차원 산점도(scatter plot) 그래프로 나타내 인권정책과 인권실태의 관련성, 인권실태의 여러 측면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광역 수준에서 인권제도, 인권정책과 인권실태 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가설이 확립되지 않았고 선행 연구 또한 거의 없는 현재 상태에서 본 연구는 보다 탐색적으로 인권제도와 인권정책, 인권실태의 관계를 지역별로 비교하면서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권제도와 인권실태에 대한 수치적 계량화를 위한 측정의 방법이다.

본 연구는 광역 수준에서의 인권제도를 다음과 같이 측정했다. 주로 규범 차원에서 인권조례의 제정된 정도를 제도화의 측정치로 활용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1) 광역 내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 인권 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비율과, (2) 광역 내 기초 자치단체별로 평균적으로 인권 관련 조례의 제정 건수를 제도화의 측정치로 활용하였다.

광역 수준에서의 인권실태는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 인권 상황에 대한 전반적 평가로서 (1) 다양한 집단들의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한 평가, (2) 다양한 권리들이 존중되는 정도에 대한 평가
- 인권 경험으로서 (1) 다양한 권리들에 대한 인권침해 경험의 정도, (2) 다양한 특성에 따른 차별의 경험 정도
- 인권제도에 대한 인식으로서 (1) 지역 인권제도에 대한 필요성의 인지 정도, (2) 다양한 수준에서의 인권규범과 제도에 대한 인지의 정도
- 인권에 대한 의견과 지식으로서 (1) 타인 및 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방법에 지식, (2) 다양한 인권 쟁점과 현안들에 대한 의견의 진보적 성향
- 인권 관련 실천으로서 (1) 인권 교육을 이수한 비율과 (2) 각종 인권 관련 지원이나 옹호를 위한 활동이나 행동에 참여한 정도

이들 각각의 인권실태 측정은 국가인권실태 2023년 조사에 대한 응답자들의 응답을 활용해서 인권 교육 비율을 제외한 모든 측정치에 대해 여러 문항들에 대한 응답을 종합한 다문항척도를

구성하였다. 다문항척도를 구성한 이유는 인권실태의 보다 면밀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하고자 양적 변수로 측정하기 위함이었다. 다문항 척도를 구성할 때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 문항들의 경우는 긍정의 값이 더 높도록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을 재부호화해서 해당 문항들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였다. 또한 인권침해, 차별, 인권활동 등의 경우에는 있다, 없다고 응답하였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건수로 측정하였다. 다문항 척도 구성에 사용된 문항들의 목록은 이 글의 뒤에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광역별 인권실태의 다문항 척도값은 실제 측정치의 광역별 평균값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응답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과 사회경제적 배경(학력 수준)을 통제한 이후의 기대치의 평균값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기대치를 구하는 방법은 실제 측정치를 종속변수로,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배경을 독립변수로 포함한 회귀모형을 추정하여 개별 기댓값의 광역별 평균을 구하였다. 이처럼 응답자의 특성을 통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광역에 따라 인구구성은 큰 편차를 보인다. 대표적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젊고 학력 수준이 높은 편인 반면, 농촌 위주의 기타 지역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학력수준도 낮은 편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실태조사 보고서를 위한 과거 분석 결과에서는 연령이 젊고 학력수준이 높을 수록 또한 여성일수록 인권평가가 비판적이고,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인권 쟁점에서도 인권 옹호에 우호적인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다문항 척도의 실제 측정치 광역별 평균을 그대로 사용하면 지역별 환경이나 조건의 차이만이 아니라 지역별 인구구성에서의 차이도 함께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순수한 광역간 지역 차이를 보기 어렵다.

4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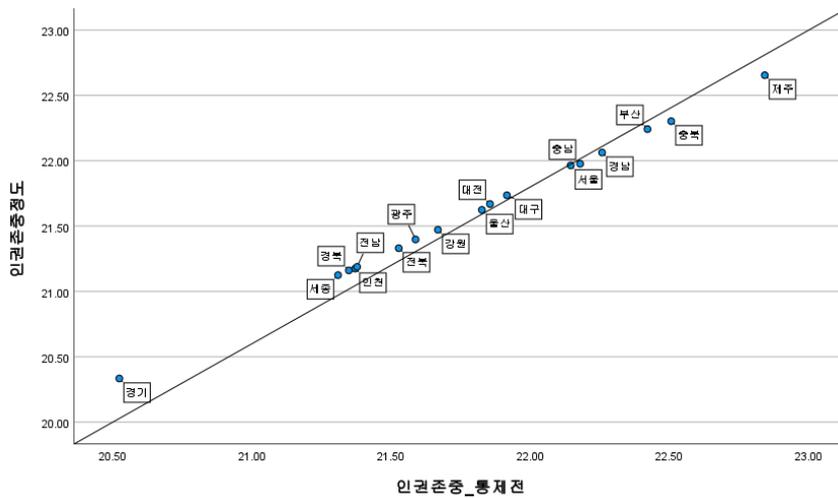
1) 통제 전후 인권실태의 비교

본격적으로 지역간 인권제도와 인권실태의 관련성을 보기 이전에 앞서 연구방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권실태의 여러 측면들에 대한 실제 측정치의 광역 평균값과 인적 속성의 통제 이후 기대치의 평균값의 관계를 먼저 검토해 보자. 이것은 통제가 이들 측정치에 어떤 효과를 미쳤으며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I-2]는 인권존중 정도에 대한 평가의 통제 전과 후의 비교이다. 전반적으로 지역별로 직선적 관계의 대응이 존재하지만 경기, 세종, 경북, 인천, 전남, 전북, 강원, 울산, 대전, 대구에서는 통제 전에 비해 통제 후에 상대적으로 평균값이 개선되었으며, 제주, 충북, 부산, 경남, 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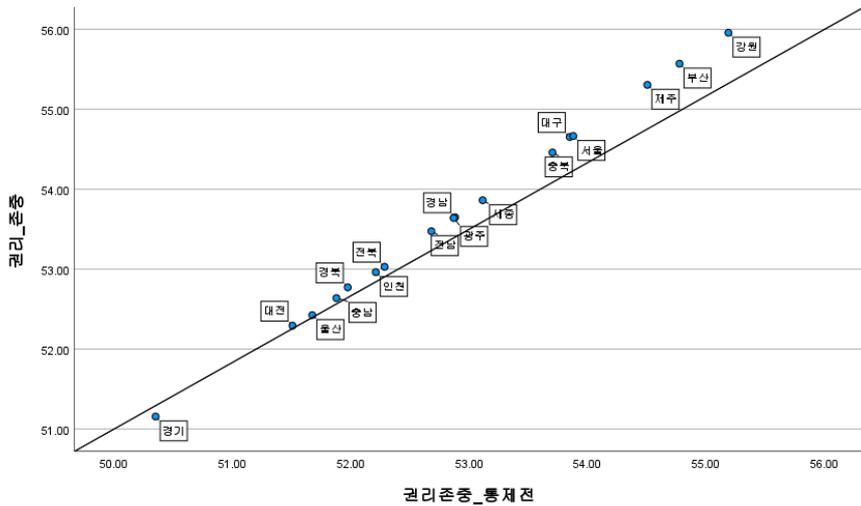
남과 서울에서는 통제 전에 비해 통제 후에 상대적으로 평균값이 하락했다. 결과적으로 광역간 인권존중 정도 평가에서의 차이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I-2] 지역별 인권존중의 통제 전과 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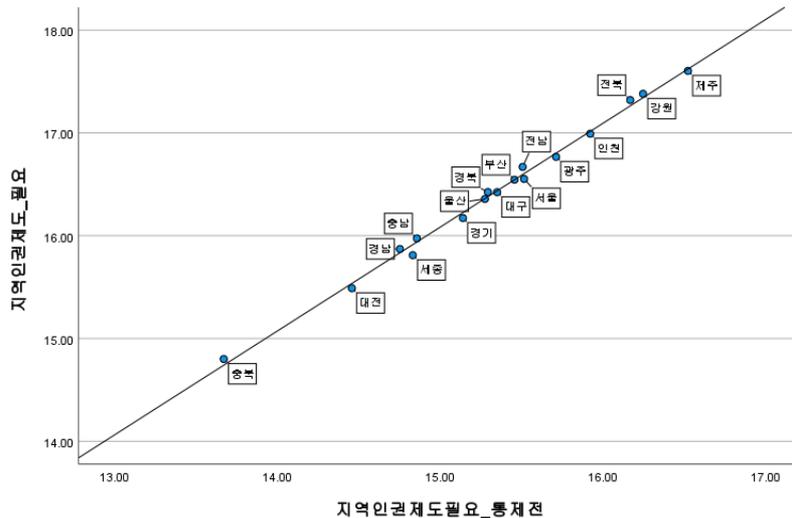
[그림 I-3]은 광역별로 권리존중 정도에 대한 평가의 실제 측정치 평균값과 인적 속성의 통제 이후 기대치의 평균값의 비교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는 경기만이 통제 전에 비해 통제 이후에 권리존중 평가의 평균값이 낮아지고 그밖의 모든 지역에서는 통제 전에 비해 통제 이후에 권리존중 평가의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권리존중 정도 평가 평균값의 광역간 차이는 통제 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3] 지역별 권리존중의 통제 전과 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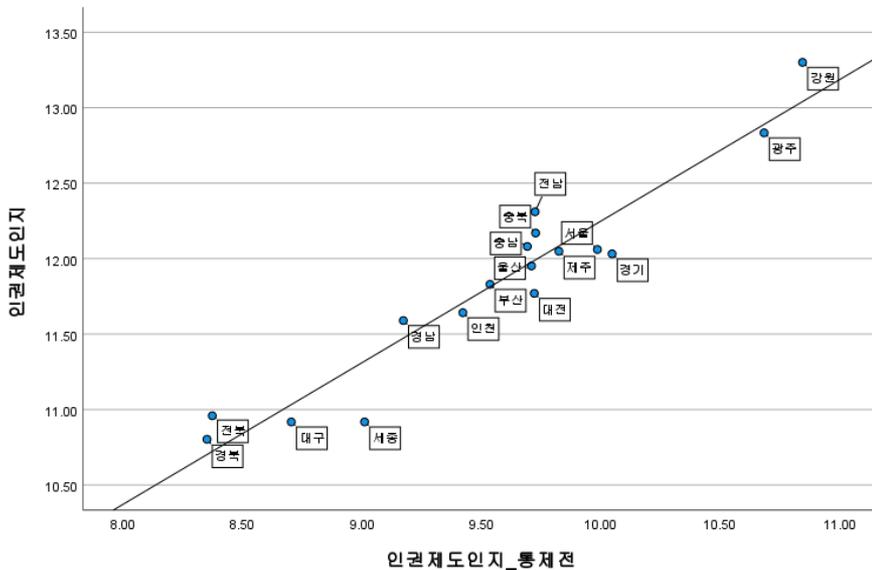
[그림 I-4]는 지역 인권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 정도의 광역별 평균값의 실제 측정치와 인적 속성 통제 이후의 기대치의 평균값의 비교를 보여준다. 이 그래프에 나타난 실제 측정치와 기대치의 평균값 간에는 큰 차이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지역 인권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적 속성의 통제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4] 지역별 지역 인권제도 필요성의 통제 전과 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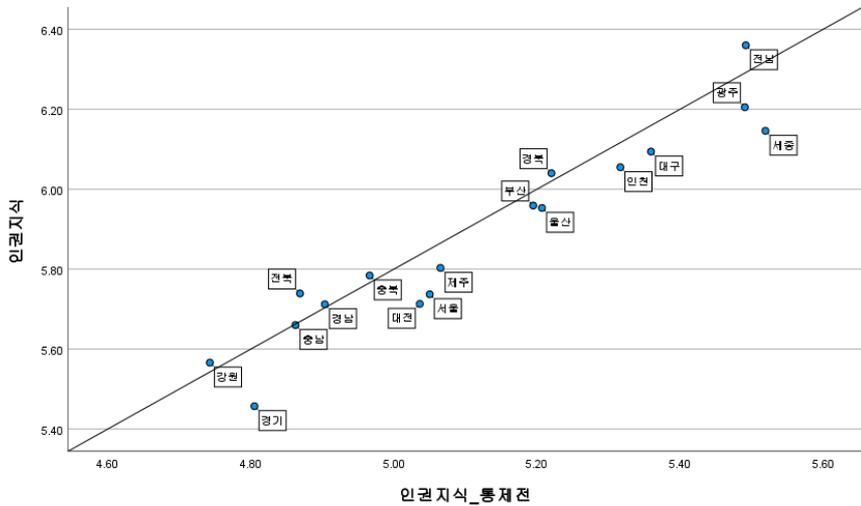
[그림 I-5]는 인권제도에 대한 인지 수준에 대한 실제 측정치의 광역별 평균과 인적 속성 통제 후의 기대치의 평균값을 비교해서 보여준다. 필요성 인지와 달리 제도의 인지 정도에서는 통제의 효과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대구, 세종, 울산, 인천, 대전, 경기, 서울, 광주 등에서는 실제 측정치에 비해 기대치의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반면, 그밖의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실제 측정치에 비해 기대치의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의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고 젊은 인구가 많아서 그 결과 인권제도에 대한 인지가 높게 나타난 반면, 뒤의 지역들에는 상대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고 연로한 인구가 많아 인권제도에 대한 인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을 조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5] 지역별 인권제도 인지의 통제 전과 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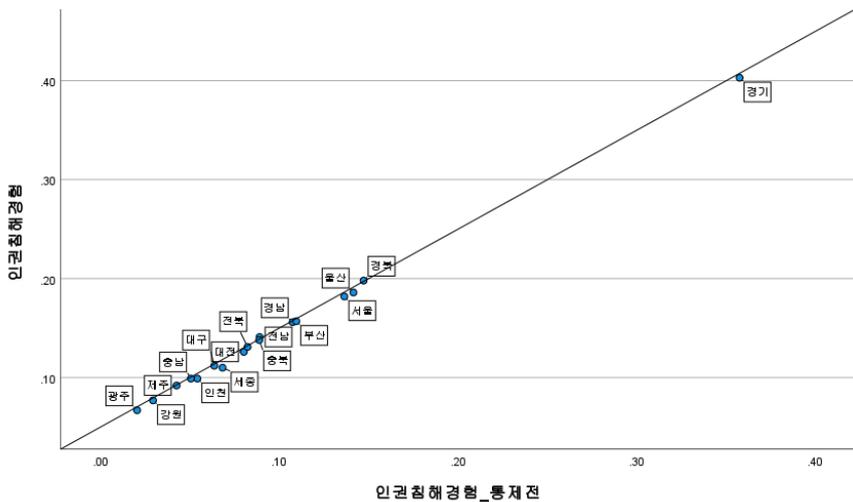
[그림 I-6]은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지식 정도의 실제 측정치의 광역별 평균과 인적 속성을 통제한 이후 기대치의 광역별 평균을 비교한 것이다. 이 그래프에서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충북 등의 지역은 인적 속성 통제 전에 비해 통제 후에 지식의 기대치가 높아졌다. 반면 다른 광역들은 통제 후 지식의 기대치가 낮아졌다. 가장 차이를 크게 보이는 것은 세종과 경기이다. 아마도 이런 차이는 이들 지역의 연령이 젊고 학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지식의 정도가 높은 것을 통제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6] 지역별 인권지식의 통제 전과 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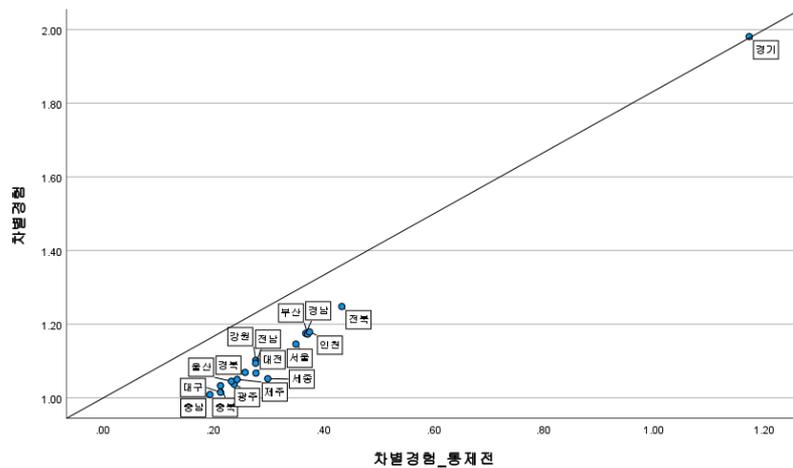
[그림 I-6]은 인권침해 경험의 건수에 대한 실제 측정치의 광역별 평균과 인적 속성을 통제한 이후의 기대치의 광역별 평균을 비교한 결과이다. 이 그래프는 경기도가 다른 광역 자치 단체들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며 인권침해 경험 건수가 높다. 하지만 인적 속성을 통제한 이후의 기대치와 실제 측정치의 광역별 평균에서는 별다른 변화나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림 I-7] 지역별 인권침해 경험의 통제 전과 후 비교



[그림 I-8]은 차별 경험의 건수에 대한 실제 측정치의 광역별 평균과 인적 속성을 통제한 이후의 기대치의 광역별 평균을 비교한 결과이다. 인권 침해 건수와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며 차별 경험의 건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밖의 지역에서는 인적 속성의 통제 결과 차별 경험의 건수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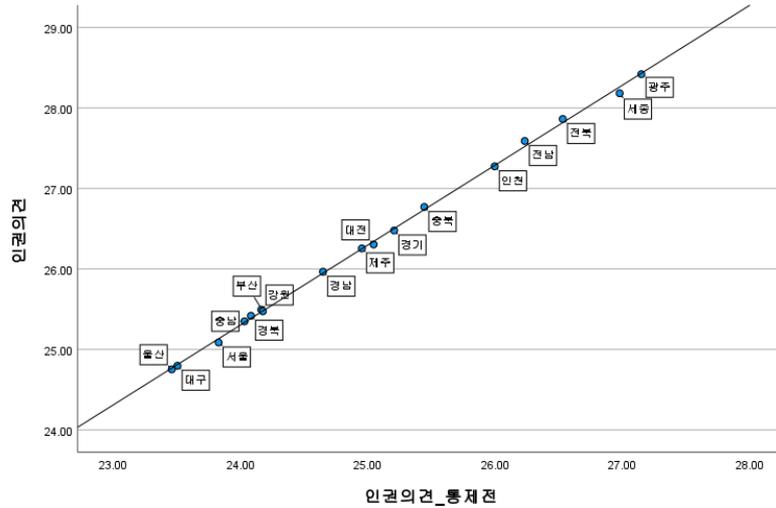
[그림 I-8] 지역별 차별 경험의 통제 전과 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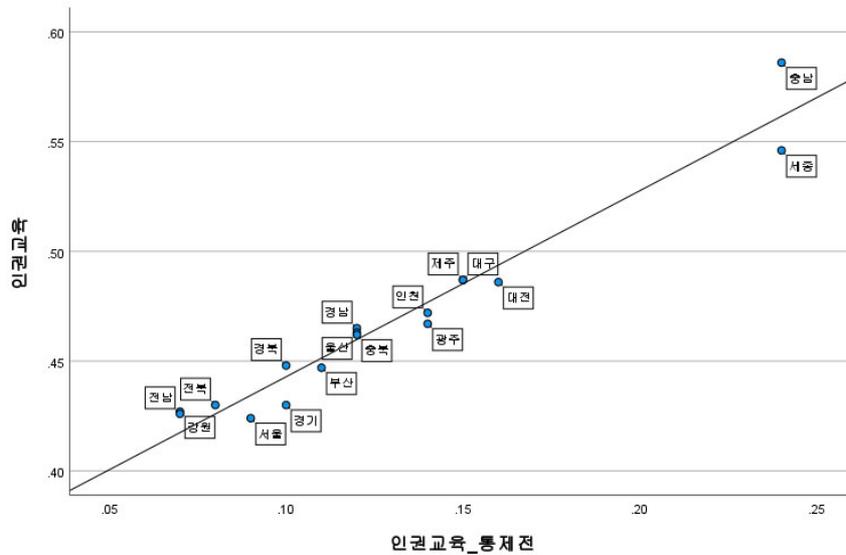
[그림 I-9]는 인권 쟁점들에 대한 의견들의 실제 측정치의 광역별 평균과 인적 속성을 통제한 이후의 기대치의 광역별 평균을 비교한 결과이다. 인권 쟁점들에 대해 진보적이거나 친인권적인 의견의 정도가 높은 것은 광주와 세종, 전북과 전남이며, 그 반대는 애구, 울산, 서울 지역이다. 인적 속성을 통제한 효과는 어느 지역에서도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I-10]은 인권교육을 이수한 비율의 광역별 실제 측정치 평균과 인적 속성을 통제한 이후의 기대치의 광역별 평균을 비교한 결과이다. 충남과 세종이 인권교육을 이수한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인적 속성을 통제한 결과 인권교육 이수 비율이 높아진 지역은 충남, 전남, 전북, 경북 등이며, 반대로 세종, 서울, 경기, 광주, 인천, 대전은 인권교육 이수 비율이 낮아졌다. 이들 지역이 젊고 학력 수준이 높은 편이라 그 효과로 인권교육 이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조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림 I-9] 지역별 인권쟁점 의견의 통제 전과 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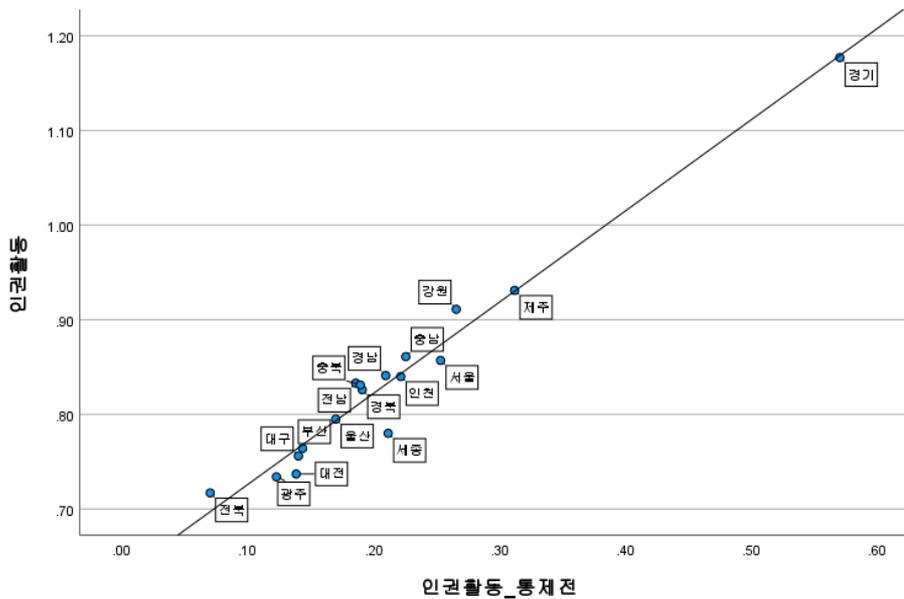
[그림 I-10] 지역별 인권교육 이수율의 통제 전과 후 비교



[그림 I-11]은 인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의 실제 측정치의 광역별 평균과 인적 속성을 통제한 이후의 기대치의 광역별 평균을 비교한 결과이다. 인권침해와 차별의 경험이 높게

나타났던 경기도가 인권활동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인권활동 참여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인적 속성을 통제한 이후 인권활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지역은 세종, 서울, 대전, 광주 등이며, 반대로 인적 속성을 통제한 이후 인권활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지역은 강원, 충남, 전북, 경남, 충북 등의 지역이다. 인권교육 이수율과 마찬가지로 젊고 학력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인권활동 참여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조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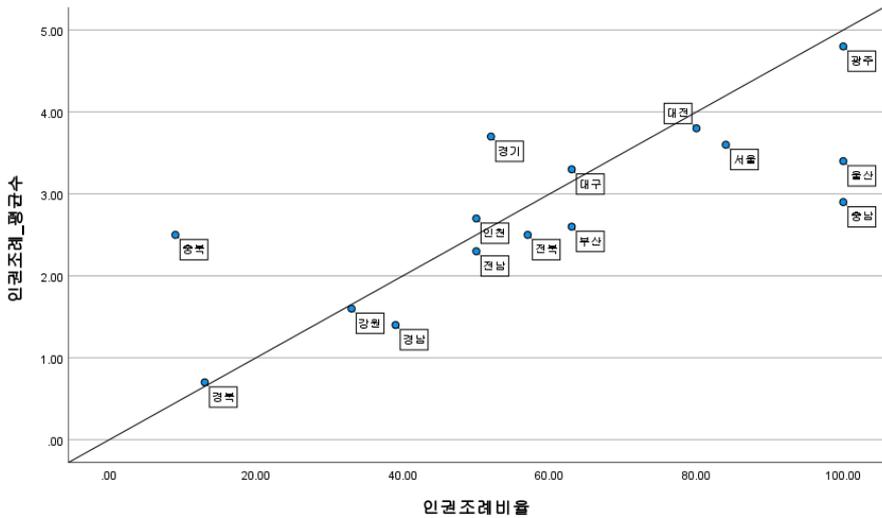
[그림 I-11] 지역별 인권활동 정도의 통제 전과 후 비교



2) 인권제도에 대한 요구, 인지와 지방 인권제도화

지역별로 인권 제도화의 정도를 조례 제정으로 측정했을 때, 인권 제도화와 지역 주민들의 인권제도에 대한 인지 및 인권제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정도의 관계를 살펴보자. 먼저 그에 앞서 광역내 기초 자치단체의 인권 기본조례 제정 비율과 인권 관련 조례의 기초 자치단체별 평균 제정 건수를 비교한 [그림 I-12]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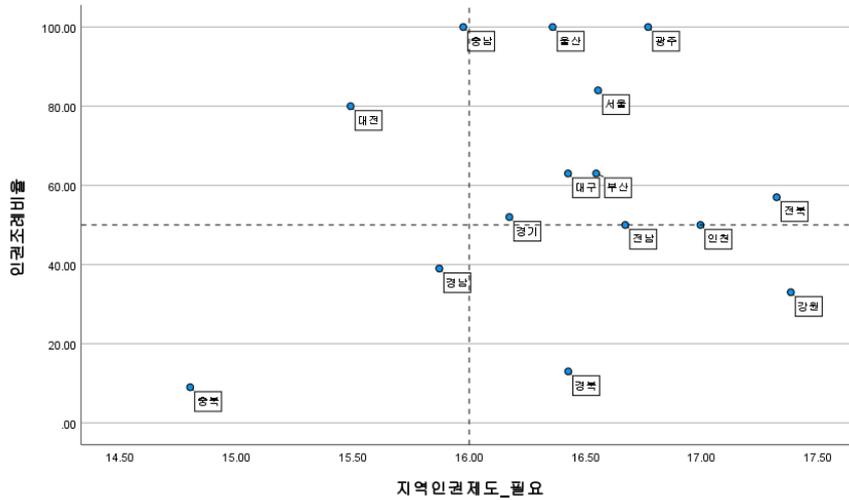
[그림 I-12] 지역별 인권조례 제정 비율과 인권 관련 조례 평균 개수



규범적 차원에서의 인권 제도화를 반영하는 이들 두 측면은 대체로 정의 관계를 보이지만, 서로 편차를 보이는 지역도 있다. 광역내 모든 기초 자치단체들이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한 광주, 울산, 충남 지역의 경우 광주는 인권 관련 조례의 제정 건수도 많은 편이지만 울산과 충남은 상대적으로 인권 관련 조례의 제정 건수가 상대적으로 낮다. 서울, 부산, 전북, 경남 역시 인권 기본조례 제정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초 자치단체별 인권 관련 조례 제정 건수가 낮은 편이다. 반대로 충북은 광역내 기초 자치단체들의 인권 기본조례 제정 비율이 가장 낮지만, 기초 자치단체별 인권 관련 조례들의 제정 건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림 13은 광역별로 인권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의 정도와 광역내 기초 자치단체들이 인권조례를 제정한 비율을 교차시킨 것이다. 지역 인권제도에 대한 필요성 인지가 높고 인권 기본조례 제정 비율도 높은 경우가 그림의 오른쪽 상단에 해당된다. 광주, 서울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인권제도의 필요성 인지가 낮고 인권 기본조례 제정 비율도 낮은 것이 왼쪽 하단이며 충북이 대표적이다. 왼쪽 상단의 경우 인권제도 필요성 인지가 낮는데 인권 기본조례 제정 비율이 높다. 대전과 충남이 이에 해당된다. 오른쪽 하단의 경우 지역 인권제도의 필요성 인지는 높는데 광역내 기초 자치단체의 인권 기본조례 제정 비율이 낮은 지역으로 강원과 경북이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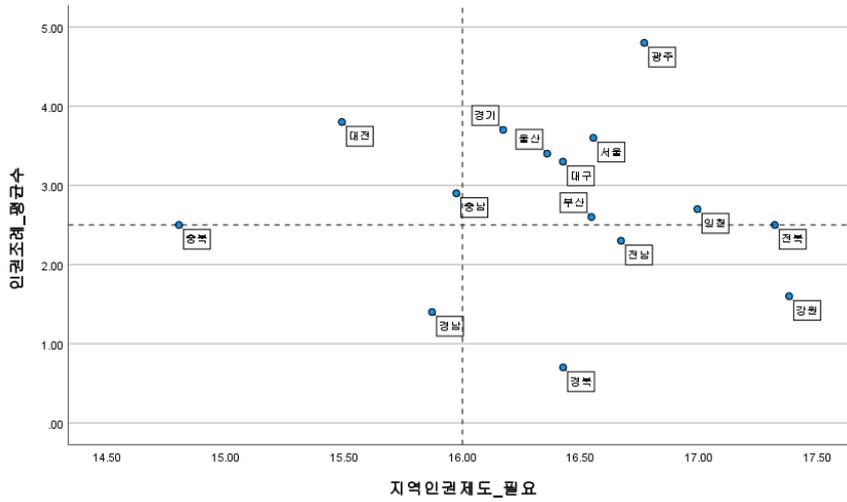
[그림 I-13] 지역별 인권제도 필요성 인지와 인권조례 제정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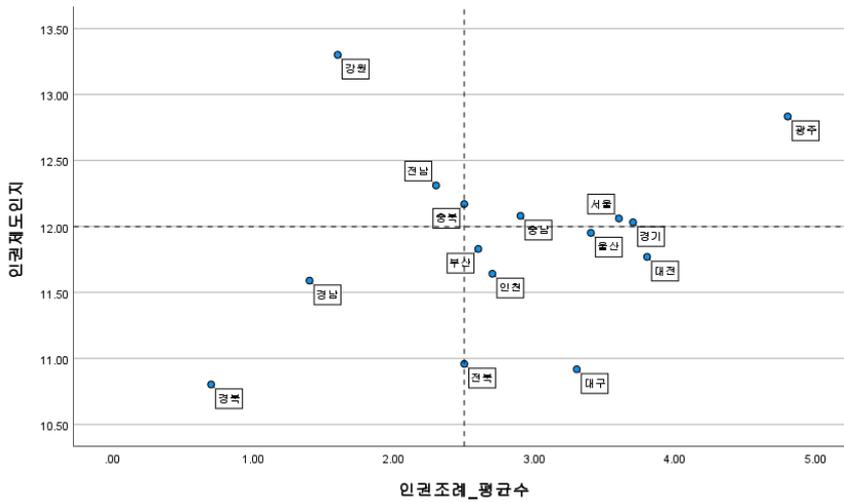
[그림 I-14]는 광역별로 인권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의 정도와 광역내 기초 자치단체들의 평균 인권 관련 조례 제정 건수를 교차시킨 것이다. 지역 인권제도에 대한 필요성 인지가 높고 인권 관련 조례 제정 건수도 높은 경우가 그림의 오른쪽 상단에 해당되며 대표적인 경우가 광주, 서울 등이다. 반면 인권제도의 필요성 인지가 낮고 인권 관련 조례 제정 건수도 적은 것이 왼편 하단이며 경남이 대표적이다. 왼편 상단의 경우 인권제도 필요성 인지가 낮는데 인권 관련 조례 제정건수가 많은 지역으로 대전이 이에 해당된다. 오른쪽 하단의 경우 지역 인권제도의 필요성 인지는 높는데 광역내 기초 자치단체의 인권 관련 조례 제정 건수가 낮은 지역으로 강원과 경북이 해당된다.

[그림 I-15]는 광역내 기초 자치단체의 인권 관련 조례 평균 제정 건수와 인권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를 교차시킨 결과이다. 인권 관련 조례 제정 건수가 많은 지역에서 인권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은 예로는 오른쪽 상단의 광주가 대표적이다. 반면 인권 관련 조례 제정 건수가 낮으면서 인권제도에 대한 인지도 낮은 지역이 왼편 하단의 경남과 경북이다. 반면 인권 조례 제정 건수는 많은 편인데 인권제도 인지가 낮은 지역이 오른쪽 하단으로 대구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인권 관련 조례 제정 건수가 낮은 반면 인권제도 인지는 높은 지역이 왼편 상단의 강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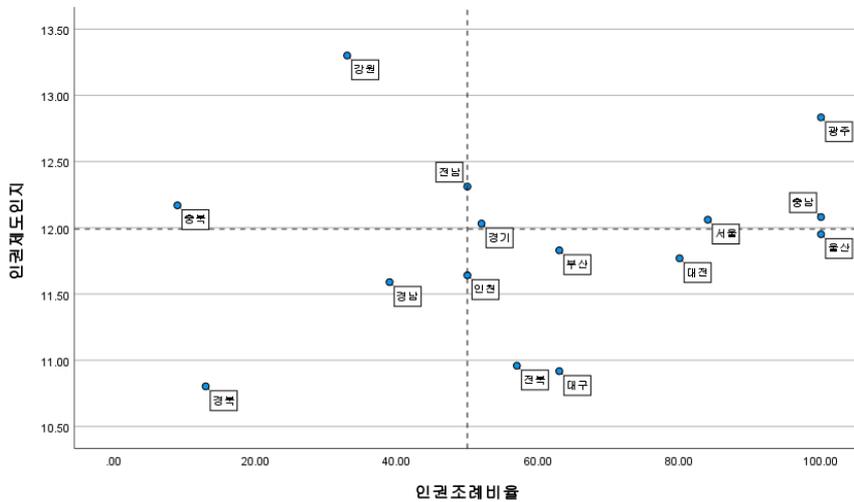
[그림 I-14] 지역별 인권제도 필요성 인지와 인권조례 평균 개수



[그림 I-15] 지역별 인권조례 평균 개수와 인권제도에 대한 인지



[그림 I-16] 지역별 인권조례 제정 비율과 인권제도에 대한 인지



[그림 I-16]은 광역내 기초 자치단체 중에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한 비율과 광역별 인권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를 교차시킨 결과이다. 모든 기초 자치단체가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한 광주, 충남, 울산 중에 인권제도 인지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광주이며, 다음이 충남이다. 반면 경남과 경북은 인권 기본조례 제정비율이 낮으며 인권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 역시 낮다. 인권 조례 비율이 상대적으로 중간보다 높는데 인권제도 인지가 낮은 지역이 전북과 대구이며, 인권 기본조례 제정 비율은 낮는데 인권제도 인지가 높은 지역이 강원이다.

규범적 차원의 인권제도로서 인권 기본조례 및 관련 조례의 수준이 인권제도에 대한 인지를 대체로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위에 살펴본대로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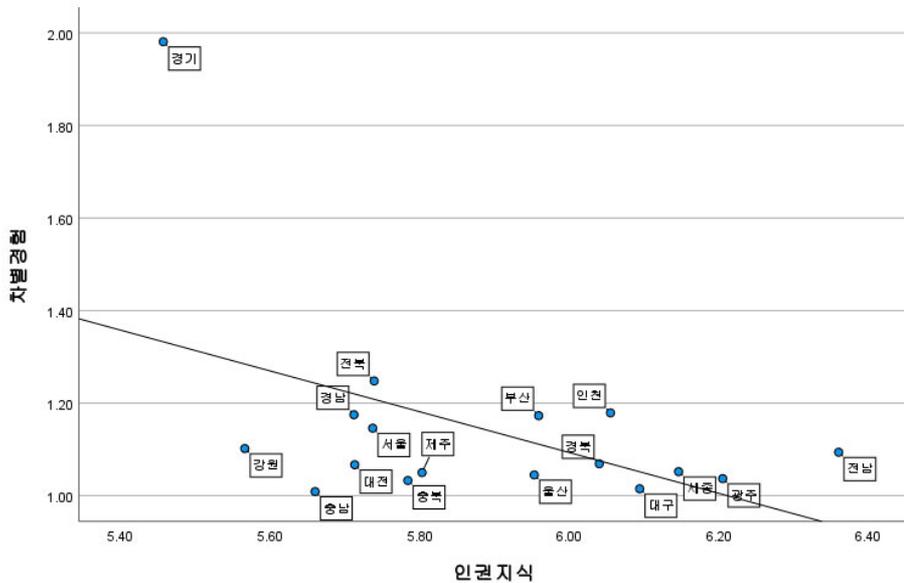
3) 인권에 대한 이해, 인권침해, 차별과 인권상황 평가

자신의 인권을 지키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 보호하는 것에 대한 지식의 정도는 인권침해나 차별을 줄이는가? 인권침해나 차별의 경험이 많은 지역은 인권 존중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I-17]은 인권 존중과 보호에 대한 지식의 광역별 평균적 수준과 해당 광역의 평균 차별 경험 건수를 교차시킨 결과이다. 예외적으로 인권에 대한 지식 수준은 낮고 차별 경험 건수는 높은 예로 경기 지역이 있다. 그밖의 지역에서도 대체로 인권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차별의 경험 건수도 적은 경향을 보인다. 충남과 대전, 충북의 경우 차별 경험 건수는 낮는데 인권에 대

한 지식 수준이 높지 않은 편이고, 인권에 대한 지식 수준에 비해 차별 경험 건수가 높은 경우가 부산과 인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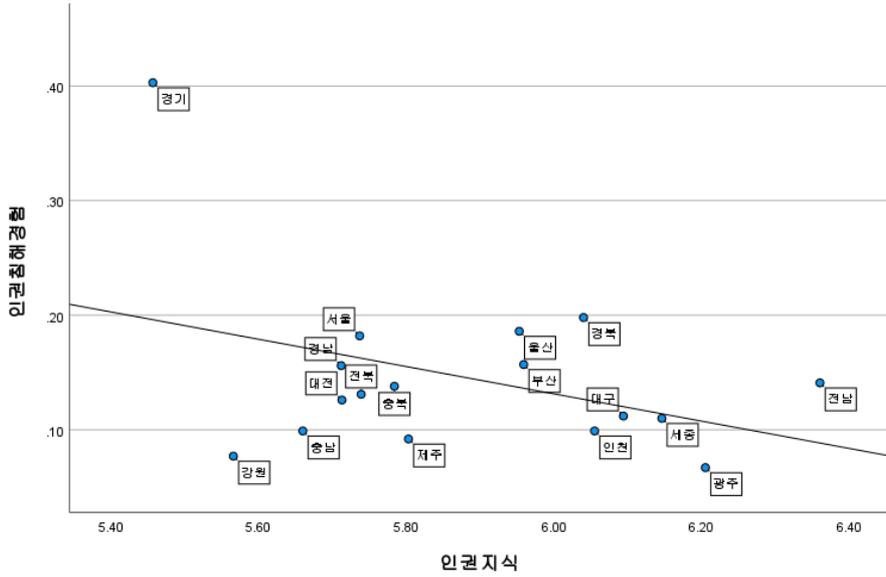
[그림 I-17] 지역별 인권지식 정도와 차별 경험의 인당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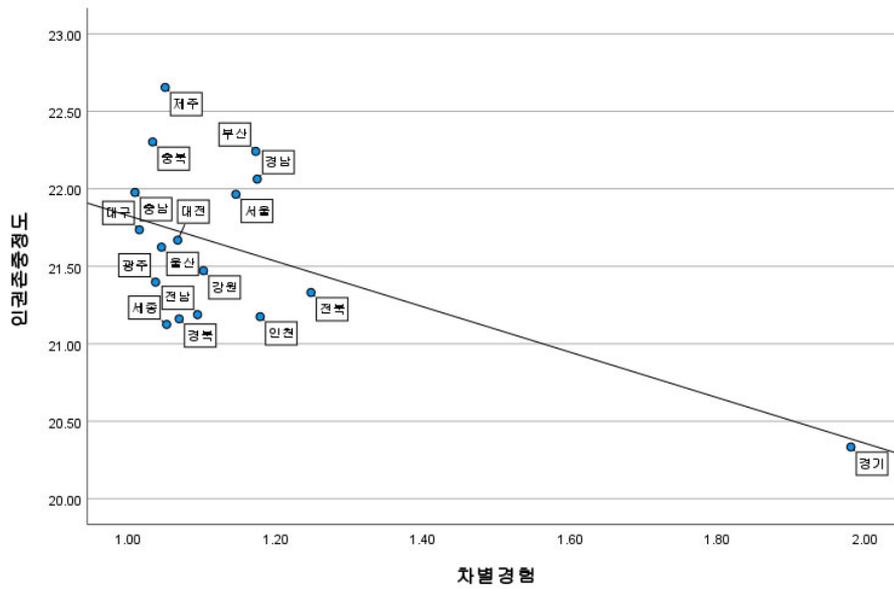
[그림 I-18]은 광역별 평균적 인권지식의 정도를 광역내 인권침해 경험 건수 평균과 교차시킨 결과이다. 인권지식 수준이 낮고 인권침해 경험도 예외적으로 높은 지역이 경기이며, 앞서 [그림 I-17]과 마찬가지로 인권지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인권침해 건수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가 광주이다. 반면 인권침해 건수는 낮는데 인권지식 정도도 낮은 지역이 충남, 강원, 제주이며, 인권지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비해 인권침해 건수가 높은 경우가 경북, 울산 등이다.

I. 지역별 인권정책과 인권실태

[그림 I-18] 지역별 인권지식 정도와 인권침해 경험의 인당 건수



[그림 I-19] 지역별 차별 경험 건수와 인권준중 정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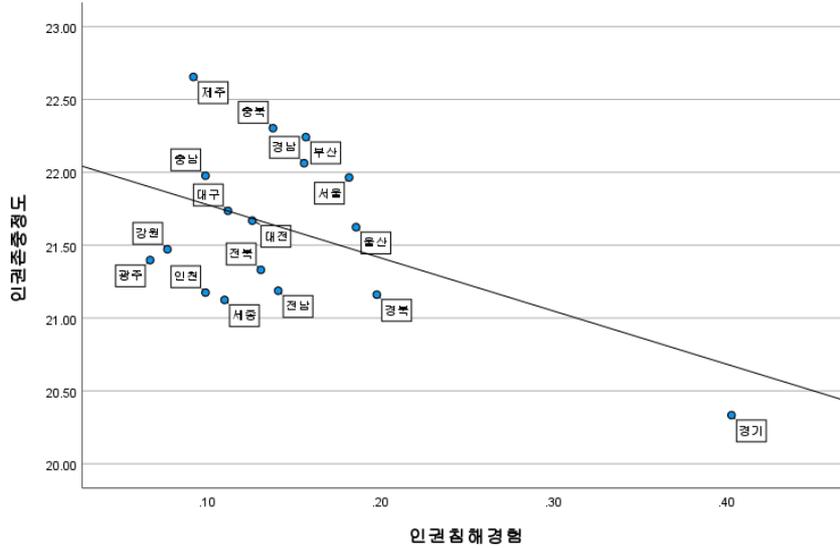


[그림 I-19]에서 [그림 I-21]까지는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경험한 건수가 많은 지역에서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한 평가도 낮아지는가를 자료를 통해 보여준다. [그림 I-19]는 광역별로 차별 경험의 평균 건수와 인권존중 정도에 대한 평가를 교차시킨 결과이다. 예외적으로 차별 경험이 많고 인권존중 정도에 대한 평가가 낮은 지역이 경기도이다. 인권존중 정도에 대한 평가가 높은 지역으로 차별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에 속하는 것이 서울, 경남, 부산이며, 반대로 차별 경험이 적는데 인권존중에 대한 평가가 낮은 지역이 세종, 경북, 전남, 광주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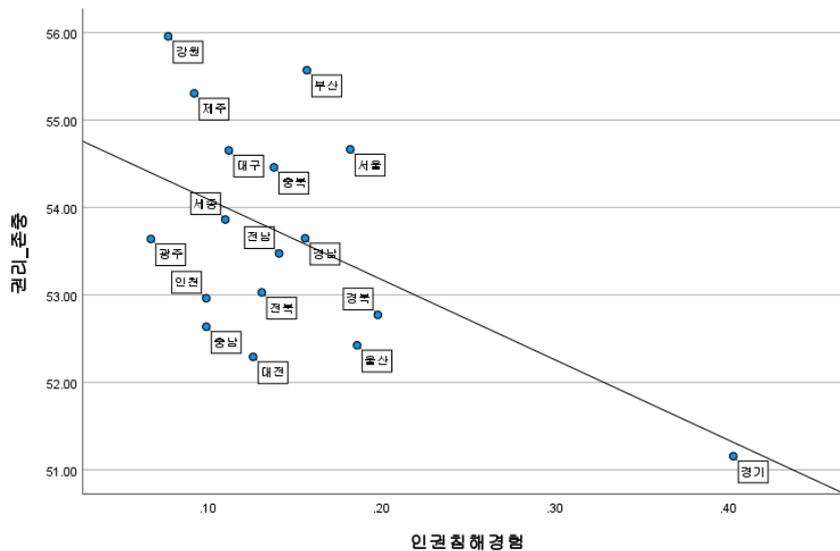
[그림 I-20]은 광역별로 인권침해 경험의 평균 건수와 인권존중 정도에 대한 평가를 교차시킨 결과이다. 예외적으로 인권침해 경험이 많고 인권존중 정도에 대한 평가가 낮은 지역이 그림 19에서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이다. 인권존중 정도에 대한 평가가 높은 지역으로 인권침해 경험이 많은 편에 속하는 것이 서울, 경남, 부산이며, 반대로 차별 경험이 적는데 인권존중에 대한 평가가 낮은 지역이 세종, 인천 등이다.

[그림 I-20]의 수직축이 본인, 국민 전반, 그리고 취약집단 등에 대한 인권존중 정도를 종합한 것이라면, 그림 21의 수직축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존중되는 정도를 종합한 것이다. 광역별 인권침해 경험의 평균 건수와 여러 권리들이 존중된다는 정도의 평균을 교차한 결과가 그림 21이다. 역시 인권침해 건수가 예외적으로 높고 권리가 존중된다는 응답의 정도가 예외적으로 낮은 지역이 경기이다. 인권침해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에 비해 권리 존중에 대한 평가가 높은 지역이 서울, 부산 등이며, 반대로 인권침해 경험은 많지 않은데 비해 권리 존중 정도의 평가가 낮은 지역이 충남, 인천, 대전 등이다.

[그림 I-20] 지역별 인권침해 경험 건수와 인권존중 정도 평가



[그림 I-21] 지역별 인권침해 경험 건수와 권리존중 정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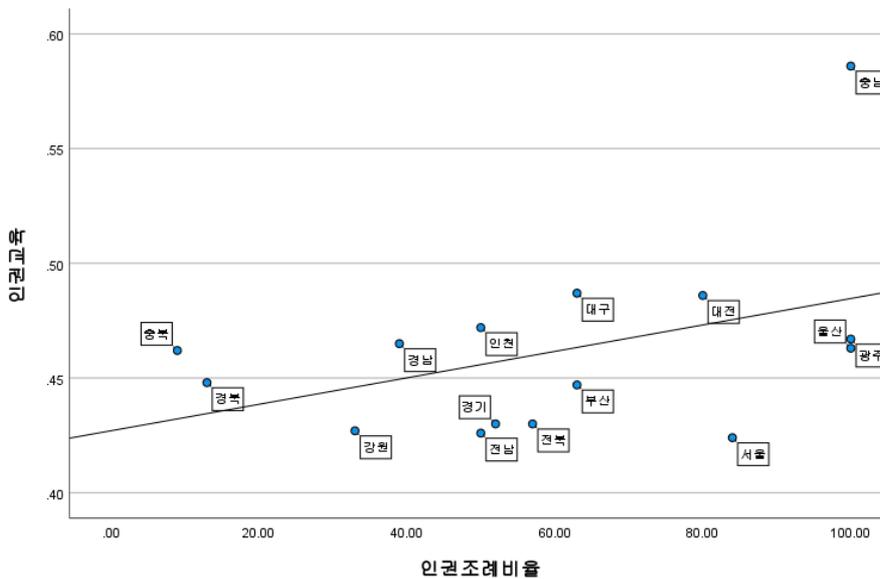
4) 인권제도, 인권교육과 인권에 대한 이해, 의견 및 활동

규범적 차원의 인권제도로써 조례가 잘 갖춰진 지역에서 인권교육 이수 비율이 높은가? 인권 교육을 받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광역은 인권에 대한 지식이나 인권제도에 대한 인지가 높

은가? 인권 쟁점에 대한 의견이 진보적인 편에 속하는 광역은 인권활동에서도 활발한가? [그림 I-22]에서 [그림 I-26]까지는 국가인권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위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본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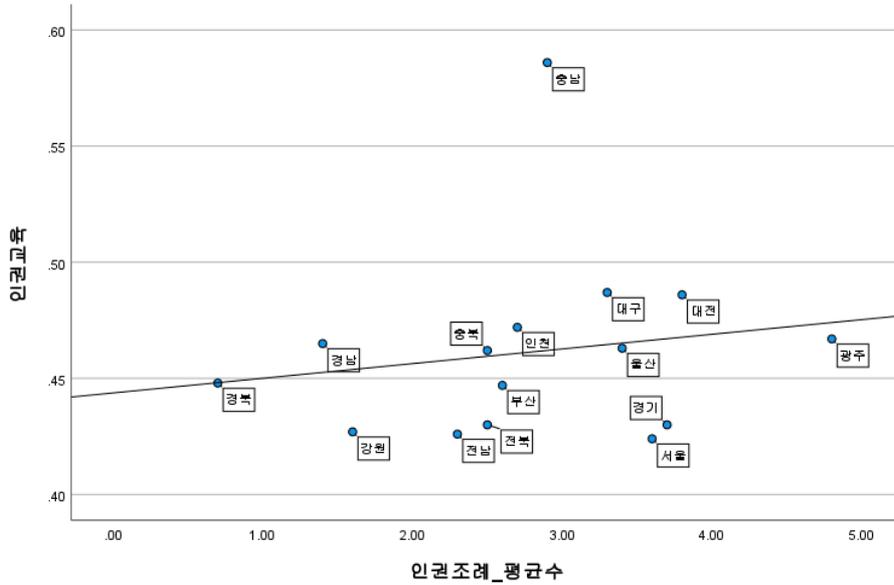
[그림 I-22]는 광역별로 기초 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제정 비율과 광역내 인권 교육 이수 비율을 교차시킨 결과이다. 인권조례가 모든 기초 자치단체에 제정된 충남, 울산, 광주 중에서 충남이 예외적으로 인권교육 이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대체로 인권 기본조례가 제정된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인권교육 이수 비율도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인권조례가 비교적 잘 갖춰진 반면 인권교육 이수 비율이 낮은 지역으로 서울이 대표적이다. 인권조례 제정 비율이 높지 않는데 인권교육 이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충북이다.

[그림 I-22] 지역별 인권조례 제정 비율과 인권교육 이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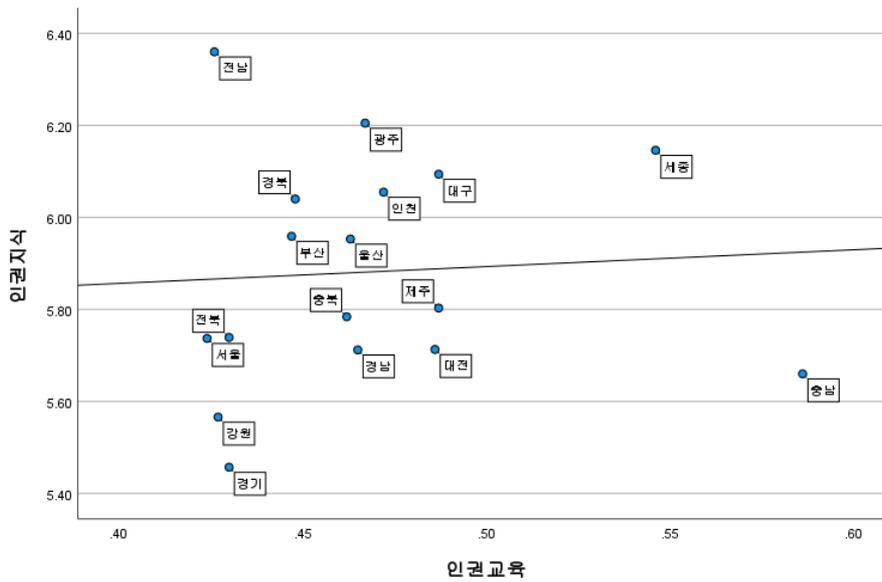


I. 지역별 인권정책과 인권실태

[그림 I-23] 지역별 인권조례 평균 개수와 인권교육 이수 비율



[그림 I-24] 지역별 인권교육 이수 비율과 인권지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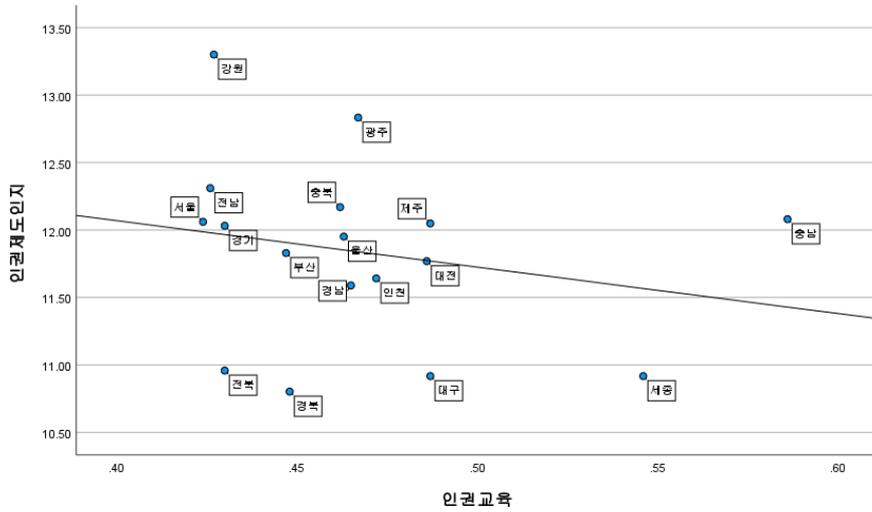


[그림 I-23]은 광역내 기초 자치단체의 인권 관련 조례의 평균 제정 건수와 인권교육 이수한 비율을 교차시킨 것이다. 그림 21과 비슷하게 인권조례가 많이 제정된 지역일수록 인권교육의 이수 비율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광주, 대전, 대구 등이 이러한 예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인권 조례 평균 건수가 낮고 인권교육 이수 비율도 낮은 지역이 강원이다. 인권조례 평균 제정 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권교육 이수 비율이 낮은 지역으로 서울, 경기를 들 수 있다. 충남은 인권 관련 조례의 제정 건수는 중간 정도인데 인권교육 이수 건수가 예외적으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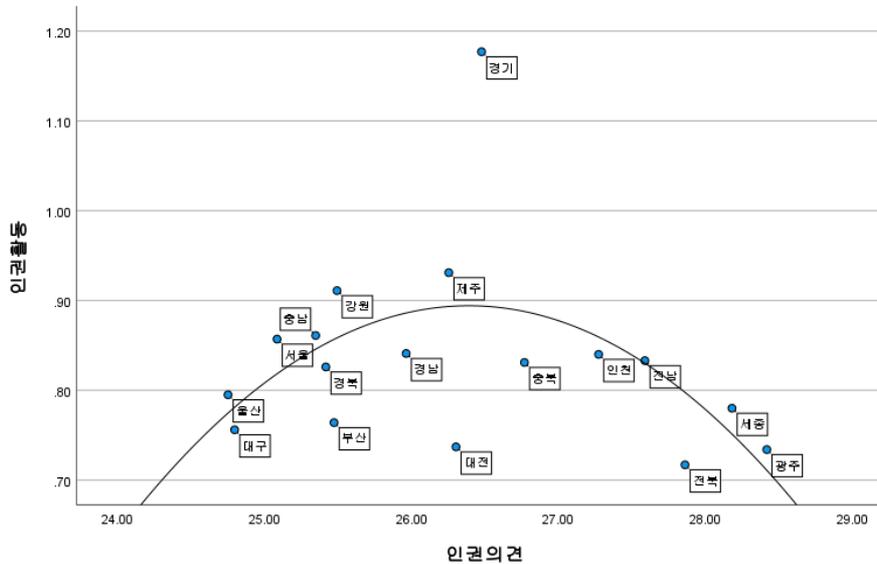
[그림 I-24]는 광역의 인권교육 이수 비율과 광역별 인권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교차시킨 결과이다. 이 그래프는 대체로 인권교육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래프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인권교육의 이수 비율과 인권에 대한 지식 간에는 연관성이 매우 약하게 나타난다. 인권교육 이수 비율이 높은 것에 비해 인권지식의 정도가 낮은 예가 충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권교육 이수 비율이 낮은 반면 인권지식이 높은 예로 전남을 들 수 있다. 경기와 강원은 인권교육 이수 비율도 낮고 인권에 대한 지식의 정도도 낮은 대표적인 예라면, 세종은 인권교육 이수 비율도 높고, 인권에 대한 지식의 정도도 높은 경우이다.

[그림 I-25]는 광역별로 인권교육 이수 비율과 인권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를 교차시킨 결과이다. 역시 인권교육과 인권제도에 인지 간에는 매우 약한 관련성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권교육 이수 비율이 높은 충남과 세종의 경우 충남은 인권제도 인지가 상대적으로 중간 수준이고, 세종의 경우는 인권제도에 대한 인지가 낮은 편에 속한다. 대구 역시 인권교육 이수 비율에 비해 인권제도에 대한 인지가 낮은 지역이다. 반면 강원은 인권교육 이수 비율이 낮은 것에 비해 인권제도에 대한 인지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인권교육 이수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면서 인권제도에 대한 인지도 높은 지역이 광주이며, 인권교육 이수 비율이 낮고 인권제도 인지 또한 낮은 지역은 전북과 경북이다.

[그림 I-25] 지역별 인권교육 이수 비율과 인권제도 인지 정도



[그림 I-26] 지역별 인권 쟁점에 대한 의견과 인권 활동 정도



[그림 I-26]은 인권쟁점에 대한 의견이 진보적인 정도와 인권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교차한 결과이다. 광역별로 인권쟁점에 대해 진보적인 정도에서의 차이는 인권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와 직선적이기보다는 곡선적인 관계를 보인다. 즉 인권쟁점에 대한 의견이 중간 정도인 경우에 인권활동에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인권쟁점에 대한 의견이 중간에 속하는 경기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권활동 참여가 높은 지역이며, 제주 또한 상대적으로 인권활동이 높은 편이다. 반면 세종,

광주, 전북은 인권쟁점에 대한 의견이 진보적인 편인데 반해 인권활동은 적극적이지 않다. 또한 대구, 울산의 경우 역시 인권에 대한 의견이 보수적이면서 인권활동이 적극적이지 않다.

5 결론 및 제언

이 글은 광역 자치단체를 단위로 해서 인권제도와 인권실태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규범적 차원에서 인권제도가 잘 갖춰진 지역에서는 인권교육을 이수한 비율이 높고, 인권제도에 대한 인지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인권교육을 이수한 비율이 높은 지역이 반드시 인권보호에 대한 지식이 높거나 인권제도에 대한 인지가 높지는 않다. 이러한 결과는 인권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과 함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이때 교육의 효과를 개인 수준에서 본 것이 아니라 광역이라는 집합적 단위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분석방법상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의 여지가 있다.

본인과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의 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인권침해나 차별의 건수가 높게 나타난 지역은 인권존중이나 권리존중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경향이 있었다. 인권 침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가 매우 중요하지만 예방적으로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을 줄여서 인권존중과 권리존중에 대한 평가를 높이고자 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에 대한 지식이 높아지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글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인권조례의 제정 비율이나 인권 관련 조례의 수로 측정한 인권의 제도화는 차별 경험이나 인권침해 경험의 건수, 인권존중이나 권리존중과 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 수준에서 인권 제도화의 효과가 인권교육을 제외한 다른 인권실태 들에서 찾기 어려운 것은 한편에서는 인권 제도화가 이제 시작 단계여서 아직 본격적인 효과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decoupling)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앞서 인권제도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대로 인권제도화의 역행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인권제도를 유지하면서 그 실효성을 보다 높여갈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인권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경험하는 인권침해나 차별이 줄고, 인권존중과 권리존중에 대한 평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분석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경기도가 다른 지역과 달리 예외적이라는 사실이다. 경기도는 인권침해나 차별의 경험이 현저히 높고, 인권존중이나 권리존중에 대한 평가 또한 매우 낮다. 인권활동 면에서도 매우 적극적인 편이다. 반면 인권제도화나 인권지식에서는 중간 정도이며, 인권교육을 받은 비율은 낮은 편이다. 경기도가 이처럼 다른 지역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II. 한국사회 혐오표현의 실태와 정책제안 : 2023년 인권의식실태조사를 중심으로

1. 혐오표현 실태파악의 목적과 그 배경
2. 혐오표현 실태에 대한 기존 조사
3. 2023년 조사에 나타난 혐오표현 실태
4. 혐오표현에 대한 정책 제언

II

한국사회 혐오표현의 실태와 정책제안 : 2023년 인권의식실태조사를 중심으로

1 혐오표현 실태파악의 목적과 그 배경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한다고 보아도 좋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혐오표현들의 대상은 역사적으로 그 기원이 오래된 여성, 성소수자, 노인, 아동, 난민, 외국인 등이다. 그러나 인터넷망과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2010년 경부터 다양한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이 가지는 파급 효과와 사회적 해악은 한국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외국인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가 주목받았으며, 일간베스트(일베)나 메갈리아의 등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혐오표현, 밈, 혐오관련 표식들의 남용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혐오표현과 혐오 발언이 시위현장 및 국회 등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되었다. 또한 더욱 심각한 지점은 혐오표현은 종종 재미를 위한 유희활동으로 포장되기도 하며,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은 이상하게 여겨지거나 따돌림을 받기도 하는 상황이 많다는 점이다. 또한 소수자, 여성, 이주민 등에 대한 폭력이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 사이에는 유머나 재미로 정당화되고, 또래 집단 내 하나의 놀이로 공유되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2010년대 한국사회에서 혐오표현과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여러 사건들을 돌아볼 때 2023년 인권의식실태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한국인들의 혐오표현에 대한 다양한 층위들을 재조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또한 2023년 인권의식실태조사는 코로나19가 불러일으켰던 다양한 인권침해와 불평등의 상황이 개인들의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면을 통해 혐오표현을 직접 접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매체의 혐오표현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에 대한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전면 대면 상황으로 전환한 후 개인들이 혐오표현의 심각성이나 규제, 혹은 혐오표현에 대한 인지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2023년부터 각 지역의 인권 제도나 규제 정도와 관련하여 혐오표현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반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

는 2023년 <인권실태조사>에 포함된 혐오관련 문항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1) 혐오표현의 인지와 대상, 그리고 경로

인권감수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엇이 혐오표현인지를 인지하는 것 자체가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나아가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혐오표현의 원인으로는 개인의 합리화라는 심리적 기제와 온라인 문화의 유희성이 강조되고 있다(김학준 2017). 이러한 상황속에서 같은 표현을 놓고도 무엇이 혐오표현이고 무엇이 혐오표현이 아닌지를 구별하는 일은 혐오표현에 대한 어떤 정책을 마련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에 따라 혐오표현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2023년 <인권의식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본 혐오표현의 경험은 각 개인의 객관적이 사회인구학적인 변수가 어떻게 혐오표현을 인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수 있으며 지역의 인권정책 수준이 개인 수준의 혐오표현의 인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혐오표현의 대상과 혐오표현을 접하게 되는 경로까지도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에서 파악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2) 혐오표현 법적 규제에 대한 찬반

혐오표현과 관련된 쟁점 중 가장 난해한 지점으로 꼽히는 것이 혐오표현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기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혐오표현 규제 찬성에 대한 근거는 첫째, 소수자 개인들에 대한 해악 둘째, 소수자 개인을 넘어선 소수자 집단 자체에 대한 해악, 셋째, 혐오표현이 실제 범죄나 혹은 차별 행위, 더 나아가서는 증오범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된다(이승현 2016; 홍성수 2015). 혐오표현 규제를 반대하는 근거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 가장 큰 내용을 차지한다. 혐오표현의 규제는 사상의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혐오표현을 규제하였을 때 이는 표현의 자유라는 개인의 권리와 규제법령이 직접 충돌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사실은 혐오표현을 단순히 규제할 대상으로 볼 수 없음을 시사한다. 특히 혐오표현을 단순히 특정 어휘나 욕설로 한정하고 혐오표현이 발화되는 맥락과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혐오표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으로 인해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박미숙·추지현 2017; 윤성욱 2019). 또한 혐오표현은 단순히 그 표현으로 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혐오표현이 불러온 해악, 즉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규제가 되는 것으

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혐오표현의 소극적인 규제에 그치고 마는 한계가 있다(최종선 2018; 김수아·김민정·이동후·홍성일 2020). 본 연구에서는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해 논하는 데에는 자료의 한계가 있지만 2023년 인권의식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들이 혐오표현 규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자율규제가 혐오표현 규제에 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인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것은 향후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를 논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혐오표현 실태에 대한 기존 조사

2010년대에 들어 혐오표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혐오표현 실태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현재까지 다양한 기관과 리서치기관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다. 특히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홍성수 2016),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한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박미숙·추지현 2017),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에 대한 청소년 인식조사>, <2019년 혐오차별 국민 인식 조사>(리얼미터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단 2019), 2020년 서울시의 <인권의식 및 혐오표현 실태조사>(박진우 2020),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는 2010년대 한국사회의 혐오표현에 대한 실태를 보여주는 좋은 사전 연구자료이다. 또한 코로나 시기에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코로나19와 혐오의 팬데믹> 조사 역시 한국사회의 혐오표현과 관련된 키워드에 대한 전체적인 지형을 그리는데 유용한 조사였다.

위에서 언급한 각 조사와 2023년 인권의식실태조사와 관련성에 유의하여 각 조사의 연구결과를 비교·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2019년 실시한 <혐오표현에 대한 청소년 인식조사>는 전국 거주 만 15세 이상 17세 이상 청소년(중학교 3학년~고2학년)에 해당하는 1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크게 혐오표현에 대한 경험(온·오프라인 혐오표현 경험, 혐오표현 영향, 온·오프라인 혐오표현 사용), 혐오차별에 대한 인식(대상별 차별 동의정도, 혐오표현 동의정도, 혐오표현 관련 전망 동의정도), 혐오차별 대응정책에 대한 인식의 차원으로 나누어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이 연구결과는 23년 <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 제외된 18세 이하 집단을 조사했다는 점이 유용하다. 연구결과, 전체 68.3%의 청소년들이 온·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했고, 혐오표현 대상은 여성(63.0%), 남성(58.6%), 성소수자(57.0%) 순이었다. 또한 성별 관련 혐오표현에 대하여 33.6%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 혐오표현 경로 역시 학교(57%), 학원

(22.1%), 집(13.1%) 그리고 온라인(82.9%) 순이었으며 주체 별 혐오표현 경험빈도가 학교 선생님(17.1%), 학원선생님(9.5%), 친구(54.8%), 부모님이나 가족(10.4%)였다는 점도 특이할 만 하다. 혐오차별 대응정책에 대한 태도 역시 대부분의 대응정책(정부의 적극적 대책마련, 인권다양성 존중 학교 교육 확대, 국민인식 개선 교육, 캠페인 강화, 온라인 사업자 혐오표현 규제 노력)에 80%이상의 찬성을 보이거나 벌금 징역 등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찬성률이 낮았다.

2020년 <서울시 청년인권인식 및 혐오표현 실태조사>는 서울시 거주 청년 1천여명에 대한 오프라인 설문/면접 조사였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토론방 자료를 분석·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최근 1년간 서울시 청년들의 대다수(87.7%)가 혐오표현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는 것은, 혐오표현이 일상화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혐오표현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98.2%가 혐오표현에 접촉한 경험이 있다고 말한 점은, 혐오표현의 접촉과 가해 경험 간의 차이가 작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혐오표현에 노출되었을 때 50% 이상의 사람들이 혐오표현의 메시지에 적극적으로거나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답변했으며, 이는 '옳지 않지만 현실을 반영한다' 라는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생각보다 더 많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혐오표현 문제의 근본 원인이 명확한 규범적 기준의 부재와 이를 준수하려는 의지의 결여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위 연구의 결과는 개인들이 서로 다른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면서 혐오표현에 대한 반응이 '옳지 않지만 현실'이라는 태도로 나타나며, 이는 인권 침해에 대한 무감각함과 직결된다.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가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며 법적, 제도적 개입만으로는 부족하며, 일상생활에서 차별과 배제의 구조를 해체하고 혐오표현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실천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영역을 개발하고, 혐오표현 대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형성과 같은 실질적 대안 마련이 요구됨을 주장하였다.

2021년 실시된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는 대한민국 거주 만 15세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경로에 걸쳐 접하게 되는 혐오표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2019년에 실시된 조사와의 차이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오프라인 실생활이나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70.3%(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차별 국민인식 조사」에서는 혐오표현을 경험한 비율이 64.2%로 조사되어 2년 전 조사보다 6.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단, 2019년도 조사대상자는 만19세 이상 성인만을 조사대상으로 한정))였으며 온라인에서 접한 혐오표현의 대상은 여성(80.4%), 특정지역 출신(68.9%), 페미니스트(76.8%), 노인(72.5%) 순이었다. 오프라인의 경

우 노인(69.2%), 특정지역 출신(68.9%), 여성(67.4%), 페미니스트(64.8%) 순이었다. 이 경우 여성과 페미니스트를 구분하여 조사한 점이 특이하다. 혐오표현 경험 장소 역시 오프라인 실생활 혐오표현 경험 장소 방송매체(56.4%), 학교·직장(39.9%), 마트,식당 등 상업 시설(37.1%)순,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 장소는 뉴스기사 댓글(71.0%), 개인운영방송(53.5%), 온라인게시판(47.3%) 순이었다. 혐오표현 문제 심각성은 오프라인 실생활 혐오표현 ‘심각하다’ 67.2%, 온라인 혐오표현 ‘심각하다’ 79.3%로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심각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혐오표현 대응 방안(사이트별 관련 지침 제작/게시, 용이한 신고/조치 절차 마련, 관련기구 적극 심의/조치, 디지털 리터러시 등 교육 강화)에 응답자 대다수가 동의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와 혐오의 팬데믹』 보고서는 데이터 마이닝을 사용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SNS를 중심으로 혐오 및 차별 언어를 분석했다. 하루에 1,80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두 시기별 상위 1,000개 이슈어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혐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인종 차별, 성 소수자 혐오, 지역 혐오, 신천지 혐오 등이 언급량에서 큰 변동을 보였다. 보고서는 장애인 혐오와 여성 혐오가 코로나19와 큰 연관성이 없으며, 혐오적 표현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에 대한 비방으로 사용됨을 밝혔다. 이러한 언어 사용이 일상적임을 확인하고, 혐오 대응책으로 새로운 관점 정립이 필요함을 밝혔다.

그러나 기존 조사들은 대부분 모바일을 이용한 조사로서 모바일 매체, 즉 온라인 매체에 접근성이 용이한 응답자들의 응답률이 더 높을 수 밖에 없었다는 조사방법의 한계가 있다. 물론 온라인상의 여성혐오 문제나 혹은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특정 세대나 계층에 대한 독특한 혐오표현의 양상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김수아2015;홍주현·나은경 2016). 그러나 전체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의 혐오표현에 대한 논의와 그 지형도를 그려보고자 할 때, 이는 한국 사회의 정보사회의 격차, 즉 연령별, 직업별, 계층별, 그리고 성별에 따른 디지털정보격차를 감안할 때 조사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성욱준 201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매해 1만 가구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인권과 혐오표현의 실태를 조사한 <인권의식실태조사>의 결과는 기존 결과보다 객관적으로 한국사회의 전체적인 혐오표현에 대한 지형을 그릴 수 있는 좋은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2023년 조사에 나타난 혐오표현 실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해온 인권의식실태조사는 2019년부터 다음과 같은 혐오표현에 대한 문

II. 한국사회 혐오표현의 실태와 정책제안

항들을 조사해왔다. 2023년 조사는 국내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15,3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지난 1년간 혐오표현을 접해본 적이 있는지(혐오표현의 인지), 혐오표현을 접하게 된 경로, 혐오표현의 대상, 혐오표현을 들었을 때의 반응, 우리사회의 혐오표현 심각성에 대한 인식, 혐오표현 법적규제 찬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다음 표는 2023년 인권의식실태조사에 포함된 문항과 그 척도를 보여준다.

〈표 II-1〉 2023년 인권의식실태조사에 포함된 혐오 관련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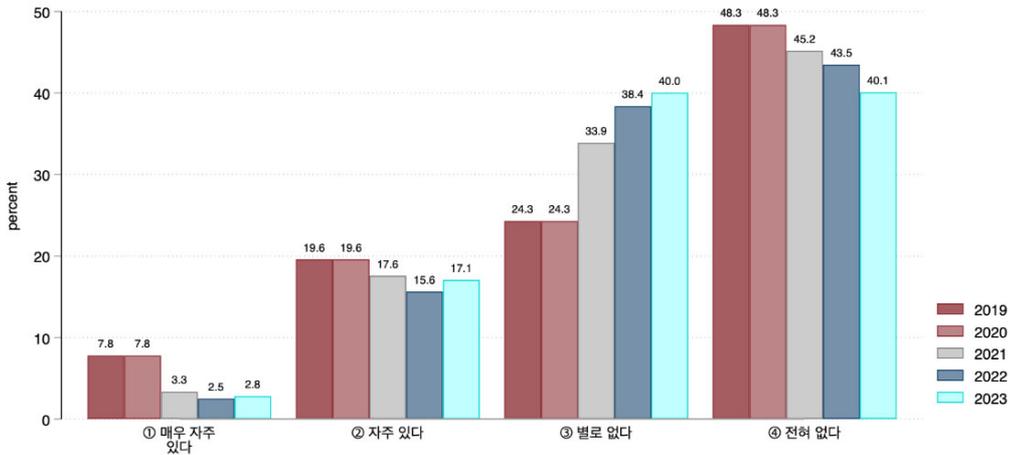
실태조사 설문 문항	척도
지난 1년간 혐오 표현을 접해본 적이 있습니까?	(1) 매우 자주 있다 - (4) 전혀 없다
혐오표현을 접하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친구/가족/지인 온라인 포털/카페/커뮤니티 메신저 서비스(카카오톡, 밴드, 라인, 위챗 등)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TV/ 라디오 인터넷방송(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캠페인, 거리집회 기타
혐오표현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여성 남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등) 북한이탈주민 난민 성소수자 특정종교인 노숙자 특정지역출신인 정치인 연예인 기타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 동조하는 의견이나 행동을 취했다 - (3)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 (5)반대하는 의견을 내거나 시정을 요구했다
우리 사회에서 혐오표현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심각하다 - (4)전혀 심각하지 않다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한다 - (4)반대한다

1) 각 항목별 2023년 혐오표현의 실태

(1) 지난 1년간 혐오 표현을 접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항목은 개인들이 ‘혐오표현’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그것을 주변에서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항목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인지가 ‘혐오표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이에 대한 규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조사이다. 다음 <그림1>은 지난 1년동안 혐오표현 경험을 2019년부터 시계열로 살펴본 결과이다. 2019년부터 자료를 비교해 보았을 때, 지난 1년간 혐오표현을 접한 정도가 2020년부터 줄어들다가 23년에 들어 1) 매우 자주 있다 2) 자주 있다 범주의 퍼센트가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비대면 상황에 많이 노출되었던 코로나시기(2020, 2021년)에 혐오표현을 접하는 정도가 줄었다가 2022년부터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며 사람들 간의 대면 접촉이 늘어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혐오표현을 들어 본 적이 ‘전혀 없다’의 범주가 2019년부터 꾸준히 줄어든 것은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증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I-1] 지난 1년 동안 혐오표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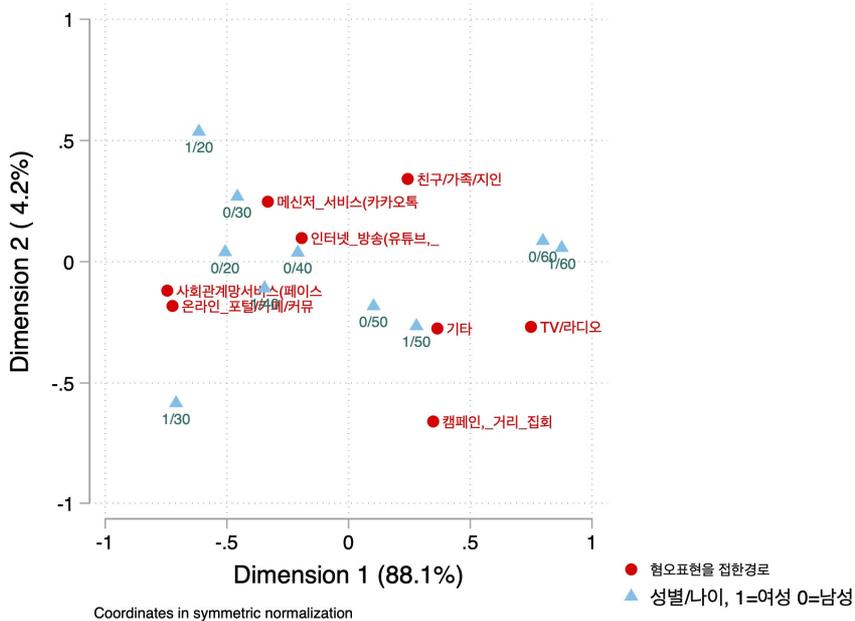


(2) 혐오표현을 접하게 된 경로는 무엇이었습니다?

본 연구는 연령별 성별에 따른 혐오표현에 인식에 대한 차이를 중심으로 연령과 세대를 기준

으로 집단을 분류하여 혐오표현을 접한 경로를 대응분석한 결과, 다음 <그림 2>과 같은 패턴이 나타났다. 이는 x축과 y축 사이에서 집단과 집단, 그리고 경로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경로에서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세대별로 유사한 경로를 통해 혐오표현을 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그림의 우측 위편에 보이는 0/60, 1/60은 각각 60대 이상 남성, 60대 이상 여성 집단을 의미하며 이 두 집단은 TV/라디오를 통해 혐오표현을 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20대와 30대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혐오표현을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30대 여성(1/30) 집단은 30대 남성(0/30), 20대 남성, 여성(0/20, 1/20) 모두와 확연히 동떨어진 경로로 혐오표현을 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20대 남성(0/20)과 여성(1/20)역시 남녀 간의 경로 별 패턴 차이가 크다.

[그림 II-2] 혐오경로별 대응분석(성별/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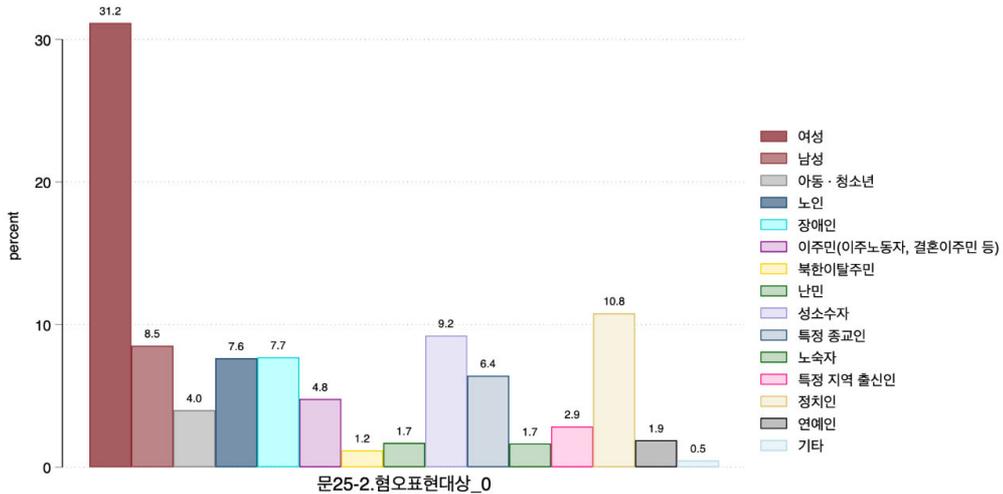


(3) 혐오표현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다음 [그림 II-3]은 2023년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많이 접해 본 혐오표현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이 언급된 혐오표현의 대상은 여성(31.2%), 정치인(10.8%), 성소수자(9.2%) 순이다. 그러나 정치인이나 혹은 연예인에 대한 혐오표현은 단순히 직

업군에 대한 비하라기 보다는 개인(유명인)에 대한 혐오, 혹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감정적 표현, 그리고 여성(연예인의 경우)에 대한 혐오표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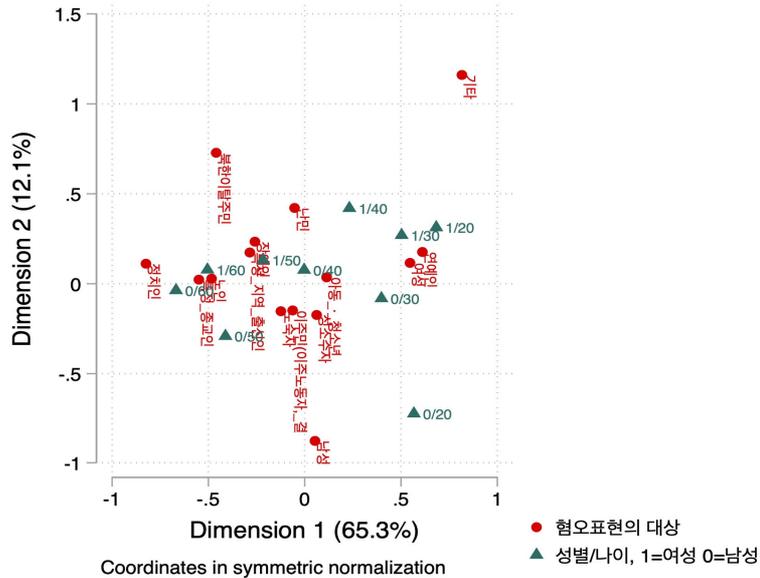
[그림 II-3] 가장 많이 접해본 혐오표현의 대상



다음 [그림 II-4]는 혐오표현의 대상에 대해 성별과 연령을 기준으로 대응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20대 남성(0/20)의 경우 ‘남성’에 대한 혐오표현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30대, 40대 여성(1/20, 1/30, 1/40)의 경우 연예인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을 많이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대상이 될 수 있는 혐오표현에 개인들이 민감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는 연예인에 대한 혐오표현이 연예인이라는 직업군에 대한 혐오표현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이 많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기존 혐오표현을 둘러싼 20대 남성과 여성의 갈등이 이 패턴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20대 남성과 여성은 본인이 가장 자주 접하는 혐오표현의 대상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분석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30대 남성(0/30)과 20대 남성(0/20)이 전혀 다른 혐오대상에 대한 혐오표현을 접하고 있다는 점이다. 30대 남성은 오히려 거리상으로 보았을 때는 20대 남성보다는 20대 여성이나 30대 여성과 더 가까운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30대라는 나이가 주는 효과인지 혹은 현재 30대에 해당하는 ‘세대’의 효과인지는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60대 이상의 남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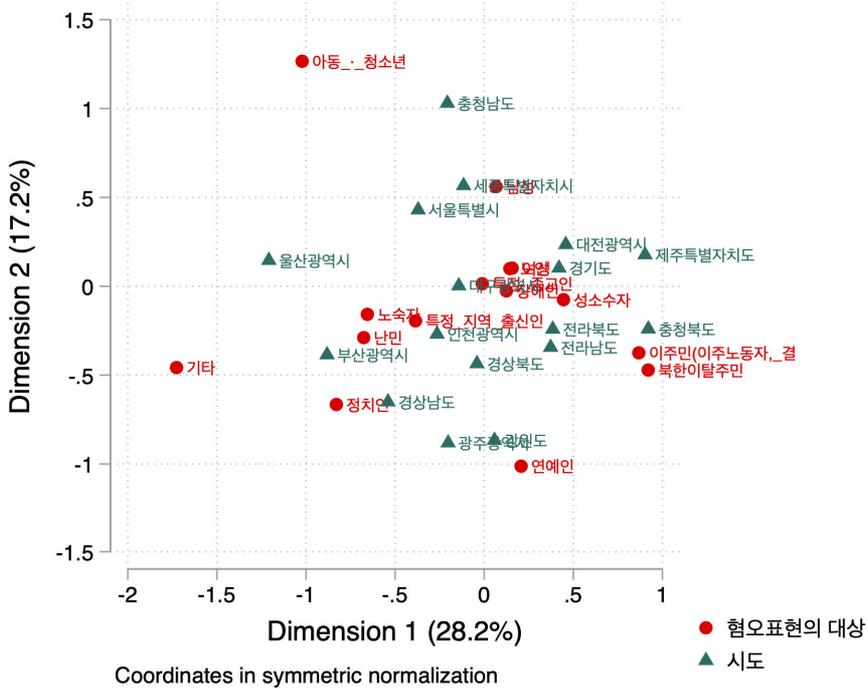
경우 혐오표현의 대상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은 이들의 혐오표현 경로 역시 차이가 없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60대 이상의 경우 노인, 특정종교인, 정치인,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혐오표현을 자주 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I-4] 혐오표현의 대상 대응분석 (연령/성별)



다음 [그림 II-5]는 혐오표현 대상들이 지역에 따라 어떤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지를 보여준다. <인권익실태조사>에 드러난 혐오표현 대상을 지역을 기준으로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를 살펴 보았을 때, 광역시와 도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남성’에 대한 혐오표현은 세종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개인들이 높게 접한다고 느끼고 있다. 여성이나 특정 종교인, 노인,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대전광역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자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의 경우 이주민이나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혐오표현을 자주 접하는 패턴을 보인다. 또한 부산광역시나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노숙자, 난민, 정치인, 특정지역 출신인을 대상으로 혐오표현을 자주 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5] 혐오표현 대상별 대응분석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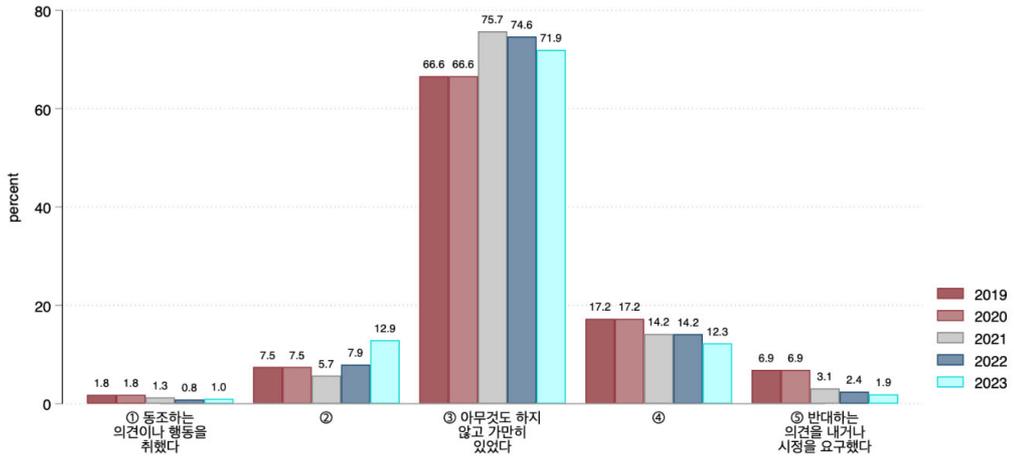


(4)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혐오표현을 들었을 때 개인들의 반응은 다음 <그림 6>에 제시되어 있다. 2023년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에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71.9%). 그러나 과거 년도와 비교해보았을 때 혐오표현에 동조하는 의견이나 행동을 취했다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더 기울어지고 있으며 적극적인 반대 의견 표명행위나 조치를 취하는 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혐오표현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혹은 이에 동조하지 않은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첫째, 응답자들이 본인에게 가해진 혐오표현이 아닌 타자, 즉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경우를 물었기 때문이다. 이는 본인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반응을 물었을 때와는 분명히 다른 차별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혐오표현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을 때의 해악, 즉 같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역시 이러한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혐오표현이 가지는 사회적 해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범주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낙인 효과, 그리고 증오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혐오표현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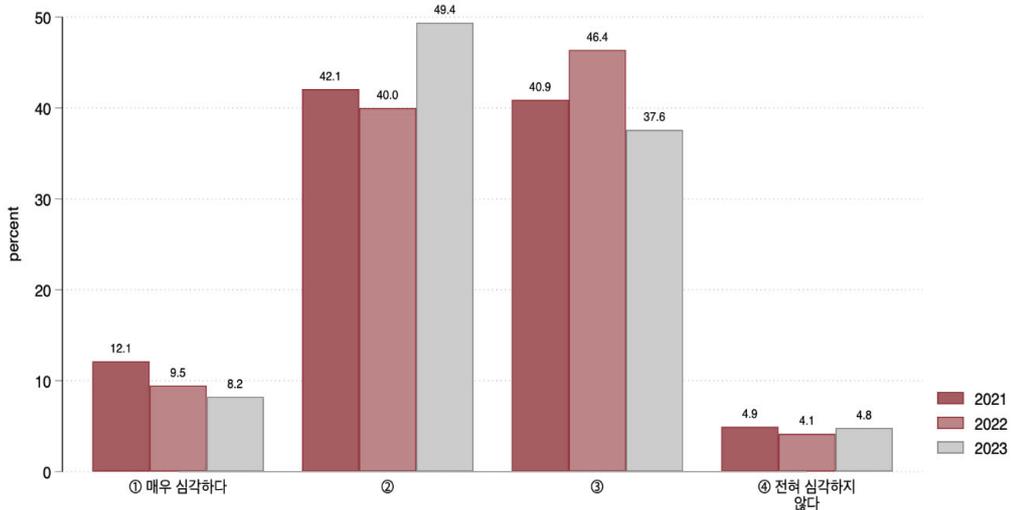
[그림 II-6] 혐오표현을 들었을 때의 반응



(5) 혐오표현의 심각성

[그림 II-7]은 지난 3년간의 혐오표현의 심각성에 대해 응답자들이 답변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혐오표현 심각성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매우 심각하다+심각하다(8.2%+49.4%)). 이는 혐오표현을 접한 응답자 비율이 높아진 것 과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응답자들이 어떤 범주를 선택하느냐는 매우 주관적일 수 있으나 혐오표현의 심각성 이전에 무엇이 혐오표현인지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생각한다면 이는 납득할 만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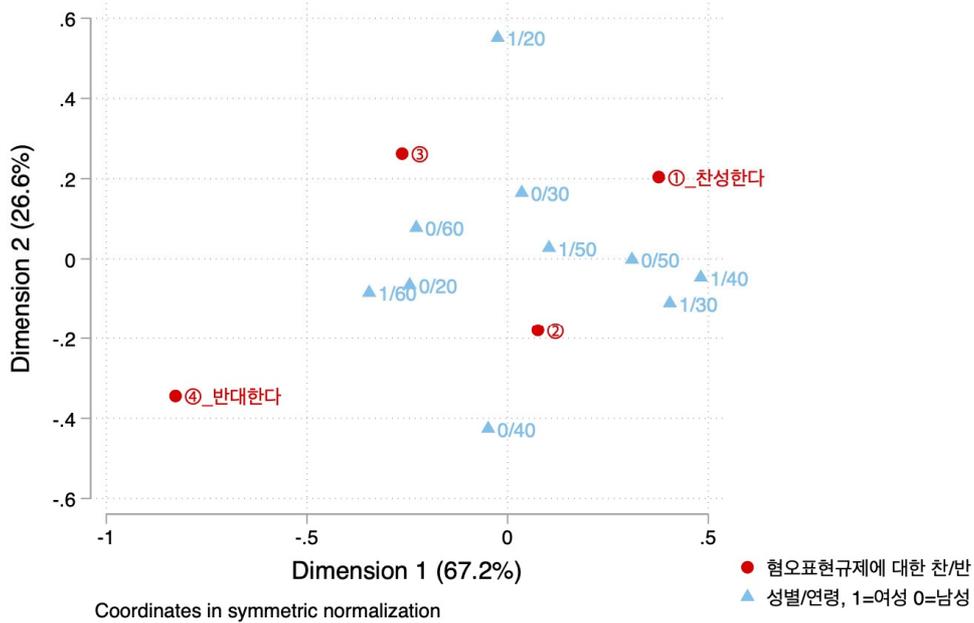
[그림 II-7] 혐오표현의 심각성에 대한 시계열 분포



(6) 혐오표현 법적규제 찬반에 대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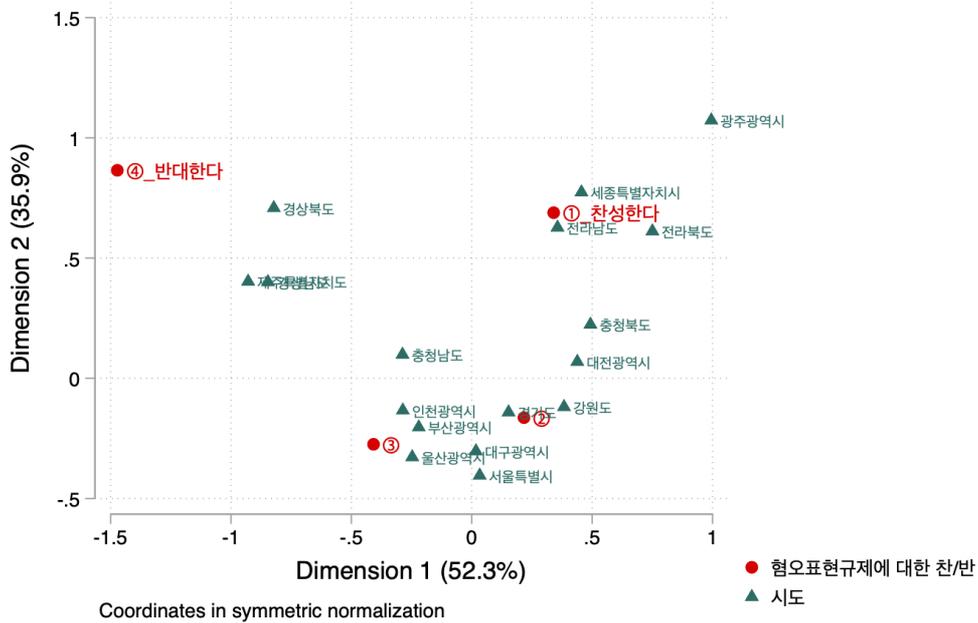
다음 [그림 II-8]은 혐오표현 법적규제 찬반에 대한 의견을 연령과 성별을 기준으로 대응분석한 결과이다. 이 경우, 30대, 40대 이상 여성(1/30, 1/40)과 50대 남성과 여성(0/50, 1/50)이 혐오표현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내어놓을 수 있다. 그러나 20대 남성(0/20)과 60대 이상의 남성과 여성(0/60, 1/60)이 유사한 패턴으로 혐오표현 규제에 대해 세번째 범주 즉, 반대하는 경향으로 쏠린다는 점은 혐오표현에 대한 찬반에 대해 세대별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성을 보여준다. 즉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20대 전체의 특성이 20대 남성에게만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20대 남성의 혐오표현에 대한 심각성의 인지가 20대 여성보다 덜한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또한 위 결과는 60대 이상의 남녀의 경우 혐오표현 자체에 대한 감수성과 혹은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II-8]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대응분석 (연령/성별)



다음 [그림 II-9]는 지역에 따른 혐오표현 규제에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응분석 결과이다. 이는 지역별 인권제도 정책 수준과 비교해 불만한 결과이다. <그림 9>를 통해 본다면 세종,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규제 찬성에 가까운 쪽이며 경상북도, 제주, 경상남도의 경우 반대의 패턴을 보인다. 경기나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찬성과 반대 둘 사이의 중립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혐오표현 규제라는 것은 단순히 혐오표현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기 보다는 개인들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즉 검열과 표현의 자유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혹은 혐오표현의 심각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를 혐오표현에 대한 동의·비동의로 읽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림 II-9]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대응분석 (지역별)



2) 혐오표현 경험, 혐오표현 심각성,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다음 <표 II-2>는 지난 1년 동안 혐오표현에 대한 인지, 혐오표현의 심각성,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한 찬·반 여부를 종속변수로 삼아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과 혐오표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 본인의 차별 경험, 2) 인권교육 여부, 3) 소수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 변수들을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돌린 결과이다. 이어서 제시된 <표 II-3>는 다중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II. 한국사회 혐오표현의 실태와 정책제안

〈표 II-2〉 혐오표현 경험, 혐오표현 심각성, 혐오표현 법적규제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1) 문25.지난 1년동안 혐오표현 경험	(2) 문26.혐오표현 심각성	(3) 문27.혐오표현 법적규제
여성	0.076*** (0.016)	0.037* (0.016)	-0.010 (0.017)
연령(준거20대 이하)			
30대	0.035 (0.035)	-0.026 (0.028)	-0.052 (0.031)
40대	0.134*** (0.033)	0.037 (0.027)	-0.083** (0.028)
50대	0.192*** (0.031)	0.074** (0.027)	-0.082** (0.028)
60대 이상	0.275*** (0.031)	0.178*** (0.027)	-0.028 (0.028)
고졸이상	-0.022 (0.018)	-0.031* (0.015)	-0.038* (0.017)
도시 거주	-0.134*** (0.018)	-0.048* (0.022)	0.064** (0.023)
직업(준거:관리자)			
사무직	0.064* (0.032)	0.158*** (0.028)	0.089** (0.031)
서비스/판매직	-0.028 (0.032)	0.120*** (0.027)	0.092** (0.030)
생산/기술직	0.018 (0.037)	0.157*** (0.032)	0.135*** (0.036)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060 (0.041)	0.259*** (0.044)	0.126** (0.046)
단순노무직	0.054 (0.040)	0.140*** (0.037)	0.099* (0.040)
기타	-0.143 (0.278)	0.066 (0.174)	0.220 (0.202)
무직	0.056	0.172***	0.090**

한국의 인권통계 2023

	(1)	(2)	(3)
	문25.지난 1년동안 혐오표현 경험	문26.혐오표현 심각성	문27.혐오표현 법적규제
	(0.032)	(0.029)	(0.031)
최근 1년동안 인권교육 유무	-0.345*** (0.029)	-0.160*** (0.021)	-0.066** (0.023)
종교있음=1	-0.034* (0.014)	-0.046*** (0.013)	-0.021 (0.015)
정치적성향	0.006 (0.006)	0.059*** (0.006)	0.069*** (0.006)
본인의 인권침해경험	-1.587*** (0.117)	-0.913*** (0.096)	-0.371*** (0.097)
사회적거리(소수자지인)	-0.059*** (0.007)	0.004 (0.007)	0.003 (0.009)
상수	3.198*** (0.050)	2.020*** (0.043)	1.825*** (0.047)
관측수	15303	15303	15303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II-3〉 다중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대값
혐오표현인지	3.24	.79	1	4
혐오표현심각성	2.43	.72	1	4
혐오표현법적규제	2.16	.78	1	4
성별(1=여성)	.55	.5	0	1
연령	3.7	1.36	1	5
대졸이상	0.39	0.49	0	1
도시거주	0.77	.42	0	1
직업군	4.87	2.57	1	8
인권교육경험	.01	.3	0	1
종교	.37	.48	0	1
정치적성향	4.2	1.28	1	7
본인의차별경험	0.23	.42	0	1
사회적거리감(소수자지인여부)	0.58	.93	0	6

우선 지난 1년 간 혐오표현의 경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의 경

우 남성 보다 혐오표현을 덜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20대를 기준으로 비교해보았을 때, 20대와 30대의 혐오표현 경험 혹은 인지에 대한 수준은 차이가 없으나 40대 이상부터는 혐오표현의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에 거주할 수록, 관리자 급과 비교했을 때 사무직만이 덜 혐오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며 종교가 있는 경우 혐오표현을 더 잘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적 성향이 혐오표현의 인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혐오표현 자체가 다양한 정치적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생각해볼 만한 주제이다.

개인의 교육수준의 정도는 혐오표현의 경험(인지)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혐오표현에 대한 경험이나 인지, 즉 혐오표현의 감수성은 개인의 교육수준의 문제가 아님을 시사한다. 결국 지난 1년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가 혐오표현의 인지에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사실은 혐오표현에 대한 인지를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본인의 인권침해 경험의 유무와 소수자 지인·가족 친구가 있는지의 여부가 혐오표현을 경험(인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혐오표현이 본인의 일이거나 혹은 본인의 주변 지인들의 일일 경우 혐오표현에 대한 공감 혹은 인지가 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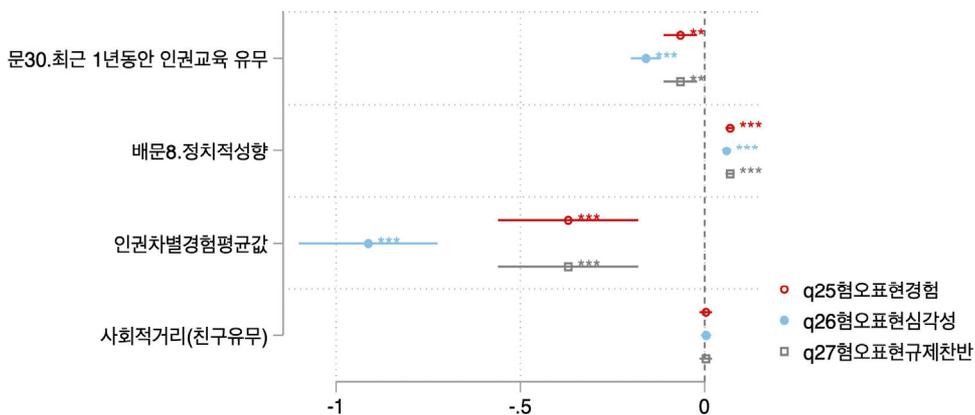
두번째 종속변수인 혐오표현의 심각성에 대한 결과는 첫번째 종속변수에 대한 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혐오표현의 심각성에 대해 혐오표현의 인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성일 경우 남성보다 혐오표현의 심각성이 덜 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심각성에 대해서는 20대를 준거집단으로 놓고 비교해보았을 경우 20대와 30/40대 이상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50대 이상 세대부터는 우리사회의 혐오표현이 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이 나타났다. 개인의 교육 수준은 혐오표현의 심각성에서 유의미한 격차를 보여주며 교육수준의 높을 수록 우리사회의 혐오표현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에게서도 같이 나타났으며 관리자급과 비교했을 때 모든 직업군이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군에서의 혐오표현 심각성에 대한 차이는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와도 관련이 깊다. 종교가 있는 경우 역시 우리사회의 혐오표현이 심각하다고 느낀다.

혐오표현 심각성에 대한 인지에 있어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차이를 불러오지 않는 반면 혐오표현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의 경우 보수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진 개인일 수록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많을 수록 혐오표현의 심각성 역시 깊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수자 지인·가족 친구가 있는 개인이라고 혐오표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개인이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느끼는 데에 있어 ‘자신의 문제’인 경우 그 심각성을 더 깊게 받아들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혐오표현의 심각성에서도 역시 지난 1년 동안 인권교육의 유무에 따라 그 심각성을 느끼는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의 혐오표현의 법적규제 찬·반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혐오 표현 법적규제의 찬·반에는 성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대간의 차이는 분명히 드러나는데 20대 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대와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20대를 기준으로 40대와 50대 이상 세대는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데 더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20대와 60대 이상 세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대응 분석에서도 나타난 패턴과 유사하다.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찬성하나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자급 개인과 비교했을 때 다른 직업군들은 대부분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반대한다.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있어서도 인권교육을 받은 개인일 수록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권교육의 경험이 중요성은 혐오 표현의 인지, 심각성의 인지, 혐오표현의 법적규제 모두에 공통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종교의 유무, 사회적 거리(소수자 지인 존재)의 유무는 혐오표현의 법적규제에 대한 개인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혐오표현의 심각성의 인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치성향이 보수적일 수록 혐오표현의 법적규제에 반대하고, 본인의 인권 침해 경험이 많을수록 혐오표현의 법적규제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II-10] 변수의 계수(coefficient)값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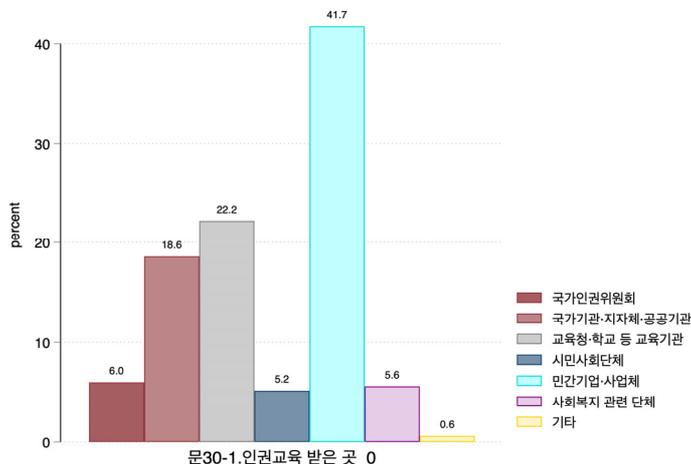
위의 [그림 II-10]은 혐오표현의 인지(경험), 혐오표현의 심각성, 혐오표현의 규제의 찬·반 여

부에 있어 사회인구학적 변수 외에 본인의 인권차별경험, 사회적 거리감(소수자 지인·가족·친구), 지난 1년동안 인권교육 경험 유·무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각 변수의 계수(coefficient)값을 비교해본 결과이다. 본인의 인권차별 경험이 실제 소수자 지인·가족·친구가 있는지 보다도 각 종속 변수에 있어서 더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며 개인이 혐오표현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 하느냐, 혹은 본인이 차별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가 혐오표현의 인지, 심각성에 대한 태도, 그리고 혐오표현 규제 찬·반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인권 교육 유·무가 역시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는 정책보다는 혐오표현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3) 인권교육에 대한 제안

2023년 <인권의식실태조사>에서 지난 1년동안 인권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개인들은 전체 응답자 중 약 10%에 해당하는 1,527명이었다. 이들이 인권교육을 받은 경로는 <그림 11>과 같다. 인권교육을 받은 경로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민간기업·사업체(41.7%), 교육청·학교 등 교육기관(22.2%),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18.6%), 국가인권위원회(6%), 시민사회단체(5.2%) 순이었다. 특히 대다수의 인권교육의 경로가 민간기업이나 사업체라는 점은 대부분 개인들이 공적인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에 인권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조직을 통해서임을 알 수 있다.

[그림 II-11] 인권교육을 받은 곳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지난 1년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대상자들(N=1,527)만을 선택해 다중회

귀분석을 다시 시행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을 한 범주로 묶어 준거집단으로 삼은 후 다른 인권교육의 경로와 혐오표현의 인지(경험), 혐오표현의 심각성, 혐오표현의 규제의 찬·반 여부에 어떤 차이가 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 II-4>와 같다(통제변수의 분석결과는 제외함).

<표 II-4> 인권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1) 문 25.지난 1년동안 혐오표현 경험	(2) 문 26.혐오표현 심각성	(3) 문 27.혐오표현 법적규제
국가인권위원회/국가기관/지자체(준거집단)			
교육청/학교등 교육기관	-0.102 (0.079)	-0.071 (0.059)	-0.099 (0.066)
시민사회단체	-0.475*** (0.133)	-0.068 (0.090)	0.053 (0.089)
민간기업/사업체	-0.197** (0.064)	-0.020 (0.048)	0.057 (0.055)
사회복지관련단체	-0.193 (0.107)	-0.080 (0.078)	0.014 (0.097)
기타	0.155 (0.314)	-0.348* (0.163)	-0.199 (0.217)

위의 분석에 따르면 인권교육의 경로에 따른 차별이 나타나는 것은 지난 1년동안의 혐오표현의 경험, 즉 혐오표현의 인지 부분이었다.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을 준거집단으로 할 때, 시민사회단체나 민간기업·사업체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혐오표현을 더 잘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분석은 혐오표현의 인지 즉 감수성에 대한 각 경로 별 인권교육의 내용 등을 보다 더 심도 있게 연구하여 그 효과를 비교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4) 지역별 인권제도와 정책을 통해 본 혐오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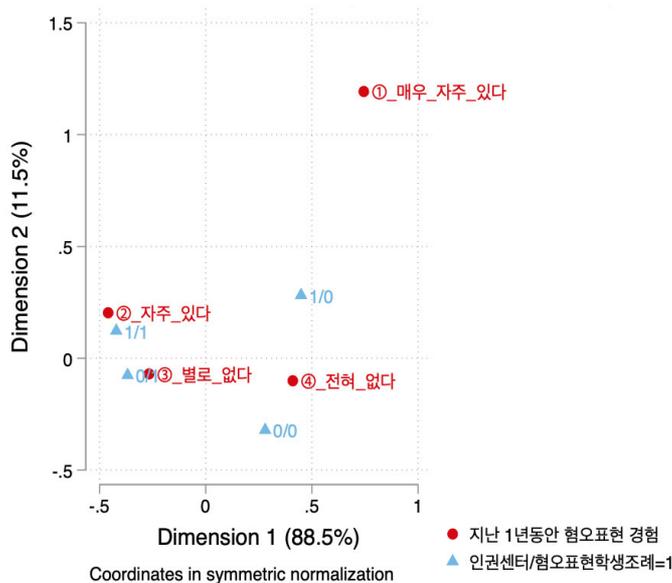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인권제도와 정책에 따라 개인수준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인지, 심각성에 대한 생각, 법적규제 찬반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지역별 인권제도 정책과 실태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10년대 들어 지방자치단체를 수준의 인권제도의 도입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지자체 별로 조연과 자문, 홍보, 조사구제를 담당하는 인권위원회, 진정사건을 통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인권보호관, 주민의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에 힘쓰는 인권센터, 인권전담부서 등이 설치되었으며 인권위원회와 인권전담부서는 17개 시도 광역시에 모두 제도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도 인권정책기본계획이 서울과 광주 3차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평가, 실태조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지자체별 운영실체를 들여다 본다면 이러한 외형적 제도의 구축만으로 개인들의 인권상황을 증진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논의는 따로 진행되어야 하겠지만(이정은 2018; 정영선 2020) 지방정부의 인권행정과 인권업무 담당자들의 존재는 분명 혐오표현의 인지와 심각성, 그리고 규제에 대한 논의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결론이 가능하다. 본 절에서는 지역별로 제도의 유무 차이가 존재하는 인권보호관과 인권센터를 중심으로 이러한 제도의 존재가 혐오표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인권조례에 대한 제정이 이미 모두 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별 차이를 보기 위해 인권조례가 아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내용에 직접적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2023년 인권의식실태조사에서 혐오표현의 대상으로 지정된 범주들(여성, 남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난민, 성소수자, 특정 종교인, 노숙자, 특정 지역 출신인, 정치인, 연예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서울, 광주, 경기, 충남, 전북, 제주의 6개 지역에 제정되어 있으며 ‘혐오표현’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이 있는 지역은 서울(제5조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어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광주(제20조 ③ 교육기관 종사자와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로 차별적 언어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제5조

③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말이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세 곳 뿐이다.

물론 학생인권조례의 존재 자체가 그 지역의 인권정책수준의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지역수준에서 각 지역의 조례의 특징이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조금주 2016), 그렇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가 지역별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를 기준으로 지역의 혐오표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의미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그림 II-12]은 혐오표현에 대한 내용이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존재 여부와 인권센터의 유무에 따른 혐오표현 경험에 대한 대응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대응 분석결과, 인권센터와 학생인권조례가 지역에 모두 존재하는 경우(1/1) 그 지역의 개인들은 혐오표현을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센터와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0/0)의 개인들은 혐오표현의 경험이 별로 없거나 전혀 없다고 대답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혐오표현에 대한 인지, 즉 경험에 있어 지역 수준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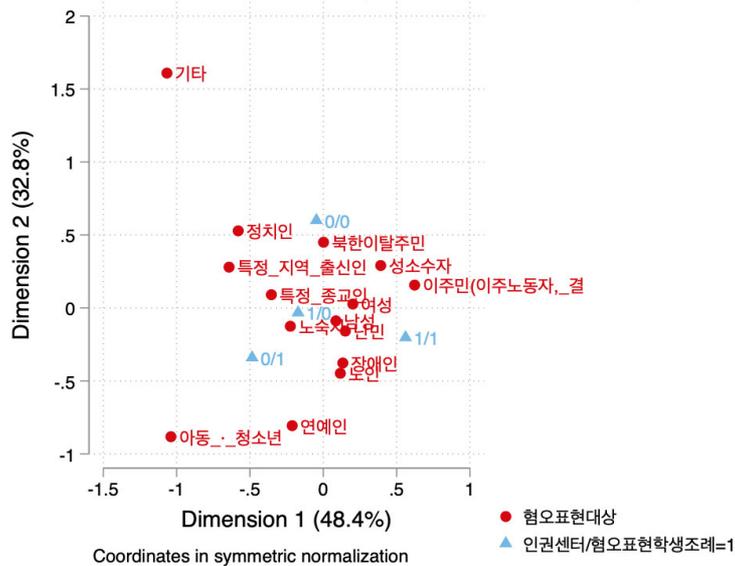
[그림 II-12] 지난 1년동안 혐오표현 경험 (인권센터/혐오표현학생조례)



다음 [그림 II-13]은 인권센터와 혐오표현에 대한 학생조례가 있는 지역에 따라 혐오표현의 대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자체에 인권센터가 존재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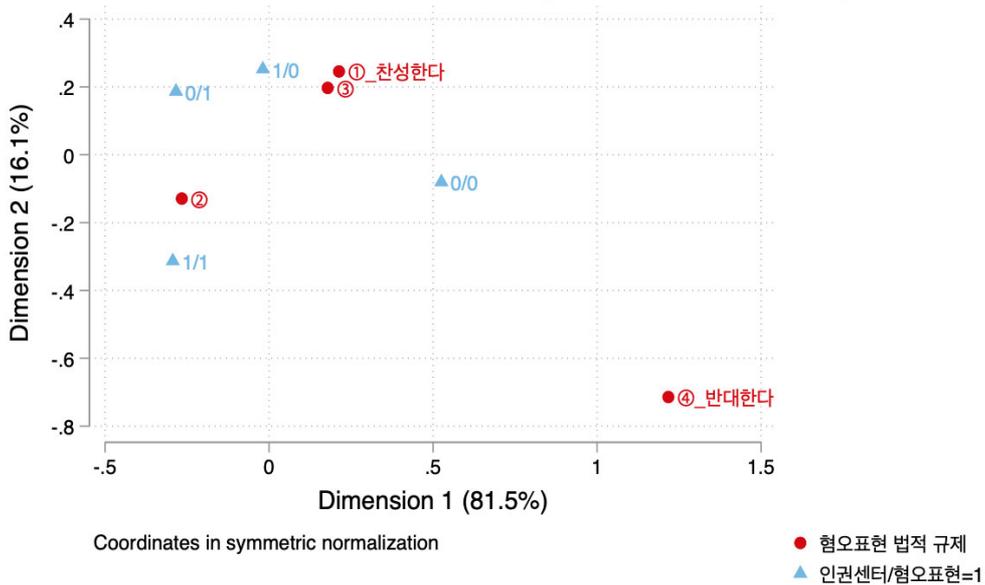
학생조례가 있는 경우(1/1) 혐오표현을 접한 대상들이 주로 난민, 장애인, 노인과 같은 대상으로 유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지역에 인권센터가 존재하지 않고 혐오표현에 대한 학생조례가 없는 경우(0/0)는 혐오표현의 대상들이 정치인, 북한 이탈주민, 특정지역 출신인, 성소수자 등 정치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는 쪽으로 치우친다.

[그림 II-13] 혐오표현 대상별 대응분석 (인권센터/혐오표현학생조례)



마지막으로 다음 [그림 II-14]은 인권센터의 존재와 혐오표현에 대한 학생조례의 유무에 따라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규제 찬반에 대한 대응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위의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자체에 인권센터가 있거나 혹은 혐오표현에 대한 학생조례가 존재하는 경우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규제에 찬성하는 경향(2)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인권센터도 존재하지 않으며 혐오표현에 대한 학생조례가 없는 지역의 경우(0/0) 혐오표현 법적규제에 반대하는 경향(3, 4)을 보이는 점과 대조적이다.

[그림 II-14] 혐오표현 법적 규제에 대한 대응분석 (인권센터/혐오표현학생조례)



4 혐오표현에 대한 정책제언

1)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규제와 표현의 자유

혐오표현 법적 규제에 대한 의견은 '표현의 자유'의 문제와 항상 충돌되어 왔다. 기본적으로 20대 남성들이 혐오표현 규제에 반대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일 수록 혐오표현 규제에 반대하는 것은 개인주의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별, 거주지역별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세대 중에서도 성별, 연령별로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은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나 다른 규제 방안을 논하는데 있어서 큰 장벽이 될 수도 있다. 본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20대 남성과 60대 이상 집단이 혐오표현의 규제 찬반 논의에 있어 세대간 차이가 없다는 점은 20대 남성과 여성의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생각이 다름을 보여주며 또한 20대와 30대, 40대, 50대 이상 세대 간의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혐오표현에 대한 포괄적인 차원의 규제를 제안할 때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타국가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혐오표현에 대해 대응할 때 1) 형사처벌을 하거나 2) 혐오표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혐오표현 제법을 만들거나 혹은 3) 혐오표현규제법이 없는 나라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는 혐오표현이 없는 국가에 속한다(박승호 2019; 최종선 2018). 특

히 혐오표현 자체도 보호받아야 하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는 생각이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생각보다 더 우세한 경향을 보인다면 세대간, 연령간에 따른 견해차를 아우르는 대응책을 만드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게다가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문제는 포괄적 차별금지, 차별금지법 제정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2006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발의한 이후로 2013년 차별금지법안이 철회된 이후 약 7년 이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특히 차별금지법 발의되고 철회되는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담론은 혐오표현이나 혹은 인권에 대한 담론에 대한 논쟁이 아닌 정치적·종교적 색채를 띠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혐오 표현 자체를 규제한다면 이를 혐의, 광고, 최광의의 범주로 나누어 일일이 규제해야만 하는 규제법의 실제법성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박승호 2019;홍관표2021). 본 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는 혐오표현의 법적규제에 대한 찬반 논의에 대한 개인들의 생각과 그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인구학적인 변수와 인권관련 변수의 효과만을 알아볼 수 있었던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규제의 문제는 본 조사에서 확인된 혐오표현 경로의 다양성과 혐오표현에 대한 심각성 인식의 차이, 그리고 인권정책의 지역별 편차에 따른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을 고려한 보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인권교육의 중요성

인권교육이 혐오표현을 인지하고, 심각성을 파악하며, 혐오표현을 규제하는데 찬성하는 의견을 내는데 강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인권의식과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 결과 와도 결을 같이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22). 그러나 전체 표본에서 지난 1년동안 인권교육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체응답자 중 약 10%에 불과하며,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권교육을 받은 곳은 '민간기업/사업체'에서 였다. 즉, 비경제활동인구들은 정규교육과정을 졸업한 이후로는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인권교육에 대한 기회자체가 없는 대상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22년 인권실태조사에서 전연령층 중 여성 고령자가 인권 교육경험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여성들 중에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으며 (22년 11월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55.1%, 남성 73.6%) 육아와 가사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여성들의 경우 인권교육의 경험이 적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혐오표현의 인지가 혐오와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첫걸음인 점을 생각한다면 성별과 세대에 따른 교육 과정의 개발이 필

요할 것이다. 또한 어떤 표현이 혐오표현임을 인지하고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은 혐오표현이 가져오는 사회적 해악성(사회적 위축, 심리적 해악, 사회적 배제, 차별과 폭력의 발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첫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조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혐오표현인지에 있어 국가기관에서 받은 교육에 비해 더 높은 효과를 보이는 인권교육 역시 ‘시민단체’나 ‘민간기업/사업체’이므로 이들의 교안이나 교육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분명 인권교육의 주제나 내용, 방법 등에 대한 표준화된 개발안이 필요할 것이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나 인권의식, 혐오에 대한 개념의 정립 등이 시대나 또래/세대 문화를 반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혐오표현’에 한정 지을 경우, 시대상을 반영하는 교육내용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내용들은 온라인 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영상이나 밈, 혹은 유희로 소비되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신조어나 은어들인 경우가 많다(김수아 2015; 연지영·이훈 2020; 이종임·박진우·이선민 2021). 온라인 플랫폼의 지속성과 확산성, 그리고 세대간 혹은 디지털 활용능력 등의 격차 등을 생각할 때 각 개인이 무엇을 혐오표현으로 인식하는지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인권교육에는 온라인 매체와 플랫폼, 미디어의 속성을 이해하고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혐오표현에 대한 이해,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3) 지자체별 인권정책과 조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자체 조례 중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있는 경우는 서울, 광주, 경기지역의 학생인권조례가 전부이다. 또한 혐오표현이 증오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나 우리 사회의 법제 자체가 체계적으로 법제화되지 않은 점, 그리고 혐오표현 보다는 차별과 증오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규제할 법안이 더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수준의 인권정책과 조례로 어떤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실정과 맞지 않는 일일 수 있다. 사실 우리 사회의 혐오표현 인지와 혐오표현의 심각성, 혹은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는 지자체별의 인권정책이나 조례, 혹은 사업시행의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특히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는 표현의 자유의 문제 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많은 법학자들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혐오관련 법령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차별금지사유 역시 각 영역마다 다르게 정해졌으나 그 근거가 불분명함을 지적하고 있다(홍성수 2019). 또한 각 지자체에서 인권에 관련된 제도, 즉 조례나 혹은 관련 행정부서들을 정비하여 운영하고 있더라도 그 운영

의 내용이나 질, 혹은 수준에 따라 지역사회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인권기본조례가 폐지되었다가 다시 제정된 바 있으며 인권영향평가, 인권센터, 인권전담부서, 인권보호관, 인권위원회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이충은 2019).

그러나 23년 <인권의식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파악한 바, 인권센터와 구체적인 ‘혐오표현’에 대한 내용이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자체의 경우 혐오표현규제를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쏠리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혐오표현 인지에 있어서는 지자체 내에 인권센터와 혐오표현 규제조례 존재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보고서의 범주를 벗어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인권관련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현실적으로 혐오표현을 막기 위한 노력이나 혹은 인권의식 증진이나 홍보자체에 대한 예산 항목이 특정되기 보다는, 다양한 예산 항목들이 인권과 복지, 혹은 특정사안을 중점으로 배정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권 혹은 혐오표현 방지에 대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분명 혐오표현, 차별에 대한 인지를 높이는 예산의 배정은 혐오표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인권의식실태조사에서 ‘혐오’를 묻는 질문들은 대부분 본인이 혐오표현을 하였는 가라는 민감한 질문이 아닌, 본인이 지난 1년 간 “혐오표현을 들은 적이 있는가?”, “그 경로는 무엇인가?”, “들어 본 적이 있는 혐오표현의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본 분석 결과의 해석은 혐오표현을 하는 개인들이 누구인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혐오표현을 접해본 개인들을 분석한 결과임을 인지해야할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나타난 차이의 결과도 그 지역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혐오표현에 대한 민감성의 문제이지 결과를 가지고 그 지역에 혐오가 만연하다라는 식의 해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Ⅲ. 감염병 상황의 인권 쟁점에 관한 인식

: 인권의식실태조사를 활용한 코로나19 관련 인권 쟁점 분석

1. 서론
2. 코로나19와 인권에 관한 기존의 논의
3. 인권의식실태조사를 활용한 코로나19와
인권상황 영향 요인에 관한 심층분석
4. 요약 및 결론: 감염병과 인권 정책에 관한
제언

III

감염병 상황의 인권 쟁점에 관한 인식 : 인권의식실태조사를 활용한 코로나19 관련 인권 쟁점 분석

1 서론

2023년은 2020년 코로나19 범유행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일상 회복에 진입한 시기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범유행이 진행된 약 3년간 인권 상황에 미친 영향은 매우 광범위했다. 감염병 상황의 인권 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논의가 본격화한 것 역시, 감염병이 미친 파급력에서 기인한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는 빈곤의 심화, 불평등의 심화, 구조적이고 고착화된 차별, 기타 인권 보호의 격차를 야기하였다. UN의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코로나19 범유행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권리,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포함한 모든 영역의 인권에 대한 존중은 공중보건 대응의 핵심적 조건을 명시한바 있다(OHCHR 2020a).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감염병의 범유행이 인권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포괄적인 진단을 수행하고,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감염병 범유행 상황에서의 인권 정책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감염병의 범유행 상황에서 인권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기존 조사 및 2022 인권의식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인권 보호와 방역과정에 드러난 다양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려 한다. 이에 기반하여 실질적이고 정책 제언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감염병 대응에서 인권을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감염병 범유행에 따른 인권 상황의 포괄적 진단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감염병 범유행의 발생과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인권 침해의 현상, 원인 및 그 영향에 관한 포괄적인 진단을 수행함에 있다. 특히,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 경제적 피해, 국가의 대응 정책, 그리고 그로 인한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기존 논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감염병 범유행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정리한다.

둘째,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 활용한 인권 쟁점 분석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감염병 범유행과 인권 상황과의 관련성 및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조사 자료에서 드러나는 인권 인식의 특징, 인권 침해의 유형 및 규모, 취약 집단의 식별, 그리고 감염병과 인권 침해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인권 침해의 주된 원인을 탐색하고, 감염병의 확산과 관련된 여러 인권 이슈 사이의 상호 작용과 연관성을 식별하며, 이를 통해 인권 보호와 감염병 관리 간의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도출한다.

셋째, 정책적 시사점 제공

또한 본 연구는 인권의식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도출한 코로나19와 인권 상황에 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려 한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인권 침해의 주요 원인과 패턴, 그리고 이로부터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바탕으로, 감염병 상황에서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감염병과 인권 보호 간의 균형 잡힌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코로나19와 인권에 관한 기존의 논의

인권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범유행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인권은 사람을 중심에 두며, 인권을 존중하고 형성하는 대응은 대유행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며 인간의 존엄을 보존하는 데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UN 2020). UN에서 발행한 코로나19 범유행에 관한 사항 전반을 다룬 가이드 라인인 “COVID-19 and Human Rights: We are all in this together”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서 인권을 중요한 6대 인권 메시지(Six key human rights messages)를 강조한다. 1)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생계를 보호함으로써 이를 달성할 수 있다. 2) 차별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아닌 바이러스의 영향이다. 3) 모두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4) 위협은 바이러스이지 사람이 아니다. 5) 어떤 국가도 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6) 우리 위기를 극복한 후에는 더 나아져야만 한다. WHO 역시 인권이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 핵심 가치임을 언급한 바 있다(WHO 2020).

이러한 점에서 인권은 코로나19 범유행 과정에서 인간을 매개로 확산된 전염병으로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속성을 지

니고 있다. 동시에 감염병은 병원체인 바이러스와 인간, 인간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인간의 기술적 산물을 통해 다양하게 사물과 인간을 넘나들며 우리 사회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드러났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코로나19 범유행에 관한 기존의 연구 동향을 간략히 검토한다. 이후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와 주요 국제 조사를 검토하며, 코로나19의 인권 쟁점을 살펴보고, 3장의 인권 의식실태조사 분석을 위한 시론적 논의를 제시하려 한다.

1) 코로나19와 인권 관련 연구의 동향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인권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및 국가정책연구포털(NKIS)는 한국의 주요 학술 및 연구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여기서 수집된 자료는 이 주제에 대한 한국 내 연구 동향을 반영한다.

‘코로나’와 ‘인권’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수집된 191건의 문서는 코로나19와 인권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연구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동향을 요약해서 보여줄 수 있다. 특히, 이 문서들은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최근까지의 3년여 동안의 연구 동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의 인권 이슈의 변화와 그에 따른 연구 동향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기존 연구의 주요 토픽을 LDA 기반의 토픽모델을 통해 추정된 결과이다.

〈표 III-1〉 코로나19와 인권에 관한 국내 연구의 연구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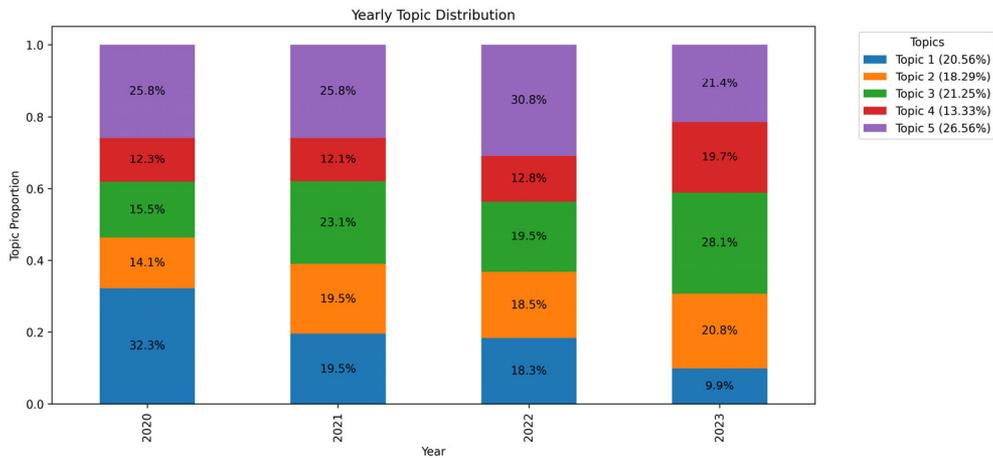
주제	주제 구성 단어
Topic 1 팬데믹 대응과 국가별 인권 이슈	코로나, 정책, 연구, 위기, 대한, 인권, 방안, 대응, 변화, 과제, 관계, 전망, 국가, 경험, 회복, 일본, 관리, 형사, 팬데믹, 북한
Topic 2 아동/청소년 인권과 국제 협력	연구, 방안, 인권, 아동, 국제, 경찰, 청소년, 실태, 협력, 한국, 감염병, 권리, 분석, 개선, 보고서, 시행, 고찰, 협약, 이행, 자치
Topic 3 감염병 대응 연구와 국가 간 협력	중심, 협력, 인권, 연구, 통한, 코로나, 분석, 대응, 감염병, 방안, 정책, 관련, 전략, 과제, 한국, 정부, 기능성, 여성, 북한, 자유
Topic 4 팬데믹 시대의 인권과 교육	코로나, 연구, 인권, 시대, 중심, 교육, 대응, 고찰, 상황, 개선, 팬데믹, 국제, 관련, 보호, 갈등, 법적, 보건, 방안, 시민, 인식
Topic 5 감염병 대응과 장애인 인권 연구	코로나, 중심, 대한, 분석, 사례, 전략, 정책, 감염, 인권, 방역, 대응, 사회, 국가, 팬데믹, 인간, 대책, 의료, 소고, 실크로드, 장애인

Ⅲ. 감염병 상황의 인권 쟁점에 관한 인식

각 주제의 주요 내용을 해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Topic 1: 팬데믹 대응과 국가별 인권 이슈) 이 주제는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적 대응 전략, 팬데믹과 관련된 위기와 변화, 그리고 인권 이슈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 북한과 같은 국가 이름도 포함되어 있어 특정 국가와 관련된 경험 또는 대응 전략에 대한 연구가 포함될 수 있다.
- (Topic 2: 아동/청소년 인권과 국제 협력) 이 주제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감염병에 대한 국제 협력 및 경찰과 관련된 연구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권리 보호와 관련된 보고서, 협약, 시행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Topic 3: 감염병 대응 연구와 국가 간 협력) 이 주제는 코로나19와 감염병 대응 전략에 대한 연구, 그리고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국가들과의 협력 및 여성의 인권 이슈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 (Topic 4: 팬데믹 시대의 인권과 교육) 이 주제는 코로나19 시대의 인권과 교육, 그리고 팬데믹과 관련된 국제적 대응 및 보호 전략에 중점을 둔 연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Topic 5: 감염병 대응과 장애인 인권 연구) 이 주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 대책, 감염 분석,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사례 연구를 중점으로 다룬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1]코로나19와 인권에 관한 국내 연구 주제의 변화 추이



이 그래프는 앞서 살펴본 5개의 연구 주제가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나타내고 있다. 이 그래프는 코로나19에 관한 연구의 주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였음을 보인다. 초기에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주제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면서 새로운 주제나 이슈들이 중요해졌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코로나19 연구의 추세나 중점이 어떻게 변화하였

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각 주제의 변화에 대한 몇 가지 관찰 및 해석은 다음과 같다.

- (Topic 1: 팬데믹 대응과 국가별 인권 이슈) 팬데믹 대응과 국가별 인권 이슈에 관한 연구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대체로 안정적인 분포를 보이다가 2023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국가별 인권 이슈에 관한 관심이 초기에는 높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줄어들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Topic 2: 아동/청소년 인권과 국제 협력) 아동/청소년 인권과 국제 협력에 관한 연구는 2020년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다가 점차 감소한다. 이는 특정 초기 코로나19 관련 이슈나 관심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 (Topic 3: 감염병 대응 연구와 국가 간 협력) 감염병 대응 연구와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연구는 2020년과 2021년에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한 후 2022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며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가 축적되기 시작하며, 이를 토대로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과 연관될 수 있다.
- (Topic 4: 팬데믹 시대의 인권과 교육) 팬데믹 시대의 인권과 교육에 관한 연구는 2020년과 2021년에 안정적이었으나, 2022년에 감소하고 2023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동시에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장기적인 인권 교육에 관한 관심이 다시 증가하였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 (Topic 5: 감염병 대응과 장애인 인권 연구) 감염병 대응과 장애인 인권 연구는 팬데믹 초기인 2020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이후로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초기에는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의 주요 취약계층인 장애인 인권이 주요한 관심사였지만 점차 관련 연구의 빈도가 줄어들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 동향을 볼 때,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등장한 인권 쟁점은 주로 방역 등 사회적 안전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연결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가져왔고, 이 과정에서 여러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쟁점들이 부각되었다. 방역과 사회적 안전보장을 위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책무의 주체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약도 가져올 수 있는 주요 행위자이다.

국가는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방역 조치가 너무 강력하게 시행될 경우,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예를 들면 집회의 자유나 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방역과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연구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전의 감염병 유행, 예를 들면 MERS나 SARS와 같은 경우에서도 인권 문제가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경우 그 규모와 영향력 때문에 인권과 관련된 논의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방역 조치의 필요성과 한계, 그리고 인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여기서 국가의 책무성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국가는 자신의 국민을 보호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 책무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뿐만 아니라,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국가 책무성 문제는 방역 조치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따라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인권 관점에서의 감염병과 방역에 관한 기존 논의와 국가 책무성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사회적 재난으로서의 코로나19와 인권

COVID-19 범유행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기본권 담론의 지형은 이분법적 자유권, 사회권 사이의 갈등으로 수렴하지는 않는 양상을 보인다. 단순히 개인과 국가, 자유와 안전이라는 이분화된 기준을 통해 타자를 배제하고 구분하는 담론만이 지배적으로 등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신천지, 이태원 집단 발생 사건과 같은 사회적 위험 인식이 고도화되는 시기에 소수자 차별의 문제를 제기하고, 개인정보와 사회적 안전 사이의 균형에 대한 대항 담론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담론의 축이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유지되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적어도 매체를 통해서 재현한 기본권 담론은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담론 지형을 형성하며 기본권 사이의 대립 구도를 재생산하는 양상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우리 사회의 기본권 담론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회권적 쟁점과 자유권적 쟁점의 교차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방역과 신체적 자유 문제, 개인의 사적 정보 공개와 소수자 권리 침해의 문제와 같이 대립적으로 보이나 실천적 균형이 필요한 현실의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인간 안보(human security)’를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 상황에서 기본권 보장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개념임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본권의 구성 요소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특정한 권리에 의해 다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비례의 원칙이 시사하는 바는 기본권의 제한은 적절하고, 긴급한 필요성을 뒷받침 해야하며, 이것은 해당 사회에서 공유하는 가치 준거에 의한 것임을 의미한다. 이 지점에서 감염병과 같은 사

회적 재난에 대한 위협인식은 사회 성원이 용인하고 감내할 수 있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규정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담론이 될 수 있다. 위협 인식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면, 기본권 사이의 갈등을 포괄할 수 있는 담론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하게 정의하자면, 위협의 사회적 구성과 기본권 담론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을 인간 안보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인간 안보는 특정한 상태에 대한 담론이 아닌, 포괄적, 집단적 권리 개념으로, 재난 상황에서 국제 연대, 나아가 국가와 사회(NGO 등 민간 거버넌스 영역)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실제로 주요 쟁점으로 나타난 공중보건 쟁점(개인정보, 격리, 소수자 차별 등)은 자유권, 사회권 등 기본권의 여러 차원이 중층적, 다중적으로 얽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적인 권리의 담론에서 재난의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강조하는 ‘인간 안보’ 개념의 등장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전학선, 2016). ‘인간 안보(human security)’ 개념은 1994년 인간개발에 관한 세계보고서와 UN인간안보위원회(CSH)를 통해 등장했다. 이후 재난을 사건(event)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의 결과(consequence)로 보는 탐페르협약(Tampere Convention of Telecommunications Resources for Disaster Mitigation and Relief Operations)이 공표되며 ‘인간 안보’는 기존의 건강권, 생존권 등을 포괄적으로 내포하는 개념으로 자리를 잡는다. 이는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의 주체는 개별 자연인이며 보호의 주체는 국민국가에 있다는 관점에서 재난을 집단적 권리임과 동시에 국제적 거버넌스의 영역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중요한 개념적 전환이었다.

이러한 ‘인간 안보’ 개념은 이후 재난과 국가의 관계와 제도의 역할(김평섭, 2003; 조성재, 2010; 유희진, 2014)이나,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김용훈, 2019)에 관한 연구의 토대가 된다. 동시에 기존 논의가 자연, 사회재난 COVID-19 범유행은 감염병으로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나의 ‘사회재난’ 정의를 따른다.

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지적하며, 환경재난과 사회재난의 인권적 접근인 환경재난구호권(김현준, 2016)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안전권 담론에 대한 비판은 안전권이 집합적 권리를 과도하게 강조하며, 기존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안전권의 위협성에 관한 논의(정문식, 2007; 송석윤, 2003; 김용훈, 2019)와 안전권의 불명확성에 관한 논의(이한태, 전우석, 2015)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안전권에 초점을 맞춘 기본권 논의를 인간 안보 개념을 통해 더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제기된다.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재난으로서의 COVID-19 범유행은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글로벌 이슈이자 재난이다. 하지만 국제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재난은 감염병만이 아니라 기후 문제의 관점에서 논의할 때 더욱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기후 변화가 비가역적 지점을 넘어섰다는 논의가 등장하고 있는 지금 호주의 국립기후복원센터(The National Centre for Climate Restoration)에서 발행한 보고서는 “기후 변화가 국가적 안보문제이며 인류의 장기적 발전을 치명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으로 정의한다(Spratt and Dunlop, 2018: 14). 이 보고서는 기후 변화에 의한 생태적 위기와 재난은 현재 진행 중이며 기후 변화에 대한 낙관을 고수할 만한 시점은 이미 지났음을 지적한다.

권리 사이의 비례적 균형과 포괄성, 적극성을 토대로 기본권의 핵심이 집합적 주체로서의 인간의 권리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춘 인간 안보 개념에 주목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기후 변화와 함께 점차 일상화되는 재난 상황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비롯하여 국제 사회가 논의해 왔던 기본권, 인권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다른 기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3) 권리 보호의 주체인 국가의 책무성 문제

방역 정책을 주도하는 행위자는 국가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전에 간과하거나 잊고 있었던 국가의 집중적인 권력과 능력이 대유행 상황에서 드러나는 현상을 관찰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방역을 중심으로 한 국가 담론이 여기서 핵심적인 논의로 떠오르고 있다. 이 담론은 국가의 역할과 권력이 어떻게 방역 정책과 연결되는지를 문제 삼는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대유행이 국제 질서와 국가 능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에 있으며, 이는 세계화 이후 약해졌던 국가의 권력과 국경, 그리고 국민의 배타성이 방역 조치를 통해 재차 드러나고 있음을 시사한다(최병두, 2020). 또한, 국가 방역이 생명권력으로 전환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며, 국가의 거버넌스에 주목할 것을 주장하는 논의도 있다(Hannah, et al., 2020).

사회계약론은 근대 국가 형성의 기반이며, 국가의 권리 제한이 국민과의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러나 푸코는 이러한 사회계약적 기반을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 생성된 순차된 권력으로 해석한다. 근대 국가가 규율권력에서 생명권력으로 전환하면서 생명을 조직하고 관리하며 통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푸코는 설명한다(미셸 푸코, 2011). 이러한 변화는 인구 통계의 활용과 형법 체계의 교정 중심 이행 등에서 나타난다.

푸코의 이러한 분석은 대유행 이후의 국가와 자유에 대한 담론에서 재평가되고 있다. 코로나 19는 국가의 생명정치가 기술적 수단을 통해 정상성을 재구성하려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Benbenuto and Dwivedi, 2020). 아감벤은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가 감염 방지와 생존을 최

우선 가치로 여기게 되면서, 전체주의적인 사회로의 전환 가능성을 경고한다(Benbenuto and Dwivedi, 2020). 그럼에도 대유행은 자유주의적 윤리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고,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개인주의적 소비자 정체성에 근거한 것임을 지적한다(조효제, 2020).

대유행은 국가가 여전히 권리 보장과 공동체 안전 확보의 중요한 주체임을 일깨워준다. 지구적 규모의 재난을 국가 없이 통제하려는 시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사회계약의 본질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여기서 재난상황의 국가 책무성과 안전 보장을 광범위하게 규정한 시라쿠사 원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라쿠사 원칙(The Siracusa Principles on the Limitation and Derogation Provisions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긴급 상황에서 인권 제한이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한다(UNHCR, 1985). 이는 대유행 같은 상황에서 국가의 책임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비자의적으로 실행되어야 함을 뜻한다.

인권 기반 방역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책무는 국가가 인권을 기반으로 한 접근을 통해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한다. 인권 기반 접근은 불평등과 차별을 해결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며, 대유행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더욱 요구된다. 국가는 범유행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보건의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는 인권 기반 방역의 일환으로 국가의 책무로 간주된다(김성이 외, 2020). 경기도공공보건 의료지원단(김성이 외, 2020)과 시민건강연구소(시민건강연구소, 2020)의 연구는 이러한 인권 기반 방역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권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참여와 비차별 원칙을 고려해야 하며, 대유행과 같은 대규모 재난에서 가장 약한 집단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시민건강연구소, 2020: 24). 또한, 국가의 권리 제한이 필요한 경우, 그 제한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는 자유권과 사회권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해야 할 것이다.

4) 코로나19와 인권 상황에 관한 국내의 조사 결과

(1) 코로나19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 인권 사안 전반에 관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에 관한 다양한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들 조사는 크게 코로나19와 인권 전반을 다룬 조사와, 간호사, 장애인 등 특정 집단 및 취약계층을 다룬 연구로 구

분할 수 있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인권 상황 전반을 다룬 조사는 다음과 같은 조사들이 있다.

인권위 주최로 2020년 9월 9일에 개최된 『감염병 시기의 인권』 온라인 토론회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대한 정부의 법적, 제도적, 정책적 대응 조치를 인권적 관점에서 검토한 주요 학술회의 중 하나이다. 이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사회 불평등적 영향을 다루고, 이에 대한 향후 정부가 검토해야 할 인권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한국 사회의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 토론회는 특정 대상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된 인권적 쟁점을 전반을 다루고 있다.

2022년에 발간한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는 코로나19와 인권에 관한 내용을 별도 항목으로 다루며,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요 인권 관련 사항을 리뷰한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특정 대상을 선별하여 조사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인권 문제 전반에 관한 조사를 포함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인권 상황을 리뷰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고립, 코로나19 사망자와 유가족의 인권,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 구금시설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한 과밀수용과 위기대응 문제, 사회복지시설과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코로나19 코호트 격리, 방역을 이유로 한 사회복지시설과 정신의료기관 내 권리 제한.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유행과 인권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각 주제에 관한 인권 상황과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평가한다.

○ 특정 취약 집단에 관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코로나19와 특정 집단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시한 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먼저 2020년에 발간된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인권 피해사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은 이미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 상태가 취약하며, 일상생활을 의존해야만 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바이러스 감염에 더 취약함을 지적하며 코로나19와 장애인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다. 장애인의 감염 취약성은 장애인의 본래적인 건강 상태나 장애 특성에서 오는 것보다, 재난 대책과 관련된 사회 정책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문헌 조사와 설문 조사를 병행하여 수행되었다. 설문 조사는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회원 중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 혹은 가족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임의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한 자기기입식 방법인 온라인 설문은 2020년 11월 10일부터 2020년 11월 16일까지 7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전체 응답자 수는 1,174명이었다. 이 보고서는 감염병 위기 상황

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원칙과 방향에 대한 제언을 제공한다.

2020년에 발간한 『코로나19와 혐오의 팬데믹』 조사 보고서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조사 보고서이다. 본 보고서는 뉴스 외에도 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혐오와 차별과 관련된 언어 및 용어(이슈어)를 조사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와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두 구간으로 나누어져 각 구간별로 상위 1,000개의 이슈어를 분석하였으며, 다양한 분석 채널에서 하루에 1,80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 작업에 활용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혐오 발언의 다양한 카테고리 중에서도 장애인 혐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인종 차별, 성 소수자 혐오, 지역 혐오, 신천지 혐오는 언급량이 큰 폭으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속성을 반영한 언어 표현이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양상이 보고서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보고서는 두 가지 주요 결과를 언급한다. 첫째, 다양한 혐오 발언 중에서도 장애인 혐오와 여성 혐오는 코로나19와 큰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러한 혐오적 표현은 해당 집단 자체를 대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향한 비방 등에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언어 표현이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고서는 혐오에 대한 대응책으로 단순한 설명보다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제안한다.

2021년 발간된 『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다양한 수준에서의 방역 지침이 이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 조사는 설문조사와 질적조사를 병행하여 수행되었다. 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요양보호사)와 입소자를 표본으로 진행되었다. 질적조사는 조사대상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심층 면접(In-depth Interview) 방법을 사용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예방적인 코호트 격리 참여 과정에서의 경험 및 지원 사항, 종사자 및 입소자의 인권 관련 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 상황과 방역 지침의 영향을 조사하고, 노인요양시설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2021년 발간된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삶에 대한 실태보고가 있기는 하지만, 아동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한다. 이 보고서는 위기 상황의 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들도 코로나19로 인해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해 코로나19가 아동의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 조사에서는

Ⅲ. 감염병 상황의 인권 쟁점에 관한 인식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인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UN 아동권리위원회의 코로나19 성명서에 대한 정부 대응을 평가하고 동시에 아동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제안한다. 이 보고서는 아동의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어려움을 조사하고,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응 및 개선 방안을 다루고 있다.

2021년에 발간된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인권보장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은 주로 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민, 불안정 노동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취약계층은 기존의 사회적 위험과 상호작용하면서, 최소한의 삶의 안정성조차도 어려움을 겪는 인권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문헌 연구, 사례연구, 활동가 심층 면접, 전문가 자문 등 네 가지 연구 방법을 혼합적으로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사례연구의 대상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특히 취약한 노인, 장애인, 노숙인, 이주민, 성소수자, 임산부,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그리고 확진자 등 13개의 집단으로 총 15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집단은 건강권, 노동권, 주거권 등의 권리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2022년에 발간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간호사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간호사라는 특정 직업 집단을 다룬 조사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간호사 인권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앞서 수행한 다른 조사와 유사하게 설문조사와 질적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총 1,016명의 간호사를 조사하였다. 주요 조사 항목은 업무 현황, 업무 강도 및 직무 어려움, 업무 관련 두려움 및 위험 인식, 업무 관련 차별, 낙인 및 가족 돌봄, 이직 의도, 건강 상태, 코로나19 감염 경험, 코로나19 업무 지원 및 보상,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 등 다양한 항목을 다루고 있다. 심층면접조사는 코로나19 관련 업무가 이루어진 기관을 특성에 따라 6개 그룹으로 나누어 면접 조사가 진행되었다. 면접은 2022년 6월 21일부터 7월 22일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간호직군에 속한 30명이 참여하였다. 이 보고서는 간호사들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해당 분야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2) 코로나19와 인권 상황에 관한 주요 국제 조사

○ 서베이 형식의 조사

코로나19와 인권 상황에 관한 대규모 조사연구는 아직 그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

권 상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대표 사례로 클레이 등(Clay et al., 2022)이 인권 활동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Human Rights Measurement Initiative (HRMI)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2021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COVID-19 팬데믹이 인권 관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사는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활동하는 인권 단체의 대표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2019년과 달리 2020년에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권리 침해와 연관된 모든 항목에서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이동의 자유, 평등권, 고문 및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 금지, 노동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이 증가했다는 응답도 60%에 달했다. 특히, 자유권 측면에서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회권적 측면에서는 노동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이 조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팬데믹은 인권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한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인권 침해, 취약 계층에 대한 차별, 인권 보호 시스템의 약화 등과 같은 인권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결론 내린다.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에도 인권 문제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인권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제언한다.

파벤블룸과 버그(Farbenblum & Berg 2021)는 호주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인권 상황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논문은 COVID-19 팬데믹 동안 호주 정부가 취한 조치가 국제 학생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이 논문은 2020년 7월에 호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학생이 처한 권리 침해 쟁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경제적 어려움이다. 외국인 학생의 74% 가량이 팬데믹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학비나 생활비를 지불하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고 응답했다. 둘째, 차별과 배제이다. 특히 중국 출신 학생의 52%, 동아시아 출신의 40% 가량이 팬데믹으로 인해 인종 차별이나 배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호주 정부의 팬데믹에 대한 조치가 국제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 즉 생존권, 교육권, 차별 금지권 등을 침해했음을 지적하며, 외국인 학생이 '시민(citizen)'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people)'으로서 보호받을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황과 자오(Huang & Zhao 2020)의 조사는 COVID-19 발병 초기 중국에서의 일반인들의 불안, 우울, 수면의 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온라인 조사를 통해 7,236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이 연구는, 팬데믹 상황이 초래한 정신 건강 문제가 중대한 건강권 침해와 연결될 수 있음

Ⅲ. 감염병 상황의 인권 쟁점에 관한 인식

을 밝힌다. 응답자의 35.1%가 범불안 증상을, 20.1%가 우울 증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18.2%가 불면 등 수면장애를 호소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불안과 우울, 수면의 질 저하 등의 정신 건강 문제는 COVID-19 발병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며, 국가의 지속적인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미국의 퓨리서치센터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의 종교의 자유에 관한 국제 규모의 조사를 수행하였다(Pew Research Center 2022). 조사에 포함된 198개 국가의 1/3 이상에서 종교 단체는 코로나19 범유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유형의 강제 조치나 비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총 74개 국가(분석된 모든 국가의 37%)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건을 종교 단체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정부가 종교 모임에 제한을 부과하기 위해 강제 수단을 사용 (2) 정부, 사설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 단체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책임으로 공개적으로 비난 (3) 개인 행위자가 종교 단체와 관련하여 COVID-19의 확산과 연결하여 폭력 또는 파손 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에서 약 1/4의 조사 대상 국가 및 영토(198개 중 46개 또는 23%)에서는 종교 모임 및 기타 종교 모임에 대한 코로나 관련 제한을 집행하기 위해 체포 및 징역 처분과 같은 물리적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 인권 현안에 관한 조사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COVID-19와 권리 침해 문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다(ECHR 2023). 유럽인권재판소는 팬데믹 과정에서 발생한 건강 위기에 대응하여 유럽 국가들이 취한 조치들이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의 다양한 조항을 위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보고서를 작성했음을 밝힌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유럽인권재판소가 COVID-19 건강 위기 관련 사안에서 국가의 조치를 심사할 때 고려하는 피해자 지위 및 적격성 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생명권(Article 2), 고문 및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 금지(Article 3), 자유와 안전의 권리(Article 5), 공정한 재판의 권리(Article 6), 사생활 및 가족생활 존중의 권리(Article 8), 종교의 자유(Article 9), 표현의 자유(Article 10), 집회 및 결사의 자유(Article 11), 재산권(Article 1), 이동의 자유(Article 2)에 관한 사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2020년 작성한 “COVID-19 건강 위기와 국가의 인권 의무: 예비 관찰”이라는 보고서에서는 국제 인권규범 차원에서 코로나19의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루고 있다(AMNESTY International 2020). 이 문서는 COVID-19 건강 위기에 대응하여

국가들이 취한 조치들이 국제 인권법을 어떻게 위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인권 쟁점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다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생명권(국가가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하는 조치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아야 함), 고문 및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 금지(국가가 COVID-19 환자를 격리하거나 폐쇄 지역에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때 이러한 조치가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이지 않도록 해야 함), 자유와 안전의 권리(국가가 COVID-19 환자를 격리하거나 폐쇄 지역에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때 이러한 조치가 합리적이고 비례적이어야 함), 공정한 재판의 권리(국가가 COVID-19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결정할 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함), 사생활 및 가족생활 존중의 권리(국가가 COVID-19 관련 규정으로 인해 사람들의 사생활이나 가족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함) 등을 언급한다. 이 보고서에는 국가 책무성을 강조하며, 국가는 COVID-19 건강 위기에 대응하여 모든 사람에게 COVID-19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약한 집단에 대한 차별을 방지, 의료 종사자를 보호할 의무 등이 있음을 제언한다.

2023년 3월 21일 Human Rights Watch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팬데믹: 3년의 기록”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한 종합적인 개요를 제공한다(HRW 2023). 이 보고서는 팬데믹이 건강, 교육, 노동, 이동의 자유 등 다양한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팬데믹은 기존의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새로운 불평등을 만들었음을 지적한다.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한 소외된 집단은 팬데믹으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정부는 팬데믹에 대응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취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조치에는 봉쇄, 격리, 여행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사람들의 생계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는 팬데믹 동안 발생한 인권 침해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음을 비판한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기타 기관은 팬데믹에 대한 느리고 비효율적인 대응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 보고서는 팬데믹은 인권에 대한 더 강력한 글로벌 규범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미래의 팬데믹이 이러한 광범위한 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미주인권위원회(IACHR)는 “팬데믹과 인권”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코로나19에 따른 인권 상황을 전반적으로 진단한다(IACHR 2020). 이 보고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에 이어 미주인권위원회가 채택한 ‘아메리카 대륙의 팬데믹과 인권’에 관한 결의안 1/20을 기점으로 시작된다. 본문은 또한 팬데믹 상황에서 기본적 자유 및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주인권위원회의 코로나19 팬데믹 신속 통합 대응 조정단

(SACROI-COVID-19)의 작업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미주인권위원회는 팬데믹으로 인한 결과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모든 정부 수준에서 인권적 관점을 통합한 포괄적 전략이 반영된 공공 정책의 개발 및 실행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인권 중심의 정책 개발에 집중하고, 이러한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과 함께, 미주인권위 기준에 부합하는 팬데믹 대응 계획 및 전략을 채택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영국 의회는 영국 행정부를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조치의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한다(House of Commons 2020). 이 보고서를 토대로 영국 정부는 개인의 생명권(유럽인권법회의 제2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영국 의회의 인권위원회는 정부의 조치를 검토하여 인권 보장 상황을 모니터링하였다. 특히 생명권(유럽인권법회의 제2조), 자유권(유럽인권법회의 제5조) 및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권(유럽인권법회의 제8조)과 같은 권리에 간섭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경우, 이는 비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같은 시기에, 2020년 스코틀랜드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등과 같은 돌봄이 필요한 사회 취약계층의 인권에 관한 코로나19의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SHRC 2020). 스코틀랜드인권위원회는 팬데믹이 어린이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모니터링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가정 내 돌봄과 지역사회에서의 지원 문맥에 중점을 두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는 스코틀랜드에서 사회복지 지원이 제공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복지 서비스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권리 실현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했다. 가정에서 사회복지 지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상당 부분이 지원이 감소하거나 완전히 중단되었다. 특히 이러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절차 불투명성이 혼란을 가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의 난맥상은 사회복지 시스템에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했으나, 정작 이에 대한 감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보고서는 즉각적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요구하는 24개의 권고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권고안은 사회복지에서 의사 결정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인권 기반 접근을 적용함으로써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3 인권의식실태조사를 활용한 코로나19와 인권상황 영향 요인에 관한 심층분석

1) 자료 및 방법

아래에서는 인권위에서 구축한 인권의식실태조사 2020년, 2022년 원자료를 통해 코로나19와

인권 상황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모형은 코로나19 관련 문항을 중심으로, 코로나19와 인권에 관한 문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판별하기 위한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2020년과 2022년에는 부가조사 문항으로 코로나19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두 해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2020년 조사는 2020년 시점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함) 14,525명의 표본을 수집하였다. 2022년 조사는 민법 개정 등을 감안하여 만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해 16,148명의 표본을 수집하였다.

2020년 조사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주요 인권 쟁점(확진자 동선공개, 사회적 거리두기, 경제 활동 제한)에 관한 인식을 물어보는 설문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2022년 조사에서는 코로나19 범 유행이 2년 이상 경과한 시점을 고려하여 문항을 보완하였다. 2022년 조사에서는 코로나19가 인권 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인식, 코로나19에 따른 불편 유형, 코로나19에 따른 인권 쟁점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2020년 조사는 각 인권 쟁점에 대한 태도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주요 사회인구 요인 및 영향 예측 요인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진행하였다. 2022년 조사는 여러 범주에 대한 주요 사회인구 요인 등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진행하였다. 다음은 2022년 자료를 토대로 구축한 분석 모형의 종속변수에 관한 개요이다.

〈표 III-2〉 2022년 조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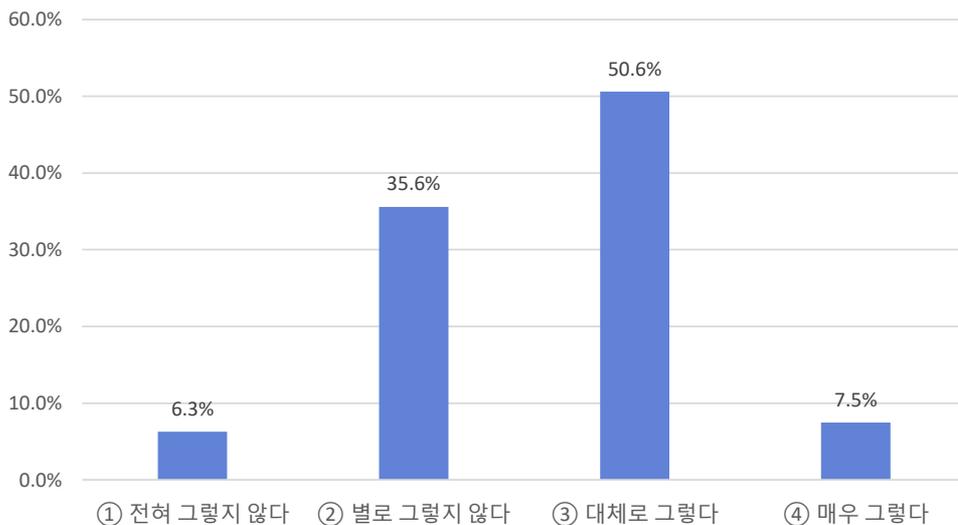
종속	응답
코로나19가 한국의 인권 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인식 (Q38:귀하는 코로나19가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5점 척도)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한 어려움 1순위 (Q39) 코로나19로 인해 귀하가 경험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일자리 문제/경제적 문제/위생 문제/교육 문제/돌봄 문제/편의-문화시설 이용 문제/고립-우울감/감염 후유증/기타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인권 문제에 관한 인식 (Q40) 귀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난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역 과정의 사생활 침해/방역에 의한 집회제한/돌봄 공백에 따른 취약계층 고립/백신 접종에 따른 차별/영업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방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접근제한/특정집단에 대한 혐오-차별 증가

2) 코로나19가 한국의 인권 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인식

(1) 조사결과

코로나19가 한국의 인권 상황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가 인권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 그림은 코로나19가 한국의 인권 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아래 그림은 응답자들 중 절반 이상(58.1%)이 코로나19가 한국의 인권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반면,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가 41.9%에 해당함을 보인다. 과반 이상이 코로나19가 어떤 형식으로든 한국의 인권 상황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40% 이상의 응답자가 코로나19가 인권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범유행 과정의 다양한 방역 정책이 자유권, 사회권 측면 등 다양한 범주의 권리 문제와 결부되는 쟁점을 야기하였으나, 상당수 응답자들은 코로나19와 같이 같은 감염병이 권리 쟁점과 크게 결부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림 III-2] 코로나19가 한국 인권 상황에 미친 영향 응답



이러한 코로나19에 따른 인권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코로나19의 인권상황에 대한 영향을 종속변수로 두고, 사회인구요인 및 인권관련 요인을 포함하는 조사 모형을 설계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다중선형회귀 분석을 통해 사회인구요인(연령, 성별,

교육, 종교, 지역, 직업, 정치성향, 소득, 삶의 만족도)를 포함하여, 인권관련 요인(인권의식, 인권 의견, 인권참여, 인권거리감, 인권책임, 혐오표현 심각성), 인권교육 요인(인권교육 도움정도, 인권교육 필요성)을 추가하여 모형을 구성하였다.

인권관련 요인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인권의식은 자신으로부터 우리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는지에 관한 문항을 표준화한 변수이다. 인권의견은 인권에 관한 의견(인권에 의해 불공정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 등) 관련 문항을 하나의 변수로 표준화한 변수이다. 인권참여는 인권 관련 주요 활동(집회 참여, 댓글 달기 등)에 관한 변수이다. 인권거리감은 나에게 인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문항에 대한 태도이며, 인권책임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불편을 감수할 것인지에 관한 문항이다. 마지막으로 혐오표현 심각성 인식은 우리 사회 전반의 혐오표현 수준에 대한 인식 수준을 질문하고 있다.

본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변수에 관한 설명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I-3〉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를 활용한 인권상황 영향 요인 검토 모형 구성 변수

유형	변수	변수코딩
종속	코로나19의 인권상황에 대한 영향	1(전혀그렇지않다)-4(매우그렇다)
사회인구요인	만나이	
	성별	남(0), 여(1)
	교육	중졸(1), 고졸(2), 대졸(3), 대학원졸(4)
	종교여부	없음(0), 있음(1)
	지역	비도시(0), 도시(1)
	직업 관리전문직	기준변수=비경제활동
	직업 사무판매직	기준변수=비경제활동
	직업 농림생산직	기준변수=비경제활동
	정치 진보	기준변수=중도, 무당층
	정치 보수	기준변수=중도, 무당층
	월소득	월소득 로그변환
인권관련 요인	삶만족도	0(매우불만족)-10(매우만족)
	인권인식	문4-1~문4-3을 표준화, 1(매우긍정적)-4(매우부정적)
	인권의견	문7-2, 7-3, 7-5를 표준화, 1(인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4(인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인권참여	문34-1~문34-7을 표준화, 0(불참)-7(모두참여)
	인권거리감	나에게 인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1(매우동의)-4(전혀비동의)
	인권책임	다른 사람의 인권 보장을 위해 불편 감수, 1(매우필요)-4(전혀불필요)
인권교육 요인	혐오표현 심각성인식	1(매우심각)-4(전혀심각하지않음)
	인권교육 도움정도	1(매우도움)-4(전혀도움안됨)
	인권교육 필요성	1(매우필요)-4(전혀불필요)

Ⅲ. 감염병 상황의 인권 쟁점에 관한 인식

최종모형에서 코로나19가 인권 상황에 미친 영향에 관한 인식과 연관되는 요인으로 추정되는 주요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연구 결과, 몇 가지 주요한 발견점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에서 연령 효과가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코로나19의 인권 상황에 대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연령이 낮은 집단의 코로나19와 인권 상황에 대한 상대적 낙관적인 인식은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할 수 있다. 젊은 세대는 정보를 얻는 플랫폼이나 소통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젊은 세대는 생애과정에서 경험한 사회적 문제나 위기가 적을 수 있어, 감염병 유행과 같은 재난 상황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둘째, 정치적으로 중도 및 무당파인 집단에 비하여 보수적 집단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수적 집단은 전통적인 가치와 권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제한 조치나 정책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 등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아, 이를 인권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일부 보수적 집단은 중앙 집권적인 정책이나 강력한 정부 개입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나 제한을 인권 침해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일부 경우에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정치적 대립이 인권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현 정부나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집단의 대응을 비판하는 의도로 인권 침해 문제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소비 패턴 문제도 한 가지 요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보수적 집단이 소비하는 정보의 출처나 내용,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중도나 무당파 집단과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소비 패턴이 그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인권 관련 요인에서는 인권 인식, 인권 참여, 그리고 인권에 대한 거리감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이나 주변 사회의 인권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 코로나19에 따른 인권 상황의 부정적 영향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자신에게 인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인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코로나19의 인권 상황에 대한 영향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개인이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만큼 코로나19의 인권 상황 영향을 크게 인식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권 교육과 관련하여, 인권 교육이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느낄수록, 코로나19와 관련된 인권 상황의 부정적 변화를 더욱 민감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표 III-4〉 코로나19가 인권 상황에 미친 영향에 관한 주요 요인의 선형회귀분석 결과

범주	변수	모형1			모형2		
		B	SE	β	B	SE	β
사회인구 요인	만나이	-0.005	0.002	-0.082**	-0.005	0.002	-0.082**
	성별	0.037	0.057	0.022	0.034	0.056	0.020
	학력	0.008	0.044	0.008	0.016	0.044	0.015
	종교여부	0.020	0.048	0.014	-0.006	0.048	-0.004
	지역	0.087	0.064	0.044	0.073	0.063	0.037
	관리전문직	0.010	0.101	0.006	0.017	0.100	0.010
	사무판매직	0.025	0.091	0.017	0.054	0.090	0.037
	농림생산직	0.039	0.102	0.020	0.061	0.100	0.031
	정치_진보	0.096	0.054	0.061	0.057	0.054	0.036
	정치_보수	0.117	0.065	0.062	0.125	0.064	0.066*
	월소득	0.064	0.128	0.020	0.073	0.127	0.023
	삶 만족도	-0.010	0.013	-0.024	-0.010	0.014	-0.024
인권관련 요인	인권인식				0.104	0.050	0.073**
	인권태도				-0.044	0.041	-0.034
	인권참여				0.065	0.021	0.105**
	인권거리감				0.088	0.029	0.100**
	인권책무성				0.059	0.037	0.052
	혐오표현인식				-0.051	0.033	-0.053
	인권교육효용				-0.175	0.043	-0.152***
	인권교육필요성				0.058	0.048	0.047
모형설명	*p<0.1, **p<0.05, ***p<0.001						

(2) 요약

이러한 결과는 인권에 대한 개인의 인식 및 교육 수준이 그들의 사회적 문제나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이 결과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감염병 범유행과 인권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이의 관계를 정리한 내용이다.

첫째, 개인이 인권을 중요하게 인식할수록, 인권 상황을 포함한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인권에 대한 관심 및 참여는 개인이 사회적 문제나 위기 상황에서

Ⅲ. 감염병 상황의 인권 쟁점에 관한 인식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 즉, 인권에 대한 강한 인식이나 참여는 그 사람들이 사회적 문제나 위기 상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는 인권에 관한 지식 및 참여도가 특정 사건에 대한 더 깊은 이해나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과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둘째, 인권 교육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인식은 그 사람이 인권 문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교육을 통해 인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식을 얻게 되면, 그로 인해 사회적 문제나 위기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평가와 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권 교육은 개인의 인권 인식을 키우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인권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과 인식은 개인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인권 침해의 위험성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인식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따라서 이러한 민감한 인식은 사회적 문제나 위기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해결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을 통해 사회 전체의 인권 인식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인권 교육은 사회적 위기나 문제에 대한 적절한 인식과 대응 능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의 인권 상황에 관한 인식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인권 교육과 인권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 연구 결과는 감염병 대응 전략과 관련된 사회적 대응 방안을 수립할 때 다음과 같은 주요한 접근 방법을 고려해야 함을 제시한다.

첫째, 젊은 세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며, 그들의 인권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과 캠페인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이는 세대 간의 다양한 인식 차이를 해소하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인권 이슈에 대한 균일한 대응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인권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강한 인식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요 요인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을 증대시키면, 감염병 상황에서의 인권 이슈에 대한 민감도와 인식도 함께 향상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

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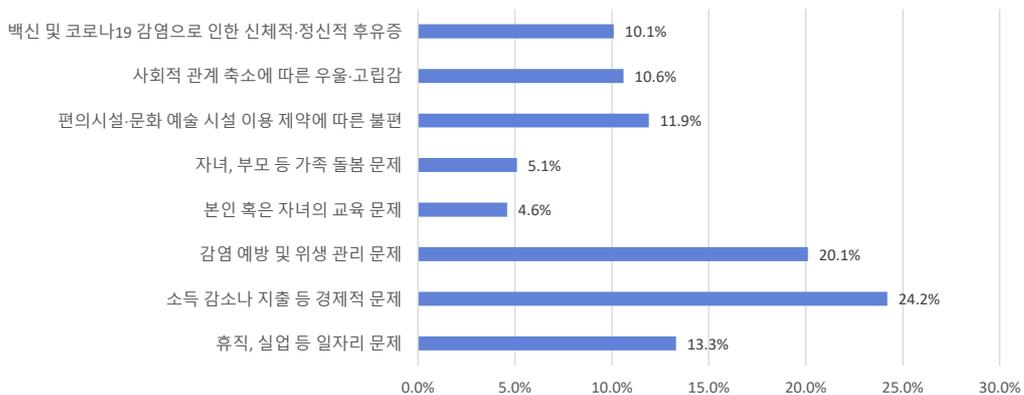
이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의 인권 인식 및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조명하고자 했다. 이러한 요인들은 개인의 사회적, 교육적 배경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재확인하였다.

3)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한 어려움

(1) 조사 결과

2022년 조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한 주된 어려움에 관한 문항에서, 1순위 어려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경제적 문제였다. 소득 감소나 지출 등 경제적 문제 단일 항목만으로도 약 1/4에 해당하는 비율(약 24%)을 보였으며, 휴직 및 실업 등 일자리 문제를 경제적 문제로 확대하면 약 37%의 응답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주된 어려움으로 경제적 문제를 꼽고 있었다. 이어서 감염 예방 및 위생관리 문제(약 20%), 편의시설 및 문화예술 시설 이용 제약에 따른 불편(약 12%) 등이 뒤를 이었다.

[그림 III-3]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한 어려움 응답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응답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교차하여 비교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선택한 유형에 따라 심각하게 인식하는 인권 문제에 따른 차이도 드러난다.

휴직, 실업 등 일자리 문제를 주요 어려움으로 꼽은 경우, 방역 과정의 개인정보 노출(25.7%)을

Ⅲ. 감염병 상황의 인권 쟁점에 관한 인식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로 인식했으며, 이어서 돌봄 공백으로 인한 취약계층 고립(25.3%)을 꼽았다.

소득 감소나 지출 등 경제적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집단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이 집단에서 영업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24.7%)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돌봄 공백으로 인한 취약계층 고립(24.2%)을 심각한 인권 문제로 꼽고 있었다.

감염 예방 및 위생 관리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집단이 인식하는 심각한 인권 문제의 경우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이 집단에서 돌봄 공백으로 인한 취약계층 고립(29.2%)을 가장 중요한 인권 문제로 꼽았다. 이어서 방역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노출(16.8%)을 심각한 인권 문제로 꼽고 있었다. 이는 감염 예방 및 위생 관리 문제에 민감한 집단일수록 취약 계층의 고립 문제 및 개인정보 노출 문제에 대해서도 민감성이 큰 집단일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결과이다.

본인 혹은 자녀의 교육 문제를 주요 어려움으로 꼽은 집단에서도 돌봄 공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립(36.0%)을 심각한 인권 문제로 꼽고 있었다. 영업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14.4%)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본인 및 가족의 교육 문제가 취약계층 고립 문제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 있을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결과이다. 가족의 교육 문제는 돌봄 문제와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자녀, 부모 등 가족 돌봄 문제를 주요 어려움으로 꼽은 집단은 돌봄 공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립(42.2%)이 큰 차이로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로 꼽고 있었다. 이는 앞서 교육 문제와 유사하게, 돌봄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집단이 돌봄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에 민감성이 큰 집단과 교차하는 집단일 수 있다는 추정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이 집단에서 그 다음 어려움으로 꼽은 것은 영업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17.0%)로 나타나는데, 다른 항목에 비하여 1, 2위 항목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편의시설, 문화 예술 시설 이용 제약에 따른 불편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은 집단에서는 영업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24.1%), 돌봄 공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립(23.8%)을 심각한 인권 문제로 꼽았다.

사회적 관계 축소에 따른 우울, 고립감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은 집단에서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립(24.7%)을 심각한 인권 문제로 꼽았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경험한 사회적 고립 문제가 돌봄 공백으로 인한 취약계층 고립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음을 보이는 결과이다. 영업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21.0%)는 그 다음으로 심각한 인권 문제로 나타난다.

백신 및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은 집단에서는

다른 집단과 다른 경향이 나타난다. 이 집단에서는 방역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노출(18.7%)과 백신 접종 여부 및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차별(17.3%)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주된 인권 문제로 꼽고 있다. 이는 백신이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인 후유증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던 집단이 방역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백신 및 감염에 따른 차별에 민감성이 큰 집단을 추정할 수 있는 결과이다. 특히 앞서 다른 집단이 주요 인권 문제로 경제적 문제, 사회적 고립 문제, 돌봄 문제 등을 주로 꼽은 것에 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차별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볼 때, 가장 특징적인 집단으로 볼 수 있다.

〈표 III-5〉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1순위와 그에 따른 인권 문제 인식

		문39.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1순위 응답만)								
		휴직 실업 등 일 자리문제	소득감소나 지출 등 경제적 문제	감염예방 및 위생 관리문제	본인 혹은 자취교 육문제	자녀 부모 등 가족 돌봄 문제	편의시설 문화예술 시설 이용 장애에 따른 불편	사회적관계 축소에 따른 우울감	백신 및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	기타
문40. 코로나 19 상황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1 순위 응답만)	방역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25.7%	16.9%	16.8%	12.8%	11.1%	14.9%	15.9%	18.7%	12.1%
	방역을 이유로 한 집회 제한	10.8%	13.8%	12.3%	13.1%	8.9%	9.0%	8.8%	11.9%	3.0%
	돌봄 공백으로 인한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아동)의 고립	25.3%	24.2%	29.2%	36.0%	42.2%	23.8%	24.7%	16.8%	18.2%
	백신 접종 여부 및 코로나 19 감염에 따른 차별	9.1%	11.0%	15.5%	13.9%	12.3%	11.3%	10.5%	17.3%	12.1%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산권 침해	19.9%	24.7%	16.2%	14.4%	17.0%	24.1%	21.0%	16.0%	21.2%
	방역을 이유로 한 사회복지시설 내 접근제한	5.9%	6.3%	7.0%	7.2%	6.3%	12.4%	13.8%	11.6%	12.1%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표현과 차별 증가	3.3%	3.1%	2.8%	2.5%	2.0%	4.4%	5.4%	7.6%	6.1%
	기타	0.0%	0.1%	0.2%	0.1%	0.1%	0.1%	0.0%	0.2%	15.2%
전체 (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Ⅲ. 감염병 상황의 인권 쟁점에 관한 인식

이번 분석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코로나19에 의한 어려움과 같은 여러 범주와 다른 요인 사이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다항로지스틱회귀(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실시했다. 다항로지스틱회귀는 2개 이상의 명목 범주에 대한 여러 요인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은 기존 로지스틱회귀 분석의 확장으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비선형 관계를 모델링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다항로지스틱회귀 분석의 특성으로 인해 코로나19에 의한 어려움 중 하나의 범주를 참조 범주로 설정해야 한다. 이번 분석의 주제가 코로나19로 인한 “인권” 상황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코로나19 감염 및 백신에 의한 후유증(감염병에 따른 신체, 정신적 증상 등 의학적 문제)을 참조범주로 설정하였다. 아래의 분석은 이 참조 범주와 비교했을 때, 특정한 문제(일자리, 경제적 문제 등)를 선택할 가능성이 큰 요인을 검토한 결과이다. 여기서 참조 범주와 비교했을 때, 다른 범주를 선택할 확률은 승산비(Odds Ratio)로 표현된다. 이때 각 독립 변수의 회귀 계수를 사용하여 승산비를 계산할 수 있다. 승산비는 한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종속 변수의 확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나타낸다. 승산비가 1보다 크면 해당 변수의 증가는 종속 변수의 확률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1보다 작으면 감소 방향으로 작용한다. 즉, 승산비가 1보다 큰 요인은 해당 범주를 선택할 확률이 높고, 1보다 작은 요인은 선택 확률이 작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III-6〉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다항로지스틱회귀 분석 모형

유형	변수	변수코딩
종속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1순위	1(휴직,실업 등 일자리 문제), 2(소득 감소 등 경제적 문제), 3(감염 등 위생 문제), 4(본인 혹은 자녀 교육 문제), 5(자녀, 부모 등 가족돌봄 문제), 6(편의시설, 문화예술 시설 이용제한), 7(사회적 관계 축소에 따른 고립, 우울), 8(백신 등 코로나감염으로 인한 신체 문제)
	성별	남(0), 여(1)
	혼인상태	1(미혼,비혼),2(배우자있음),3(사별),4(이혼,별거)
	연령집단	1(20대이하),2(30대),3(40대),4(50대),5(60대이상)
	교육수준	중졸(1),고졸(2),대졸(3),대학원졸(4)
독립	도시/비도시 여부	비도시(0),도시(1)
	직장내지위	1(임금근로자),2(자영업),3(자영업_고용원없음),4(무급가족종사자),5(기타 특수근로)
	정치적 성향	1(보수),2(중도),3(진보),4(무관심)
	공동체/개인주의	1(공동체),2(개인),3(둘다)
	종교여부	없음(0), 있음(1)

휴직, 실업 등 일자리 문제: 미혼 및 비혼인 집단(OR=1.524)은 백신 및 코로나 감염에 의한 후유증을 선택할 확률보다 일자리 문제를 선택할 확률이 크게 나타난다. 비도시 지역 거주 집단(OR=0.730과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집단, (OR=0.774)은 반대로 백신 및 코로나 감염에 의한 후유증을 선택할 확률보다 일자리 문제를 선택할 확률이 적게 나타난다.

소득 감소나 지출 등 경제적 문제: 40대, 50대는 소득 감소 등 경제적 문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백신 및 코로나 감염에 의한 후유증을 선택할 확률 보다 높게 나타난다(OR=1.287, OR=1.319). 또한 공동체 보다 개인을 중시하거나(OR=1.381), 정치적으로 중도 집단인 경우(OR=1.310)에도 경제적 문제를 더 선택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OR=0.754)하거나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집단(0.806)은 경제적 문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감염 예방 및 위생 관리 문제: 감염 예방 및 위생 관리 문제를 선택할 확률이 백신 및 코로나 감염에 의한 후유증을 선택할 확률보다 큰 요인은 공동체 보다 개인을 중시하는 집단(OR=1.380)으로 나타난다. 반면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거나(OR=0.832),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집단(OR=0.806)은 감염 예방 및 위생 관리 문제를 선택할 확률이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본인 혹은 자녀의 교육 문제: 본인 혹은 자녀의 교육 문제를 선택할 확률이 백신 및 코로나 감염에 의한 후유증을 선택할 확률보다 큰 요인은 연령 집단의 경우 30대(OR=1.673)와 40대(OR=1.993)로 나타나며,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임금근로자(OR=6.91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OR=6.911), 무급가족종사자(OR=7.605)가 교육 문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공동체 보다 개인 중시하거나(OR=1.678), 정치적으로 중도적인 집단(OR=1.403)도 교육 문제를 선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반면 성별의 경우 남성인 경우(OR=0.798), 비도시 지역에 거주할 경우(OR=0.735),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할 경우(OR=0.640) 교육 문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 부모 등 가족 돌봄 문제: 코로나 감염 및 백신에 따른 후유증을 선택할 확률보다 가족 돌봄 문제를 선택할 확률이 큰 요인은 연령 집단 중 30대(OR=1.506), 40대(OR=1.544)로 나타난다. 반면, 가족돌봄문제를 선택할 확률이 작은 요인은 더욱 다양하게 나타난다. 혼인 요인에서는 미혼 및 비혼 집단(OR=0.451)과 사별한 집단(OR=0.525)이 가족 돌봄 문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적게 나타난다. 또한 모든 교육 요인에서 가족 돌봄을 선택할 확률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의 측면에서는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경우(OR=0.642),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경우(OR=0.698) 돌봄 문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작음을 확인하였다.

Ⅲ. 감염병 상황의 인권 쟁점에 관한 인식

편의시설, 문화 예술 시설 이용 제약에 따른 불편: 미혼 및 비혼인 집단(OR=1.709)은 백신 및 코로나 감염에 의한 후유증을 선택할 확률보다 편의시설 및 문화예술 시설 이용 제약에 따른 불편 문제를 선택할 확률이 크게 나타난다. 반면 연령 집단에서는 20대(OR=0.518), 30대(OR=0.540), 40대(OR=0.569)가 문화시설 등 이용 불편 문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며,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집단(OR=0.540)에서도 작게 나타난다.

사회적 관계 축소에 따른 우울, 고립감: 정치적으로 중도적(OR=1.299), 진보적인 집단(OR=1.342)은 백신 및 코로나 감염에 의한 후유증을 선택할 확률보다 사회적 고립 문제를 선택할 확률이 크게 나타난다. 이와 달리, 비도시 지역 거주 집단(OR=0.773)이나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집단(OR=0.731)은 백신 및 코로나 감염에 의한 후유증을 선택할 확률보다 사회적 관계 축소에 따른 고립감 문제를 선택할 확률이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7〉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선택 요인에 관한 다항로지스틱회귀 분석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1순위) 범주	변수	B	Wald	Exp(B) (OR)	95%CI	
					Lower	Upper
휴직, 실업 등 일자리 문제	혼인_미혼 및 비혼	0.421	2.935	1.524*	0.941	2.468
	지역_비도시	-0.315	8.881	0.730**	0.594	0.898
	정치_보수	-0.256	4.104	0.774**	0.604	0.992
소득감소나 지출 등 경제적 문제	연령_40대	0.253	3.276	1.287*	0.979	1.692
	연령_50대	0.276	4.956	1.319**	1.034	1.682
	혼인_사별	-0.507	4.187	0.602**	0.370	0.979
	지역_비도시	-0.287	9.234	0.750**	0.624	0.903
	공동체중시	-0.283	6.576	0.754**	0.607	0.935
	개인중시	0.323	9.325	1.381**	1.123	1.700
	정치_보수	-0.216	3.439	0.806*	0.642	1.012
	정치_중도	0.270	5.889	1.310**	1.053	1.628
감염예방 및 위생관리 문제	지역_비도시	-0.184	3.475	0.832*	0.686	1.010
	개인중시	0.322	8.495	1.380**	1.111	1.714
	정치_보수	-0.208	2.937	0.812*	0.640	1.030
본인 혹은 자녀의 교육 문제	성별_남성	-0.226	3.509	0.798*	0.629	1.011
	연령_30대	0.515	4.872	1.673**	1.059	2.642
	연령_40대	0.689	10.942	1.993***	1.324	2.998
	지역_비도시	-0.308	4.438	0.735**	0.552	0.979
	고용_임금근로자	1.933	3.422	6.911*	0.891	53.590
	고용_자영업(고용원없음)	1.933	3.372	6.911*	0.878	54.402
	고용_무급가족종사자	2.029	3.546	7.605*	0.920	62.839
	공동체중시	-0.447	5.829	0.640**	0.445	0.919
	개인중시	0.518	12.938	1.678***	1.266	2.225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1순위) 범주	변수	B	Wald	Exp(B) (OR)	95%CI	
					Lower	Upper
	정치_중도	0.339	4.392	1.403**	1.022	1.925
자녀, 부모 등 가족 돌봄 문제	연령_30대	0.409	3.459	1.506*	0.978	2.318
	연령_40대	0.434	4.877	1.544**	1.050	2.270
	혼인_미혼 및 비혼	-0.797	6.157	0.451**	0.240	0.846
	혼인_사별	-0.644	3.153	0.525*	0.258	1.069
	교육_중졸이하	-0.742	4.220	0.476**	0.235	0.967
	교육_고졸	-0.777	6.047	0.460**	0.248	0.854
	교육_대졸	-0.793	6.720	0.453**	0.249	0.824
	공동체중시	-0.444	6.645	0.642**	0.458	0.899
	정치_보수	-0.360	4.478	0.698**	0.500	0.974
편의시설·문화예술시설 이용 제약에 따른 불편	혼인_미혼 및 비혼	0.536	4.289	1.709**	1.029	2.836
	연령_20대	-0.658	4.460	0.518**	0.281	0.954
	연령_30대	-0.616	4.861	0.540**	0.312	0.934
	연령_40대	-0.563	4.249	0.569**	0.333	0.973
	공동체중시	-0.616	20.350	0.540***	0.413	0.706
사회적 관계 축소에 따른 우울·고립감	지역_비도시	-0.258	4.892	0.773**	0.615	0.971
	공동체중시	-0.314	5.410	0.731**	0.561	0.952
	정치_중도	0.262	3.572	1.299*	0.990	1.704
	정치_진보	0.294	3.935	1.342**	1.004	1.796
모형 설명	1) 참조 범주는 백신 및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2) 본 결과표는 다음 기준에 따라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된 변수만을 보고하고 있음 *p<0.1, **p<0.05, ***p<0.001					

(2) 결과 요약

휴직 실업 등 일자리 문제를 선택할 확률은 미혼 및 비혼인 경우 늘어남. 반면, 비도시 지역 거주하거나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경우 감소하였다.

소득 감소 등 경제적 문제를 선택할 확률은 중장년층, 공동체 보다 개인을 중시할 경우 증가. 반면 비도시 거주하거나 개인보다 공동체 중시할 경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 예방 등 위생관리를 선택할 확률은 개인을 공동체 보다 중시할 경우 증가. 반면, 비도시 지역 거주,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경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인 혹은 자녀의 교육 문제를 선택할 확률은 청장년층에서 늘어나며, 종사상지위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을 제외하면 모두 교육 문제 선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을 공동체보다 중시하거나, 정치적으로 중도적인 경우에도 선택 확률이 증가했으나, 반면, 남성이거나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거나 공동체를 개인보다 중시하는 경우 선택 확률은 줄어들음을 확인하였다.

자녀, 부모 등 가족 돌봄 문제를 선택할 확률은 청장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선택확률이 낮은 요인으로는 혼인 상황 중에서는 미혼 및 비혼과 사별, 교육 수준(모든 교육 수준에서 낮

Ⅲ. 감염병 상황의 인권 쟁점에 관한 인식

게 나타남)으로 나타난다. 또한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할 경우,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일 수록 돌봄 문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편의시설, 문화시설 이용 제약에 따른 불편을 선택할 확률은 미혼 및 비혼인 경우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20대~40대 연령층은 이러한 문제를 선택할 확률이 낮게 나타나며,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경우에도 낮게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 축소에 따른 고립감, 우울감을 선택할 확률은 정치적으로 중도적이거나 진보적인 경우 늘어났다. 반면,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거나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가치를 가진 경우 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다음 표는 이상의 결과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만을 요약한 결과이다.

〈표 Ⅲ-8〉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선택 요인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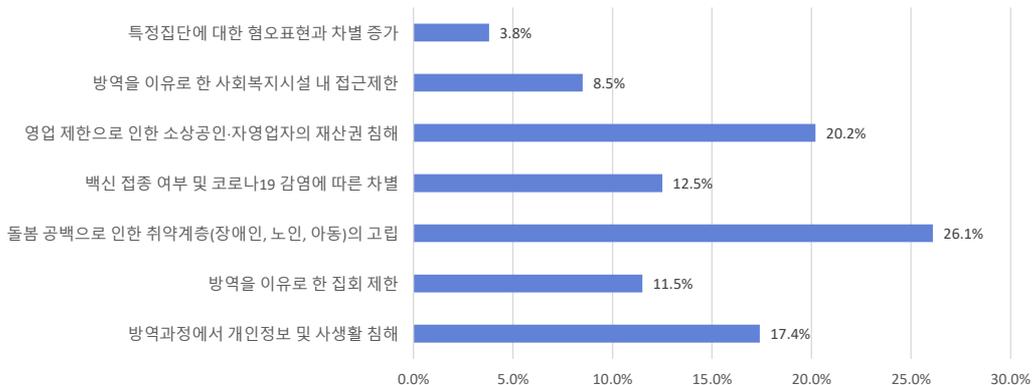
휴직, 실업등일자리문제		소득감소나지출등경제적문제		감염예방및위생관리문제		본인혹은자녀의교육문제	
혼인_미혼 및 비혼	+	연령_40대	+	지역_비도시	-	성별_남성	-
지역_비도시	-	연령_50대	+	개인중시	+	연령_30대	+
정치_보수	-	혼인_사별	-	정치_보수	-	연령_40대	+
		지역_비도시	-			지역_비도시	-
		공동체중시	-			고용_임금근로자	+
		개인중시	+			고용_자영업(고용원 없음)	+
		정치_보수	-			고용_무급가족종사자	+
		정치_중도	-			공동체중시	-
						개인중시	+
						정치_중도	+
자녀, 부모등가족돌봄문제		편의시설_문화예술시설이용 제약에따른불편		사회적관계축소에따른 우울_고립감		〈참조범주〉 코로나19 감염 및 백신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	
연령_30대	+	혼인_미혼 및 비혼	+	지역_비도시	-		
연령_40대	+	연령_20대	-	공동체중시	-		
혼인_미혼 및 비혼	-	연령_30대	-	정치_중도	+		
혼인_사별	-	연령_40대	-	정치_진보	+		
교육_중졸이하	-	공동체중시	-				
교육_고졸	-						
교육_대졸	-						
공동체중시	-						
정치_보수	-						

4)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인권 문제에 관한 인식

(1)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인권 문제에 관한 인식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응답은 돌봄 공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립(26.1%)으로 나타난다. 이는 범유행 기간 중 드러난 취약 집단에 대한 복지, 사회 서비스 등의 단절을 중요한 인권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방역 조치와 관련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도 중요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경험된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주로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지점과 결부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림 III-4]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인권 문제에 관한 인식 응답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 1순위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1순위 선택을 교차하여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인권 문제와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이 보이는 상관성을 추정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방역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를 심각한 인권 문제 1순위로 꼽은 응답자들은 소득감소나 지출 등 경제적 문제(23.5%)와 감염예방 및 위생관리 문제(19.4%)를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어려움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을 이유로한 집회 제한을 심각한 인권 문제 1순위로 꼽은 응답자들은 소득 감소나 지출 등 경제적 문제(28.9%)와 감염 예방 및 위생 관리 문제(21.5%)를 주요 어려움으로 꼽고 있었다. 특히 방역으로 이유로한 집회 제한을 심각한 문제로 꼽은 집단은 경제적 문제를 주요 어려움으

Ⅲ. 감염병 상황의 인권 쟁점에 관한 인식

로 꼽은 비율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꼽은 집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돌봄 공백으로 인한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아동)의 고립을 심각한 인권 문제 1순위로 꼽은 응답자들은 경제적 문제(22.4%)와 위생 관리 문제(22.5%)를 거의 비슷한 비율로 선택하였다.

백신 접종 여부 및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차별을 1순위로 꼽은 응답자들은 경제적 문제도 주된 불편(21.4%)으로 꼽으나, 감염 예방 등 위생관리 문제(24.9%)를 1순위 불편으로 꼽은 비율이 높게 나타난 집단이다. 이는 감염에 따른 차별 경험에 따라 일상에서 경험하는 불편의 우선 순위에 영향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결과이다.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산권 침해를 1순위로 꼽은 응답자들의 29.6%가 경제적 문제를 주요 불편으로 꼽았으며, 이어서 감염 예방 및 위생 관리 문제(16.1%)를 주요 불편으로 꼽았다. 경제적 문제는 대다수의 집단에서 1순위로 꼽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나, 재산권 침해를 민감하게 인식하는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집단이 경제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실제로도 클 수 있음을 보인다.

방역을 이유로 한 사회복지시설 내 접근제한을 1순위로 꼽은 집단의 경우 1순위 불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경제적 문제(17.8%), 편의시설 및 문화예술시설 이용제약에 따른 불편(17.4%), 사회적 관계 축소에 따른 고립(17.3%)이 거의 유사한 비율로 주된 불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감염에 따른 차별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는 집단의 경우 경제적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등 관계 측면에서의 불편을 민감하게 인지하는 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표현과 차별 증가를 심각한 인권 문제 1순위로 꼽은 집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선택 순위에서 앞의 인권 문제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여기에서는 백신 및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20.1%)이 1순위 불편으로 꼽힌다. 이와 비율은 유사하나 경제적 문제(19.4%)가 그 다음 불편으로 꼽혔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차별 문제를 민감하게 인식하는 집단인 경우 코로나19 및 백신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에 더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관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결과이다. 물론, 어떤 요인이 인과적으로 원인에 해당하는지 본 조사 자료로는 추정할 수 없으나, 둘 사이의 상관성은 코로나19 감염 및 백신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어떤 형태로든 코로나19에 의한 차별, 혐오와 서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인다.

〈표 III-9〉 코로나19 상황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교차분석

		문40. 코로나19 상황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1순위 응답만)							
		방역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생활 침해	방역을 이유로 한 집회 제한	돌봄 공백으로 인한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아동)의 고립	백신 접종 여부 및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차별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산권 침해	방역을 이유로 한 사회복지시설 내 접근 제한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표현과 차별 증가	기타
문39.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1순위 응답만)	휴직, 실업 등 일자리 문제	19.7%	12.5%	12.9%	9.7%	13.2%	9.2%	11.3%	0.0%
	소득 감소나 지출 등 경제적 문제	23.5%	28.9%	22.4%	21.4%	29.6%	17.8%	19.4%	10.5%
	감염 예방 및 위생 관리 문제	19.4%	21.5%	22.5%	24.9%	16.1%	16.5%	14.9%	31.6%
	본인 혹은 자녀의 교육 문제	3.3%	5.2%	6.3%	5.1%	3.3%	3.9%	2.9%	5.3%
	자녀, 부모 등 가족 돌봄 문제	3.2%	3.9%	8.2%	5.0%	4.3%	3.8%	2.6%	5.3%
	편의시설·문화 예술 시설 이용 제약에 따른 불편	10.2%	9.3%	10.9%	10.8%	14.2%	17.4%	13.6%	5.3%
	사회적 관계 축소에 따른 우울·고립감	9.7%	8.1%	10.1%	8.9%	11.1%	17.3%	14.9%	0.0%
	백신 및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10.9%	10.5%	6.5%	14.0%	8.1%	13.8%	20.1%	15.8%
	기타	0.1%	0.1%	0.1%	0.2%	0.2%	0.3%	0.3%	26.3%
전체 (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이 문항 또한 앞서 분석한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은 인권 상황에 관한 인식을 담고 있기에, 조사에 포함된 인권 의식 등 관련 요인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이 문항의 경우 모두 인권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어,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쟁점을 토대로 참조 범주를 선택하였다. 이번 분석에서는 감염병 범유행이 권리 침해 미친 영향 중 인권의식과 밀접한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런 특성을 반영하여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발생한 쟁점 중 새로이 출현한 감염병에 따른 차별, 집회 제한 문제, 재산권 침해 문제, 혐오 표현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접근 제한을 참조 범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감염병 상황의 인권 쟁점에 관한 인식

〈표 III-10〉 코로나19 상황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 다항로지스틱회귀 분석 모형

유형	변수	변수코딩
중속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	1(방역과정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2(방역에 따른 집회 제한), 3(돌봄 공백으로 인한 취약계층 고립), 4(백신 접종 여부 및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차별), 5(영업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6(방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접근 제한), 7(특정 집단 혐오차별 증가)
독립	성별	남(0), 여(1)
	혼인상태	1(미혼, 비혼), 2(배우자있음), 3(사별), 4(이혼, 별거)
	연령집단	1(20대이하), 2(30대), 3(40대), 4(50대), 5(60대이상)
	교육수준	중졸(1), 고졸(2), 대졸(3), 대학원졸(4)
	도시/비도시 여부	비도시(0), 도시(1)
	직장내지위	1(임금근로자), 2(자영업), 3(자영업_고용원없음), 4(무급가족종사자), 5(기타 특수근로)
	정치적 성향	1(보수), 2(중도), 3(진보), 4(무관심)
	공동체/개인주의	1(공동체), 2(개인), 3(둘다)
인권 요인	종교여부	없음(0), 있음(1)
	인권인식	문4-1~문4-3을 표준화, 1(매우긍정적)-4(매우부정적)
	인권이견	문7-2,7-3,7-5를 표준화, 1(인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4(인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인권참여	문34-1~문34-7을 표준화, 0(불참)-7(모두참여)

다항로지스틱회귀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역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사회복지시설 제한과 비교했을 때 방역 과정의 사생활 침해 문제를 1순위로 선택할 확률이 높은 요인은 연령 집단의 경우 40대(OR=1.349), 50대(OR=1.297) 그리고 혼인 유형에서는 기혼(OR=1.521)인 경우로 나타난다. 반면 비도시 지역에 거주(OR=0.745)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 문제를 선택할 확률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방역을 이유로한 집회 제한: 인권 의식 요인의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다. 인권 상황 인식이 부정적일수록(OR=1.360), 인권에 관한 의견이 긍정적일수록(OR=1.538) 사회복지시설 제한과 비교했을 때, 방역을 이유로 한 집회 제한이 문제라고 선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공동체보다 개인을 중시하는 경우(OR=1.234), 정치적으로는 중도(OR=1.389)와 진보적인 집단(OR=1.371)의 경우 집회 제한을 문제로 꼽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도시 지역 거주(OR=0.747)의 경우 집회 제한을 문제로 꼽을 확률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돌봄 공백으로 인한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아동)의 고립: 코로나19로 인한 인권 문제 1순위로 취약계층 돌봄 문제로 인한 고립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요인은 혼인 요인 중 기혼 집단(OR=1.396)으로 나타난다. 반면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OR=0.747), 공동체보다 개인을 중시하는 경우(OR=0.838) 취약계층의 돌봄 문제에 따른 고립을 선택할 확률이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백신 접종 여부 및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차별: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차별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요인은 연령 집단의 경우 30대(OR=1.503)와 40대(OR=1.549)로 나타나며, 혼인 집단에서는 기혼인 경우(OR=1.463) 선택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OR=0.730) 백신 접종 및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차별을 1순위 문제로 선택할 확률은 낮아졌다.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산권 침해: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문제를 1순위로 선택할 확률이 증가한 경우는 연령집단 중 40대(OR=1.353)로 나타났다. 반면 비도시 지역에 거주(OR=0.594)하거나,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경우(OR=0.743) 영업 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1순위 문제라고 선택할 확률이 낮아졌다.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표현과 차별 증가: 사회복지 시설 이용 제한과 비교했을 때,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 및 차별이 늘어난 것을 1순위 문제로 선택할 확률이 높은 요인들은 인권 참여 수준과 연령 요인으로 나타난다. 인권 관련 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하는 경우(OR=1.324) 혐오차별 문제를 1순위 문제로 꼽을 가능성이 컸다. 또한 연령 효과도 60대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20대 이하(OR=2.000), 30대(OR=2.653), 40대(OR=2.406), 50대(OR=1.492) 연령층에서 혐오차별 문제를 1순위로 꼽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11〉 코로나19 상황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1순위) 선택 요인에 관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문40. 코로나19 상황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_1순위	변수	B	Wald	Exp(B) (OR)	95%CI	
					Lower	Upper
방역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연령_40대	0.299	3.489	1.349*	0.985	1.846
	연령_50대	0.260	3.481	1.297*	0.987	1.703
	혼인_기혼	0.420	4.371	1.521**	1.027	2.255
	지역_비도시	-0.295	7.988	0.745**	0.607	0.914
방역을 이유로 한 집회 제한	인권인식	0.308	9.969	1.360**	1.124	1.646
	인권의견	0.430	25.419	1.538***	1.301	1.818
	지역_비도시	-0.267	5.714	0.766**	0.615	0.953
	개인중시	0.210	3.228	1.234*	0.981	1.551
	정치_중도	0.329	6.123	1.389**	1.071	1.802
	정치_진보	0.316	4.560	1.371**	1.026	1.832
돌봄 공백으로 인한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혼인_기혼	0.333	3.187	1.396*	0.968	2.013

Ⅲ. 감염병 상황의 인권 쟁점에 관한 인식

문40. 코로나19 상황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_1순위	변수	B	Wald	Exp(B) (OR)	95%CI	
					Lower	Upper
아동의 고립	지역_비도시	-0.291	8.755	0.747**	0.616	0.906
	개인중시	-0.177	2.703	0.838*	0.679	1.035
백신 접종 여부 및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차별	연령_30대	0.408	4.404	1.503**	1.027	2.199
	연령_40대	0.438	6.719	1.549**	1.113	2.157
	혼인_기혼	0.381	3.087	1.463*	0.957	2.237
	지역_비도시	-0.315	8.030	0.730**	0.587	0.907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산권 침해	연령_40대	0.302	3.840	1.353**	1.000	1.830
	지역_비도시	-0.521	26.271	0.594***	0.487	0.725
	공동체중시	-0.296	4.994	0.743**	0.573	0.964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표현과 차별 증가	인권참여	0.281	9.204	1.324**	1.104	1.587
	연령_20대 이하	0.693	4.275	2.000**	1.037	3.857
	연령_30대	0.976	12.615	2.653***	1.549	4.546
	연령_40대	0.878	13.044	2.406***	1.494	3.875
	연령_50대	0.400	3.241	1.492*	0.965	2.307
모형 설명	1) 참조 범주는 방역을 이유로 한 사회복지시설 내 접근제한 2) 본 결과표는 다음 기준에 따라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된 변수만을 보고하고 있음 *p<0.1, **p<0.05, ***p<0.001					

(2) 결과 요약

코로나19 상황에서 심각한 인권문제로 인식하는 문제 중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은 돌봄 공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립 문제로 나타난다(26.1%). 이어서 앞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유사하게, 영업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20.2%), 방역 초기부터 확진자의 동선 공개 등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7.4%).

이러한 경향을 종합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인권 침해 중 심각하다고 선택된 문제 중 단일 항목으로는 사회권과 연관된 취약계층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 및 재산권 침해, 집회 제한과 같은 자유권 측면의 문제도 절반 가까운 선택을 받아, 자유권 침해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인다.

주요 인권 문제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방역과정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를 선택할 확률은 중장년층, 혼인한 집단에서 높게 나타난다. 반면 비도시 지역 거주할 경우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방역을 이유로 한 집회 제한을 선택할 확률은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인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늘어나고 있었다. 또한 개인을 중시하고, 정치적으로는 중도, 진보적일수록 선택할 확률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공백으로 인한 취약계층 고립 문제를 선택할 확률은 기혼은 경우 증가할 수 있으나, 반면, 비도시 지역 거주하거나, 개인을 중시할 경우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 및 코로나 감염에 따른 차별을 선택할 확률은 청장년층, 기혼인 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업 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선택할 확률은 40대인 경우 증가. 반면,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거나, 공동체를 중시하는 경우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과 차별 증가를 선택할 확률은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다양한 인권 활동에 참여할수록 혐오 표현 문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12〉 코로나19 상황의 심각한 인권 문제 선택 요인 요약

방역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방역을 이유로 한 집회 제한		돌봄 공백으로 인한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아동)의 고립	
연령_40대	+	인권인식	+	혼인_기혼	+
연령_50대	+	인권태도	+	지역_비도시	-
혼인_기혼	+	지역_비도시	-	개인중시	-
지역_비도시	-	개인중시	+		
		정치_중도	+		
		정치_진보	+		
백신 접종 여부 및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차별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산권 침해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표현과 차별 증가	
연령_30대	+	연령_40대	+	인권참여	+
연령_40대	+	지역_비도시	-	연령_20대 이하	+
혼인_기혼	+	공동체중시	-	연령_30대	+
지역_비도시	-			연령_40대	+
				연령_50대	+

5) 2020년 당시 분석 결과와의 비교

여기에서는 2020년 인권의식실태조사를 토대로, 코로나19에 따른 인권 관련 쟁점에 대한 영향

Ⅲ. 감염병 상황의 인권 쟁점에 관한 인식

요인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2022년의 결과와 비교하려 한다. 2020년에는 부가 문항으로 코로나 19와 연관된 인권 관련 쟁점 세 가지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조사한 쟁점은 확진자 동선공개, 무증상 감염자의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에 대한 비난, 경제활동 제한 세 가지 문항이다.

다만, 2020년 조사 문항은 2022년 문항과 차이가 있어 동일한 변수 설계를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22년 모형과 가능한 유사한 변수를 적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음은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2020년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모형의 개요이다.

〈표 III-13〉 2020년 인권의식실태조사를 활용한 코로나19와 인권 쟁점 선형회귀분석 모형

종속변수		
변수명	변수 코딩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서 확진자의 동선 공개는 과도하다	매우 동의(1)-전혀 동의하지 않음(4)	
무증상 감염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비난 받는 것은 당연하다	매우 동의(1)-전혀 동의하지 않음(4)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경제활동을 제한해야 한다(일정 기간 영업 중단 등)	매우 동의(1)-전혀 동의하지 않음(4)	
독립변수		
범주	변수명	변수 코딩
사회인구변수	성별	남=1, 여=0
	교육	중졸(1), 고졸(2), 대졸(3), 대학원 이상(4)
	종교	없음(0), 있음(1)
	근로여부	없음(0), 있음(1)
	정치성향	진보, 보수 더미(중도+관심없음을 참고변수)
	월소득	월소득 로그변환
인권관련 변수	인권 상황 인식	많이 좋아짐(1)-많이 나빠짐(5)
	자기 인권 존중	매우 존중(1)-전혀 비존중(5)
	인권 침해 인식	매우 심각(1)-전혀 심각않음(4)
	혐오표현 경험	매우 자주(1)-전혀 없음(4)
	인권교육여부	없음(0), 있음(1)
	인권교육 필요성	매우 필요(1)-전혀 불필요(4)

(1)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의견

대다수 응답자(약 77.9%)는 확진자 동선 공개가 과도하다는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수 응답자가 확진자 동선 공개에 동의하며, 2020년 시점에서 심각한 수준의 인권 침해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결과이다.

요인 별로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나이가 늘어날수록 동선공개는 과도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치 성향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중도-무당파에 비하여 정치적으로 진보인 경우 과도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양상이 보인다.

인권 관련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 나라 인권 상황 나빠졌다고 인식할수록 확진자 동선 공개가 과도하다는 관점에 동의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한 자신의 인권의 존중받지 않는다고 인식할수록 동의하는 경향도 함께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반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동의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혐오표현 경험이 적을수록 동의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권 교육과 관련된 요인의 경우, 인권 교육을 받은 경우, 그리고 인권 교육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확진자 동선공개가 과도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 문항은 2022년 방역과정에서의 개인정보 공개와 사생활 침해와 유사한 문항으로, 2022년 조사에서는 40대 및 기혼 집단에서 사생활 침해를 심각한 인권 침해 유형 1순위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확진자 동선 공개가 과도하다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로 연령과 정치 성향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동선 공개와 같은 개인의 사생활과 연관된 영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이루어질 때, 고연령층일수록 그리고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집단이 더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 특히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 정도, 인권 교육도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자신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인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확진자 동선 공개가 과도하다는 의견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인권 감수성이 높은 집단에서 확진자 동선 공개와 같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슈에 더 민감한 태도를 가질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결과이다.

(2)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의견

응답자의 과반 이상인 약 79.1%가 '무증상 감염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비난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문항에서 비난의 정도 및 유형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설문을 진행하지 않아 비난 정도에 따른 차이를 판별하기는 불가능하나, 2020년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회적 규범으로서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추정할 수 있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늘어날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정치 성향의 경우, 진보적일수록 동의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인권 관련 요인의 경우, 먼저 인권 상황이 나빠졌다고 인식할수록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자신의 인권이 존중 받지 않는다고 인식할수록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인권 교육관련 요인에서도, 최근 1년간 인권 교육을 받은 경우, 인권 교육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

2022년 문항과 일치하는 문항은 없으나,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차별과 일부 유사성이 있는 문항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조사에서는 30, 40대 및 기혼 집단에서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차별을 심각한 인권 문제 1순위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비난이 당연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고연령층일수록,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경우 동의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이들 집단에서 사회적 규범, 공동체적 합의로서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위반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결과이다. 반면, 앞서 확진자 동선공개와 유사하게, 인권 감수성이 높은 집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에 따른 사회적 비난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권 감수성에 따라 국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위반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경제활동 제한에 대한 의견

마지막으로 영업 제한 등 방역을 위한 경제 활동 제한에 대하여 응답자의 약 73.4%가 경제활동 제한은 당연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앞서 확진자 동선공개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례와 유사하게, 2020년 시점에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동의 의견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방역 정책 위반에 대해서도 비난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늘어날수록 경제활동 제한이 당연하다는 관점에 동의하는 경향이 늘어난다. 경제활동의 경우 교육과 종교 요인의 영향도 나타났다. 응답자의 교육 수준이 늘어날수록 경제활동 제한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정치 성향의 경우 진보, 보수 모두 영향을 보였는데, 방향성은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경우 동의하는 경향을 보이나,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경우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인권 관련 요인의 경우, 앞서 두 문항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먼저, 우리 나라 인권 상황을 나빠졌다고 생각할수록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 인권 교육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2년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 재산권 침해와 유사한 문항으로, 2022년 조사에서 40대가 주로 심각하다고 인식하며, 공동체를 중시하는 경우 심각하다고 인식하나, 정치 성향에 따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제한은 앞서 살펴본 확진자 동선공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에 비하여 인권 관련 요인의 영향을 줄어듦,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영향을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 활동 제한이 앞서 두 요인에 비하여 재산권 침해와 같은 권리 차원 문제보다, 일상의 사회경제적 활동이라는 차원에서 좀 더 주목받는 쟁점이기 때문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결과이다.

〈표 III-14〉 2020년 인권의식실태조사의 코로나19 관련 응답 결과

응답	확진자동선공개는 과도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에 대한 비난은 당연하다		경제활동 제한은 당연하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동의	1,120	7.7 %	5,928	40.8 %	3,693	25.4 %
동의하는편	2,089	14.4 %	5,554	38.3 %	6,970	48.0 %
동의않는편	3,826	26.4 %	2,598	17.9 %	3,138	21.6 %
전혀비동의	7,484	51.5 %	439	3.0 %	718	4.9 %

Ⅲ. 감염병 상황의 인권 쟁점에 관한 인식

〈표 III-15〉 2020년 인권의식실태조사의 코로나19 관련 문항 선형회귀분석 결과표

	확진자동선공개	사회적거리두기	경제활동제한
변수명	Estimate	Estimate	Estimate
(절편)	3.898	1.57784	2.09336
연령	-0.002**	-0.003***	-0.006***
성별	-0.007	-0.005	0.003
정규교육정도	-0.011	0.005	0.029**
종교여부	-0.018	-0.014	0.033*
근로 여부(소득활동)	0.009	-0.025	0
정치적성향_보수	-0.042	0.031	0.044*
정치적성향_진보	0.112***	-0.073***	-0.064*
월평균가구소득	-0.057	-0.011	-0.007
인권상황 인식	-0.040***	0.021**	0.037***
본인 인권존중수준 인식	-0.051**	0.044**	0.027
전반적인인권침해 인식	0.058***	0.015	-0.017
혐오표현 경험	-0.029**	0.006	-0.012
인권교육 여부	-0.056*	0.053**	-0.032
인권교육필요성	-0.137***	0.123***	0.073***

*p<0.1, **p<0.05, ***p<0.001

4 요약 및 결론: 감염병과 인권 정책에 관한 제언

1) 조사 결과 요약

코로나19와 인권 상황 평가에 관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에서 연령 효과가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코로나19의 인권 상황에 대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평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정치적으로 중도 및 무당파인 집단에 비하여 보수적 집단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3) 인권 관련 요인에서는 인권 인식, 인권 참여, 그리고 인권에 대한 거리감이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주요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이나 주변 사회의 인권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 코로나19에 따른 인권 상황의 부정적 영향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관찰할 수 있었다. 자신에게 인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인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코

로나19의 인권 상황에 대한 영향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인권 교육의 경우, 인권 교육이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느낄수록, 코로나19와 관련된 인권 상황의 부정적 변화를 더욱 민감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에 따른 인권 상황 변화의 경우, 응답자 과반 이상이 코로나19가 인권 상황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저연령층은 덜 심각하게 평가하는 경향. 반면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경우, 인권 상황 인식이 부정적인 경우, 자신에게 인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관한 분석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선택할 확률은 소득, 일자리 등 경제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활동은 40-50대 남성, 공동체보다 개인을 중시할 경우 더 선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돌봄, 교육 관련 문제는 여성, 30-40대를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상세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휴직 실업 등 일자리 문제를 선택할 확률은 미혼 및 비혼인 경우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비도시 지역 거주하거나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경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소득 감소 등 경제적 문제를 선택할 확률은 중장년층, 공동체 보다 개인을 중시할 경우 증가. 반면 비도시 거주하거나 개인보다 공동체 중시할 경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감염 예방 등 위생관리를 선택할 확률은 개인을 공동체 보다 중시할 경우 증가. 반면, 비도시 지역 거주,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경우 감소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 본인 혹은 자녀의 교육 문제를 선택할 확률은 청장년층에서 늘어나며, 종사상지위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을 제외하면 모두 교육 문제 선택 가능성이 컸다. 또한 개인을 공동체보다 중시하거나, 정치적으로 중도적인 경우에도 선택 확률이 증가하였다. 반면, 남성이거나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거나 공동체를 개인보다 중시하는 경우 선택 확률은 줄어들 수 있었다.
- 자녀, 부모 등 가족 돌봄 문제를 선택할 확률은 청장년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선택확률이 낮은 요인으로는 혼인 상황 중에서는 미혼 및 비혼과 사별, 교육 수준(모든 교육 수준에서 낮게 나타남)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할 경우,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일 수록 돌봄 문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 편의시설, 문화시설 이용 제약에 따른 불편을 선택할 확률은 미혼 및 비혼인 경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20대~40대 연령층은 이러한 문제를 선택할 확률이 낮게 나타나며,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경우에도 낮게 나타났다.
- 사회적 관계 축소에 따른 고립감, 우울감을 선택할 확률은 정치적으로 중도적이거나 진보적인 경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거나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가치를 가진 경우 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해진 인권 문제의 경우, 취약계층 돌봄과 재산권 침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기혼 집단, 개인을 중시하는 집단에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재산권의 경우 공동체를 중시할 경우 선택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세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방역 과정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를 선택할 확률은 중장년층, 혼인한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비도시 지역 거주할 때 낮아졌다.
- 방역을 이유로 한 집회 제한을 선택할 확률은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인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높아났다. 또한 개인을 중시하고, 정치적으로는 중도, 진보적일수록 선택할 확률이 증가했다.
- 돌봄 공백으로 인한 취약 계층 고립 문제를 선택할 확률은 기혼은 경우 증가했다. 반면, 비도시 지역 거주하거나, 개인을 중시할 때 감소했다.
- 백신 접종 및 코로나 감염에 따른 차별을 선택할 확률은 청장년층, 기혼이면 증가했다.
- 영업 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선택할 확률은 40대일 때 증가했다. 반면,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거나, 공동체를 중시하는 경우 줄어들었다.
-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과 차별 증가를 선택할 확률은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인권 활동에 참여할수록 혐오 표현 문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났다.

2) 논의 및 결론

조사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등장한 인권 쟁점은 주로 방역 등 사회적 안전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가져왔고, 이 과정에서 여러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쟁점들이 부각되었다. 그리고 코로나19 범유행에 의해 초래된 우리 사회 다방면의 인권 상황의 변화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국가(정부)의 방역 과정의 권리 제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담론, 공동체 안전을 위한 분노, 공포, 혐오 등의 정서 등과 결합하며 빠르게 확산하는 특징을 보인다(Kim & Lee 2023). 이는 감염병 상황에서의 인권 의식이 외부 충격에 큰 취약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방역과 사회적 안전보장을 위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핵심적 책무의 주체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약도 가져올 수 있는 주요 행위자이다. 이전의 감염병 유행, 예를 들면 MERS나 SARS의 경우에서도 인권 문제가 논의된 바 있으나, 코로나19의 경우 그 규모와 영향력 때문에 인권과 관련된 논의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범유행은 감염병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국제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다룬 다양한 국내의 연구 및 UN, WHO 등의 성명, 보고서를 통해 방역 조치의 필요성과 한계, 그리고 인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할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여기서 국가의 책무성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이 책무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뿐만 아니라,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 책무성 문제는 방역 조치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분석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제안하려 한다. 방역과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는 진공상태가 아닌, 정부, 국가 등 공적 기구에 대한 신뢰와 연관되며 사회, 정치적 논의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건이다. 따라서 코로나19와 인권에 관한 연구는 장기적인 추세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의 특수성과 연결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차별과 재난의 교차, 권리 제한과 보호의 교차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기후 문제로 연결할 수 있는 프레임으로 확장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코로나19 시기에는 국가에 대한 신뢰, 시민 간 신뢰, 사회 간 신뢰가 추상적인 신뢰가 아닌 다양한 측면에서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범유행 과정에서 국가 중심의 권위주의에 대한 수용 가능성이 늘어났을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한 권리 유형에 따른 인식의 변화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책을 위한 제언

이상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인권을 중심으로 한 대응 전략 개발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조사 결과, 우리 사회 전반에서 코로나19가 인권 상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향후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 전략을 개발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정부, 민간단체, 전문가, 그리고 국제기구와 함께 협력하여 인권 기반의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고, 동시에 정책의 효과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 플랜이 필요하다. 특히 감염병 범유행은 코로나19 이전 SARS, MERS 등의 사례를 고려할 때 향후 언젠든 대두할 수 있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점에서 장기적 접근은 필수적이다.

Ⅲ. 감염병 상황의 인권 쟁점에 관한 인식

둘째, 재난 및 사회적 조건을 고려한 취약 집단 발굴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할 때, 행위자의 일상을 구성하는 생활 기회와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을 중심으로 심각성을 인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여성, 30-40대의 경우 돌봄 공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40-50대 남성은 경제적 문제를 호소할 가능성이 큰 결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특정 조건과 재난 상황에서 어떤 집단이 왜 취약한지 파악하기 위한 연구 등이 요청된다. 이를 통해 어떠한 종류의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사회 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 감염병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구체화하여(예: 중장년층, 자영업 등) 세밀한 사회보장 방안 마련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서 취약 집단 발굴과 연결되는 개념으로, 감염병 범유행으로 인한 취약 집단에 대한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때, 취약 집단의 성격과 특성을 반영한 넓고도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넷째,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감염병 추적과 모니터링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 개인 활용하기 위한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정보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염병 상황에서 확진자 동선 공개 등의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개인정보 활용 시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익명화하거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추출 및 사용 자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 차별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및 의식 확산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범유행 상황에서 직면한 인권 침해의 유형 중 하나는, 확진자에 대한 혐오표현 및 권리 침해만이 아니라,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혐오 및 차별로도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확진 및 백신 접종에 따른 혐오, 차별은 방역 과정의 권리 제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담론, 공동체 안전을 위한 분노, 공포, 혐오 등의 정서 등과 결합하며 빠르게 확산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인권 교육의 영향을 고려할 때,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이 있다. 감염병과 관련된 사회적 차별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정보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감염병과 관련된 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세대, 정파성, 공동체-개인지향 등 사회문화적 가치에 따라 감염병 상황의 인권 문제를 다르게 인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정보 제공이 다양한 언어와 형식으로 이루어져,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V. 인권통계의 분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격차

1. 인권통계의 작성
2. 계층 간 소득 격차와 사회 안전망
3. 노동자 간 일자리 격차
4. 의료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
5. 디지털 정보화의 세대 간 격차

IV

인권통계의 분석: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격차

1 인권통계의 작성

이 장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작성해 온 인권통계를 활용하여 국민의 인권 상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인권통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에 대한 인식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매년 작성하는 연례적 통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에 인권통계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2019년에 처음으로 인권통계를 작성하였다. 인권통계는 시민권과 참여, 사법정의, 생존권과 빈곤, 주거와 교통, 가족, 노동, 건강과 보건, 교육, 문화·미디어·정보, 환경과 생태, 가치와 의식 등 인권 상황의 주요 국면을 포함하는 11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통계는 통계의 신뢰성을 갖추기 위하여 정부 부처를 포함한 국가기관과 OECD 등 국제기구의 공식 통계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과 지표누리(index.go.kr)에서 제공되는 공인 통계를 활용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의 공식 통계 보고서나 연감에 수록된 자료도 이용하였다. 인권통계는 대표성을 갖도록 국가 수준, 즉 전국 또는 전 국민 단위로 집계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인권통계는 인권 상황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인권통계는 동일 반복 자료를 활용한 시계열 통계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인권 상황의 개선이나 악화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마지막으로 인권통계는 이용자의 통계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포함하여 간결한 형태로 작성되었다. 인권통계의 통계표에는 선별된 핵심 통계치만 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2023년 현재 467개 인권통계가 최신 자료로 작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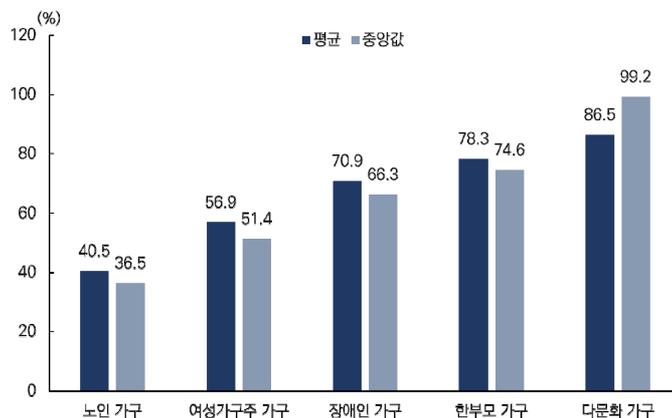
이 장에서는 그간 작성해 온 인권통계를 특정 주제 중심으로 선별, 분석하여 그 결과의 해설을 ‘스토리텔링’ 형태로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집단 간 격차에 초점을 두고 인권통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인권통계는 인구집단이나 지역으로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계층 간이나 지역 간 차이를 분석하기에 용이하다. 인권 취약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그 격차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생존권과 빈곤,

노동, 건강과 보건, 문화·미디어·정보 영역의 인권통계를 활용하여 해당 영역의 주요 인권 상황을 분석한다. 생존권과 빈곤 영역에서는 계층 간 소득 격차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상대적 생활수준을 가늠해 보고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재정 정책 노력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노동 영역에서는 임금, 노동복지, 산업안전 등 노동조건이 차이가 만들어 내는 일자리의 격차에 대해 알아보았다. 건강과 보건 영역에서는 지역 간 의료 격차에 주목하여, 의료 자원과 서비스가 광역시도별로 얼마나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문화·미디어·정보 영역에서는 장애인, 노인, 농어민, 저소득층을 포함하는 디지털 취약계층이 정보화 수준에서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그 격차 수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2 계층 간 소득 격차와 사회안전망

여기서는 먼저 노인, 여성,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가구의 상대적 소득 수준을 살펴본다. 전체 가구의 소득에 비해 이들 취약계층 가구의 소득이 어느 수준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을 100으로 하였을 때 노인 가구의 소득은 40.5%, 여성 가구의 소득은 56.9%, 장애인 가구의 소득은 70.9%, 한부모 가구의 소득은 78.3, 다문화 가구의 소득은 86.5%로 나타난다.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다문화 가구를 제외한 취약계층의 상대적 가구소득 수준은 더 낮아진다. 특히 취약계층 중 노인 가구와 여성 가구의 상대적 소득 수준이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V-1] 취약계층의 상대적 가구소득 수준, 2021



주: 1) 상대적 가구소득 = (취약계층 가구 소득 ÷ 전체 가구 소득) × 100.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소득에서 가장 취약한 두 계층, 즉 여성과 노인의 소득 격차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가구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가구원 수를 고려한 가구의 실질소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구원 수를 반영하여 균등화한 처분가능소득을 분석에 사용하고자 한다. 우선 남성 대비 여성의 상대적 소득은 2011-2021년 기간 동안 대체로 95% 안팎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 비율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남녀 간 소득 격차가 최근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 빈곤율을 통해서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는 빈곤 상황에 처한 인구의 규모를 알게 해 준다. 남녀 간 상대적 빈곤율의 차이는 2018년 4.1%p에서 2021년 3.0%p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표 IV-1〉 성별 소득 격차와 상대적 빈곤율, 2011-2021

연도	처분가능소득 평균(만 원)		여성 상대적 소득(%)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격차(%p)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1	2,625	2,494	95.0	16.8	20.3	3.5
2012	2,764	2,590	93.7	16.5	20.0	3.5
2013	2,861	2,714	94.9	16.7	20.0	3.3
2014	2,867	2,723	95.0	16.4	20.0	3.6
2015	2,930	2,793	95.3	15.7	19.3	3.6
2016	3,058	2,907	95.1	15.7	19.4	3.7
2017	3,194	3,037	95.1	15.3	19.2	3.9
2018	3,289	3,135	95.3	14.6	18.7	4.1
2019	3,395	3,249	95.7	14.3	18.1	3.8
2020	3,516	3,388	96.4	13.6	16.9	3.3
2021	3,736	3,604	96.5	13.6	16.6	3.0

주: 1) 여성 상대적 소득 = (여성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남성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100.

주: 2)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의 비율임.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이번에는 노인 인구의 소득 격차 상황을 살펴보자. 18-65세 인구 대비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소득 수준은 2011년 58.2%에서 2014년 62.2%로 높아진 후 최근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은퇴연령인구의 처분가능소득이 근로연령인구의 2/3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노인 인구의 소득 격차는 상대적 빈곤율로 잘 나타난다.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감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의 상

IV. 인권통계의 분석: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격차

대적 빈곤율은 2021년 기준 39.3%에 이른다.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18-65세 근로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근로연령인구의 무려 네 배에 이른다.

〈표 IV-2〉 연령별 소득 격차와 상대적 빈곤율, 2011-2021

연도	처분가능소득 평균(만 원)		노인 상대적 소득(%)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격차(%p)
	18-65세	66세 이상		18-65세	66세 이상	
2011	2,741	1,594	58.2	14.0	47.8	33.8
2012	2,872	1,702	59.3	13.9	47.0	33.1
2013	3,001	1,792	59.7	13.8	47.7	33.9
2014	3,006	1,869	62.2	13.7	46.0	32.3
2015	3,077	1,902	61.8	12.9	44.3	31.4
2016	3,207	1,966	61.3	12.9	45.0	32.1
2017	3,359	2,023	60.2	12.6	44.0	31.4
2018	3,464	2,112	61.0	11.8	43.4	31.6
2019	3,583	2,163	60.4	11.1	43.2	32.1
2020	3,703	2,346	63.4	10.6	40.4	29.8
2021	3,946	2,484	62.9	10.6	39.3	28.7

주: 1) 노인 상대적 소득 = (66세 이상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18-65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100.

주: 2)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의 비율임.

자료: 통계청·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노인 인구의 빈곤 상황은 여성 노인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66세 이상 남성 인구 대비 여성 인구의 상대적 소득은 2011년 89.1%에서 2021년 85.2%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노인 인구 사이에 성별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남녀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 격차도 커졌다. 2011년에서 2021년 사이 남성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3.1%에서 33.1%로 10%p 줄어들었지만 여성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51.1%에서 44.0%로 7.1%p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남녀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 격차는 8.0%p에서 10.9%p로 늘어났다. 다만 이 격차는 2019년 이후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표 IV-3〉 노인 성별 소득 격차와 상대적 빈곤율, 2011-2021

연도	처분가능소득 평균(만 원)		여성 노인 상대적 소득(%)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격차(%p)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1	1,702	1,517	89.1	43.1	51.1	8.0
2012	1,832	1,613	88.0	41.4	50.8	9.4
2013	1,926	1,699	88.2	42.3	51.4	9.1
2014	2,042	1,743	85.4	39.9	50.4	10.5
2015	2,055	1,791	87.2	37.9	49.0	11.1
2016	2,122	1,851	87.2	38.5	49.8	11.3
2017	2,193	1,893	86.3	37.3	49.1	11.8
2018	2,274	1,987	87.4	37.1	48.3	11.2
2019	2,344	2,023	86.3	36.1	48.7	12.6
2020	2,533	2,202	86.9	33.9	45.3	11.4
2021	2,711	2,310	85.2	33.1	44.0	10.9

주: 1) 여성 노인 상대적 소득 = (66세 이상 여성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66세 이상 남성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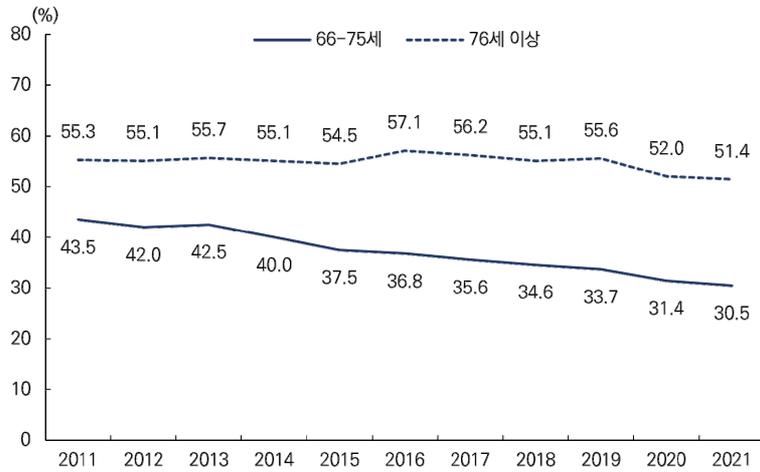
주: 2)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의 비율임.

자료: 통계청·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노인 인구의 빈곤 수준은 남녀 사이뿐만 아니라 연령계층 사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66-75세 전기 노인 인구와 76세 이상 후기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을 비교해 보면, 전기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기준 30.5%이지만 같은 해 후기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51.4%에 이른다.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 차이가 적지 않다. 이는 노인 중에서도 후기 노인의 빈곤 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 준다. 특히 전기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대비 2021년에 13%p나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후기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9%p 감소하는 데 그쳤다. 더구나 후기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 감소는 코로나19 유행 기간인 2020년과 2021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후기 노인의 빈곤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인권통계의 분석: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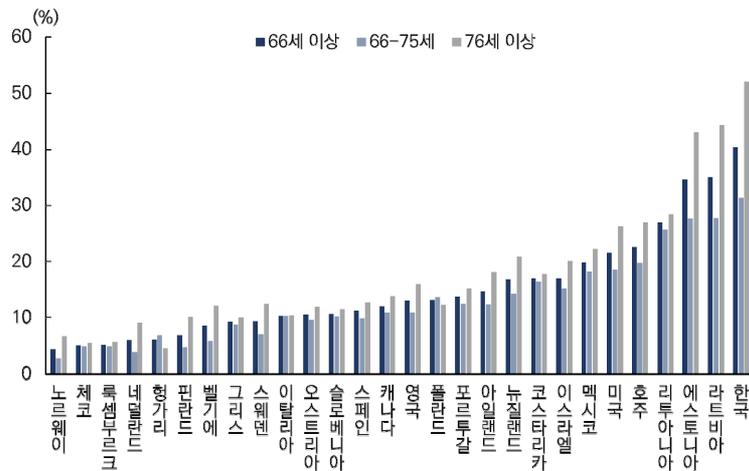
[그림 IV-2] 노인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 2011-2021



주: 1)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의 비율임.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 노인의 빈곤 수준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는 OECD 자료를 사용하여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림 IV-3] OECD 국가의 노인 상대적 빈곤율,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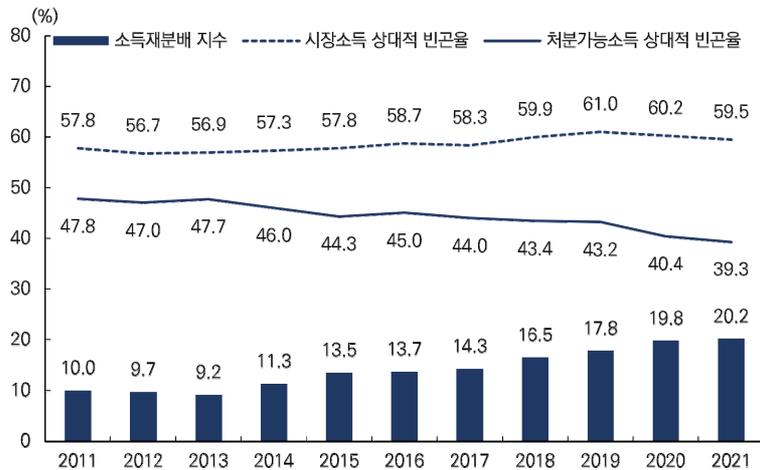


주: 1)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의 비율임.
 자료: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그림 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을 망라하여 OECD 비교 대상 28개 국가 중 압도적으로 가장 높다. 노인 빈곤율이 비교적 높은 미국(21.6%)과 호주(22.6%)보다도 두 배가량 높다. 노르웨이(4.4%), 체코(5.1%), 룩셈부르크(5.2%), 네덜란드(6.0%), 헝가리(6.1%), 핀란드(6.9%), 벨기에(8.6%), 그리스(9.3%), 스웨덴(9.4%) 등 유럽 국가들의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10%에도 미치지 않는다. 한국 노인이 빈곤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결과이다.

노인 빈곤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없거나 적은 노인의 경우 연금이나 수당 같은 공적 이전소득을 통해 소득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노인 빈곤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는 시장소득 상대적 빈곤율과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의 차이로 가늠해 볼 수 있다. 이 둘의 차이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반영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지수로 활용된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 노인의 시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60% 안팎 수준에서 등락하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반면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40% 아래로 떨어지며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둘의 차이, 즉 소득재분배 지수는 2011년 10.0에서 2021년 20.2로 높아졌다. 공적제도를 통해 노인의 실질소득이 늘어나면서 빈곤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4] 노인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재분배 지수, 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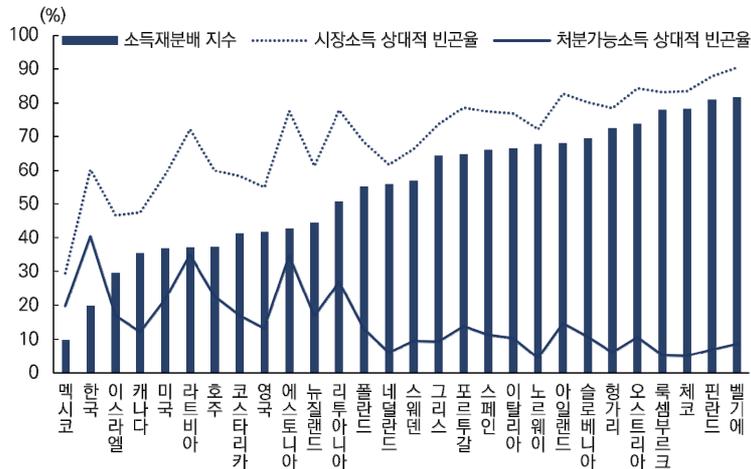
주: 1) 소득재분배 지수 = 시장소득 상대적 빈곤율 -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IV. 인권통계의 분석: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격차

한국 노인의 빈곤이 실질소득 증가로 인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살펴보자.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 노인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시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낮지만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이 높다. 그 결과 소득재분배 지수가 멕시코 다음으로 낮다. 이는 한국 노인의 빈곤은 후생제도로 인해 늘어나는 실질소득이 작아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음을 뜻한다. 벨기에, 핀란드, 룩셈부르크 등에서는 시장소득 상대적 빈곤율이 80%를 넘지만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노인의 실질소득을 대폭 늘림으로써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을 10% 이내로 낮추고 있다. 한국 노인의 빈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보다 두터운 노후복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IV-5] OECD 국가의 노인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재분배 지수,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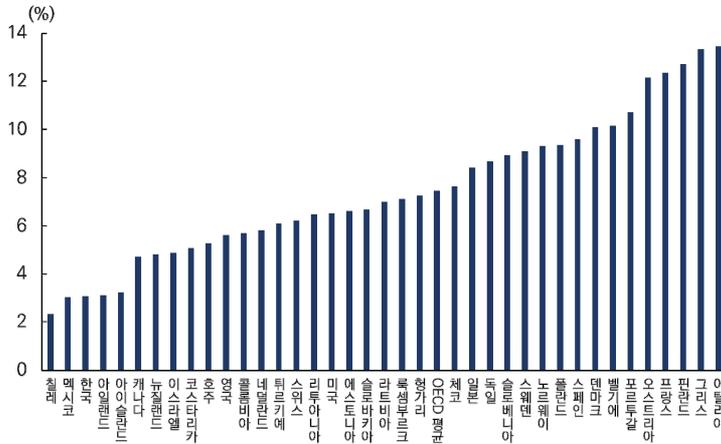


주: 1) 소득재분배 지수 = 시장소득 상대적 빈곤율 -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

자료: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한국 노인의 빈곤 개선이 부진한 데는 정부의 노인복지 지출이 낮은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이다. 한국과 OECD 국가의 노인복지 지출 규모를 비교해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노인공공복지 지출 비율은 3.1%에 그친다. 비교 대상 OECD 38개국 중 칠레(2.3%)와 멕시코(3.0%)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 한국의 노인공공복지 지출 비율은 OECD 국가 평균 7.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탈리아(13.4%), 그리스(13.3%), 핀란드(12.7%), 프랑스(12.4%), 오스트리아(12.1%) 등에서는 노인공공복지에 GDP의 10%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그림 IV-6] OECD 국가의 GDP 대비 노인공공복지 지출 비율,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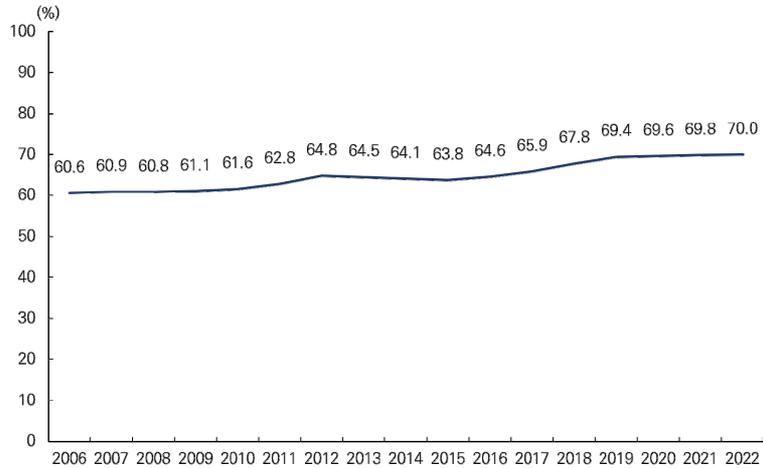
주: 1) GDP 대비 노인공공복지 지출 비율 = (노인공공복지 지출 ÷ GDP) × 100.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 Aggregated data.

3 노동자 간 일자리 격차

다음으로 노동자 사이의 일자리 격차에 대해 알아본다. 여기서는 일자리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인 임금, 노동복지, 산업안전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노동자 집단 간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임금은 일자리에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다. 임금 수준에 따라 노동자의 경제적 생활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임금 수준은 성, 고용형태, 기업규모 등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먼저, 남녀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 수준에 대해 살펴보자. 성별 임금 격차는 남성 노동자 임금 대비 여성 노동자 임금 비율로 알아볼 수 있다. 이는 남성 노동자의 임금을 100으로 하였을 때 여성 노동자 임금이 어느 수준인지를 나타낸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 산출한 남성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총액 대비 여성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022년 기준 70.0%에 그친다. 이는 2006년 60.6%에 비해 9.4%p 오른 것이다. 남녀 노동자의 임금에 30%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인권통계의 분석: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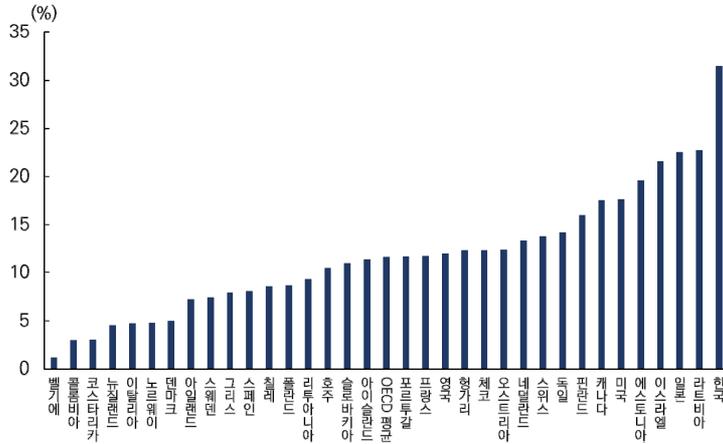
[그림 IV-7] 여성 노동자 상대적 임금, 2006-2022



주: 1) 여성 노동자 상대적 임금 = (여성 노동자 시간당 임금총액 ÷ 남성 노동자 시간당 임금총액) × 10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의 성별 임금 격차 수준은 매우 높다. OECD에서는 남성 노동자 중위임금 대비 남녀 노동자의 중위임금 차이로 성별 임금 격차를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라 계산한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20년 기준 31.5%로 비교 대상 OECD 34개 국가 중 가장 높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평균(11.6%)의 무려 세 배에 이를 정도이다. 벨기에(1.2%), 뉴질랜드(4.6%), 이탈리아(4.8%), 노르웨이(4.8%), 덴마크(5.0%) 등은 남녀 간 임금 격차가 5% 이내에 불과하다. 다른 국가들도 대부분 10% 안팎 수준에 그친다. 프랑스(11.8%), 영국(12.0%), 독일(14.2%), 캐나다(17.6%), 미국(17.7%) 등 주요국도 한국보다 크게 낮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라트비아(22.7%), 일본(22.5%), 이스라엘(21.6%) 등도 한국과는 10%p에 가까운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말해 주는 결과이다.

[그림 IV-8] OECD 국가의 성별 임금 격차,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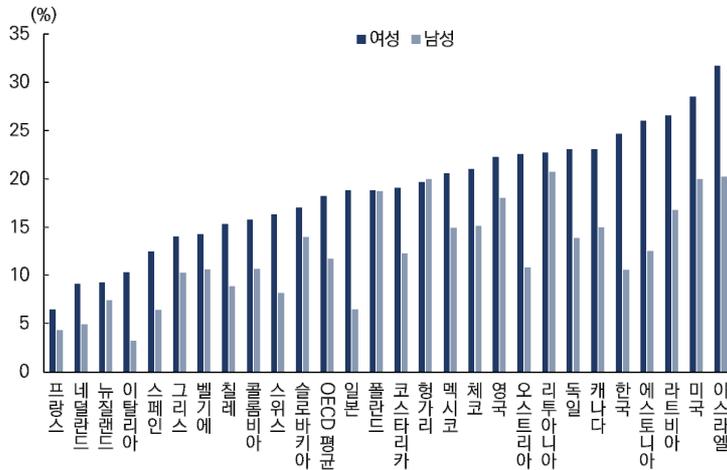


주: 1) 성별 임금 격차 = (남성 노동자 중위임금 - 여성 노동자 중위임금) ÷ 남성 노동자 중위임금 × 100.
 자료: OECD, 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여성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여성 노동자에 저임금 노동자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에서 각각 저임금 노동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비교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OECD 자료에서는 남성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여성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 비율을 제공한다. 여기서 저임금 노동자는 전일제 노동자 중위임금의 2/3 미만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정의된다. OECD 자료로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자. 아래 [그림 4-9]를 보면 한국은 남성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높지 않고 여성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은 나라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여성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4.7%로 비교 대상 OECD 27개 국가 중 이스라엘(31.7%), 미국(28.5%), 라트비아(26.6), 에스토니아(26.1%)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다. 한국은 OECD 국가 평균 18.2%를 크게 상회한다. 반면 한국의 남성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10.5%로 OECD 국가 평균인 11.7%보다 낮다. 그 결과 한국은 저임금 노동자 비율의 남녀 간 차이가 14.1%p로 27개 국가 중 가장 크다. OECD 국가 평균(6.5%p)의 두 배 이상에 이른다. 프랑스(6.5%), 네덜란드(9.1%), 뉴질랜드(9.3%) 등은 여성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10% 이내로 낮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의 남녀 간 차이도 크지 않다. 한국은 이들 나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IV. 인권통계의 분석: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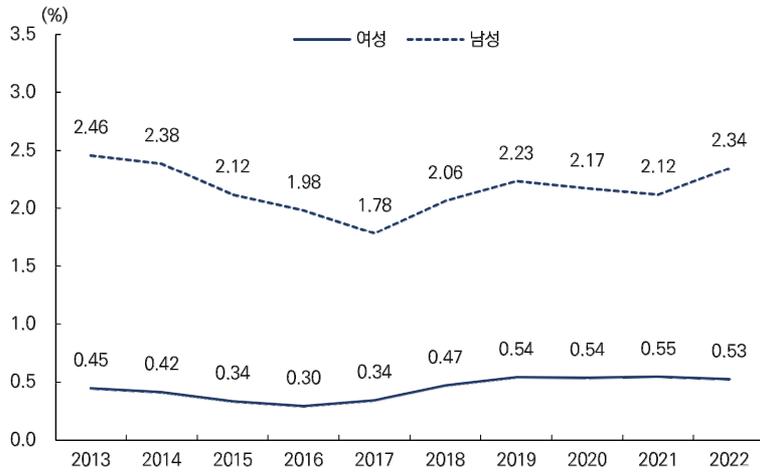
[그림 IV-9] OECD 국가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 2020



주: 1)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전일제 노동자 중 위임금의 2/3 미만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임.
 자료: OECD, 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여성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 수준이 낮고 이에 따라 남녀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커진 데는 승진 장벽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높은 임금을 받는 관리직에 여성의 비율이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체 취업자 중 관리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남녀 간에 비교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집계한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관리직 취업자 수를 성별로 나누어 계산하면 관리직 취업자 비율의 성별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비율을 보면, 2022년 기준 남성 관리직 비율은 2.34%이지만 여성 관리직 비율은 0.53%에 불과하다. 관리직 비율의 남녀 간 차이가 네 배 이상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리직 비율의 남녀 간 차이는 지난 10년간 뚜렷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림 IV-10] 관리직 취업자 비율, 2013-2022



주: 1) 관리직 취업자 비율 = (관리직 취업자 수 ÷ 전체 취업자 수) × 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는 고용형태,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라서도 크게 나타난다.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총액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이를 잘 보여 준다. 정규직 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2007년 56.5%에서 2022년 70.6%로 꾸준히 상승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이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여전히 30%p가량 낮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한시직 노동자(51.8%), 파견/용역 노동자(55.5%), 재택/가내 노동자(56.4%), 단시간 노동자(63.6%)의 상대적 임금은 더 낮다.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에서도 임금 격차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IV. 인권통계의 분석: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격차

〈표 IV-4〉 비정규직 노동자 상대적 임금, 2007-20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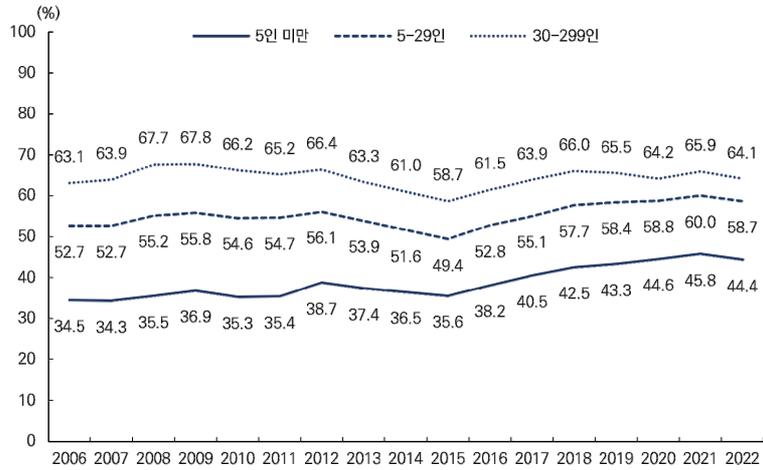
연도	비정규직 전체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재택/가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일일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기간제 노동자	한시적 노동자
2007	56.5	45.1	46.9	59.7	47.1	64.4	58.0
2008	55.5	42.0	46.9	58.8	46.4	64.6	55.8
2009	56.3	40.5	47.9	59.6	46.8	64.5	53.2
2010	57.2	40.0	48.4	59.8	49.0	68.7	50.9
2011	61.3	43.6	51.9	66.1	53.9	69.4	51.8
2012	63.6	47.4	51.2	73.4	58.0	67.5	60.7
2013	64.2	53.7	52.7	72.8	61.6	68.6	52.5
2014	62.2	53.8	49.7	68.3	63.0	64.4	53.8
2015	65.5	59.6	51.8	75.3	65.9	66.2	49.4
2016	66.3	57.7	52.2	81.8	61.9	66.0	49.2
2017	69.3	58.4	56.9	83.9	65.0	68.4	49.0
2018	68.3	59.9	56.7	81.0	63.2	69.2	47.4
2019	69.7	64.4	57.7	82.4	65.0	69.8	51.3
2020	72.4	66.3	59.5	89.2	65.6	71.0	55.8
2021	72.9	61.0	58.5	90.8	67.0	71.0	56.8
2022	70.6	56.4	55.5	87.7	63.6	71.8	51.8

주: 1) 비정규직 노동자 상대적 임금 = (비정규직 노동자 시간당 임금총액 ÷ 정규직 노동자 시간당 임금총액) × 10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는 기업규모별로도 크게 나타난다. 300인 이상 기업의 시간당 임금총액 대비 300인 미만 기업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살펴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300인 이상 기업 대비 30-299인 기업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2022년 기준 64.1%에 그친다. 같은 해 5-29인 기업과 5인 미만 기업의 상대적 임금은 각각 58.7%와 44.4%로 더 낮다.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상대적 임금 수준이 낮다. 30인 미만 기업의 상대적 임금은 지난 2006년 대비 2022년에 다소 높아졌지만 같은 기간 30-299인 기업의 상대적 임금은 거의 향상되지 않았다. 기업규모에 따라 임금 격차가 심하고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11] 기업규모별 상대적 임금, 2006-2022



주: 1) 기업규모별 상대적 임금 = (기업규모별 시간당 임금총액 ÷ 300인 이상 기업 시간당 임금총액) × 10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사회보험이나 연금, 노조가입은 노동자가 누려야 할 권리이다. 이 같은 노동권리가 노동자 사이에서 얼마나 차별적으로 누려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고용형태별로 노동권리 수혜율의 격차를 살펴본다. 2022년 기준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94.6%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80.7%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에서는 더 큰 차이가 난다. 정규직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에서 100%에 근접하지만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70% 수준에 그친다. 산재보험 가입률에서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이가 없다. 노조가입률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13.5%와 0.7%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비정규직 사이에서도 가장 취약한 집단은 일일 노동자와 한시적 노동자이다. 이들 두 집단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다른 비정규직 집단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 기업규모에 따라서도 노동권리 수혜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300인 이상, 30-299인, 5-29인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90% 이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은 각각 73.7%, 80.5%, 81.0%로 비교적 낮다. 노조가입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 31.4%, 30-299인 사업장 15.0%, 5-29인 사업장 4.2%, 5인 미만 사업장 1.1%이다. 기업규모가 작아질수록 노조가입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V. 인권통계의 분석: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격차

〈표 IV-5〉 고용형태 및 기업규모별 노동권리 수혜율,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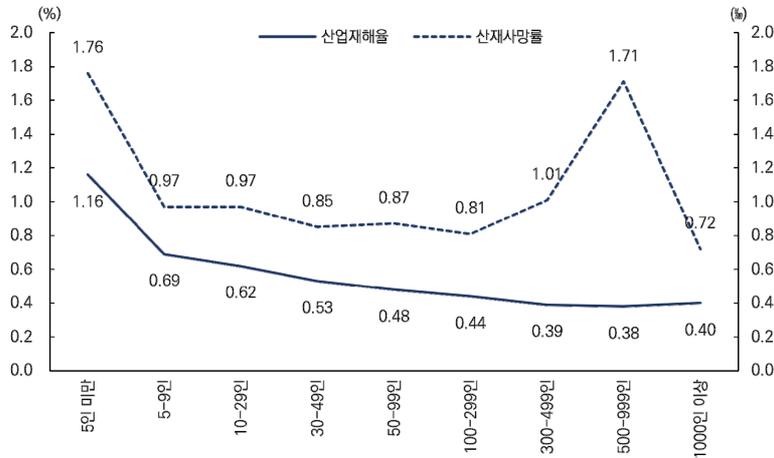
(단위: %)

구분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노조가입
고용형태별	정규직 노동자	94.6	98.6	98.5	98.1	13.5
	비정규직 노동자	80.7	70.3	67.5	98.4	0.7
	채택/가내 노동자	81.7	83.1	87.4	100.0	1.1
	파견/용역 노동자	94.8	95.3	93.7	98.6	1.7
	일일 노동자	64.3	24.9	24.5	98.5	0.3
	단시간 노동자	84.4	83.5	81.4	97.6	0.2
	기간제 노동자	91.5	95.7	91.8	99.2	1.6
	한시직 노동자	51.2	44.3	41.5	93.3	0.1
기업규모별	5인 미만	73.7	80.5	81.0	91.6	1.1
	5-29인	95.3	92.6	93.0	99.7	4.2
	30-299인	98.2	97.5	97.6	99.9	15.0
	300인 이상	95.8	99.7	98.8	99.8	31.4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이번에는 일자리의 안전에서 노동자 집단 간 격차가 얼마나 큰지 알아보자.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은 일자리 안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과 사망은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므로 일자리의 질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두 지표를 사용하여 일자리 안전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생한다. 아래 [그림 4-12]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재해율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두드러지게 높고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점차 낮아진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은 2021년 기준 1.16%로 같은 해 1000인 이상 사업장의 0.40%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높다. 산재사망률은 산업재해율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산재사망률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뿐만 아니라 500-999인 사업장에서도 높다. 이 두 사업장에서는 2021년에 노동자 1만 명당 1.76명과 1.71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였다. 이는 다른 사업장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기업규모가 크다고 해서 산재사망률이 반드시 낮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그림 IV-12] 기업규모별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 2021



주: 1) 산업재해율 = (산업재해자 수 ÷ 노동자 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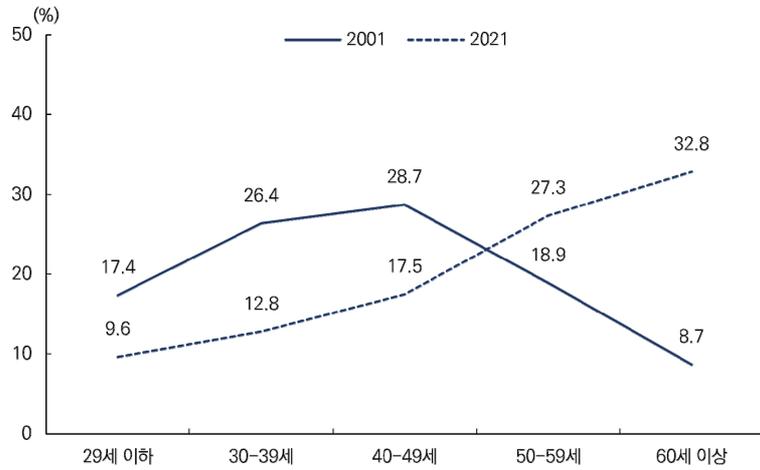
주: 2) 산재사망률 = (산재사망자 수 ÷ 노동자 수) × 10,000.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그렇다면 산업재해 피해자는 주로 누구일까? 여기서는 자료 활용이 가능한 연령과 근속년수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피해자의 특성을 알아본다. 먼저 산업재해 피해자의 연령집단별 특성을 살펴보자. 아래 [그림 4-13]과 [그림 4-14]는 산업재해자와 산재사망자의 연령집단별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 4-13]에서 보듯이 2001년에는 전체 재해자에서 30대와 40대의 비중이 높고 50대와 60세 이상의 비중은 낮았다. 하지만 2021년에는 50대와 60세 이상 재해자가 30대와 40대 재해자보다 더 많아졌다. 특히 2001년에 8.7%에 불과하였던 60세 이상 재해자가 2021년에는 32.8%로 급증하였다. 산재사망자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림 4-14]에서 보는 것처럼 과거에 비해 30대와 40대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고 60세 이상 사망자가 급증한 것이다. 60세 이상 사망자의 비중은 2001년 16.0%에서 2021년 45.3%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났다. 50대 사망자의 비중도 같은 기간 25.5%에서 29.5%로 다소간 늘었다. 지난 20년간 산업재해의 주된 피해자가 청장년층에서 중고령층으로 바뀌면서 피해자 연령이 한층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에 들어 가속화되어 온 노동 인구의 고령화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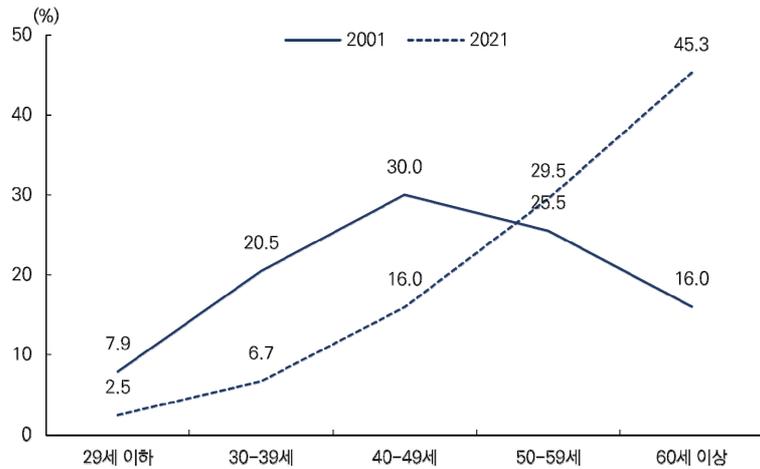
IV. 인권통계의 분석: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격차

[그림 IV-13] 산업재해자 연령집단별 비율, 2001, 2021



주: 1) 산업재해자 연령집단별 비율 = (연령집단별 산업재해자 수 ÷ 전체 산업재해자 수) × 100.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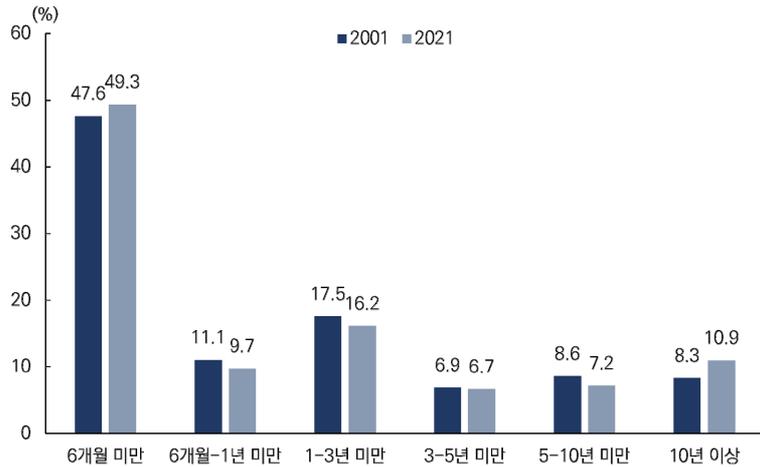
[그림 IV-14] 산재사망자 연령집단별 비율, 2001, 2021



주: 1) 산재사망자 연령집단별 비율 = (연령집단별 산재사망자 수 ÷ 전체 산재사망자 수) × 100.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다음으로 산업재해 피해자의 근속년수별 특성을 살펴보자. 아래 [그림 4-15]는 산업재해자의 근속년수별 분포를 보여 준다. 이 그림을 보면, 전체 재해자 중 6개월 미만 근속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재해자의 절반가량이 6개월 미만 근속자이다. 이러한 양상은 지난 20년간 거의 바뀌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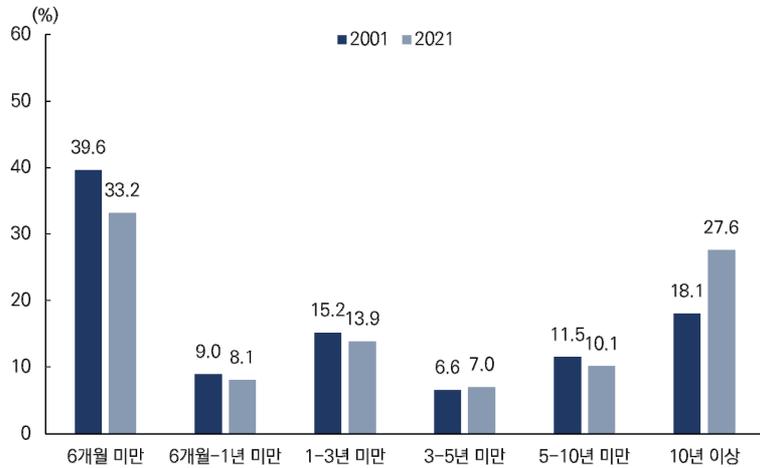
[그림 IV-15] 산업재해자 근속년수별 비율, 2001, 2021



주: 1) 산업재해자 근속년수별 비율 = (근속년수별 산업재해자 수 ÷ 전체 산업재해자 수) × 100.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산재사망자의 근속년수별 분포는 조금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아래 [그림 4-16]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사망자 중 6개월 미만 근속자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그 비중이 40%를 넘지 않는다. 6개월 미만 근속자의 비중이 재해자 분포에서보다는 다소 낮다. 사망자 분포에서는 10년 이상 근속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사망자 분포에서는 지난 20년간 약간의 변화도 관찰된다. 6개월 미만 근속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10년 이상 근속자의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그림 IV-16] 산재사망자 근속년수별 비율, 2001,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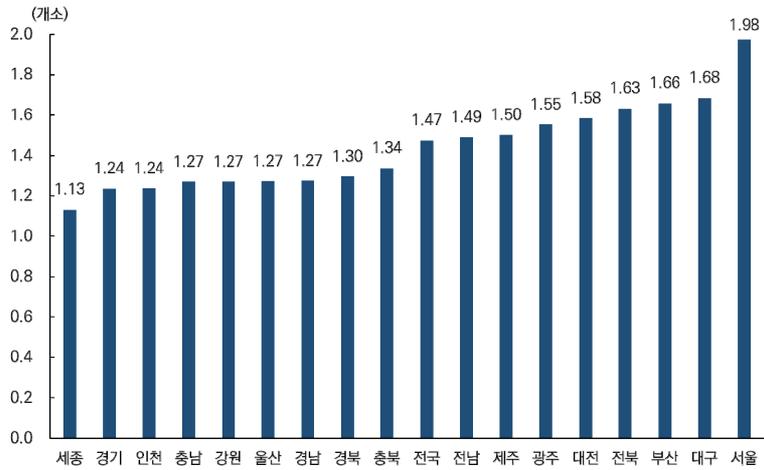


주: 1) 산재사망자 근속년수별 비율 = (근속년수별 산재사망자 수 ÷ 전체 산재사망자 수) × 100.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4 의료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

의료 이용에 대한 접근성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의료 자원이 많이 투자되어 보다 편리하고 좋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국민의 건강권이 향상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료 자원이 지역적으로 불균형하게 배분되어 있다면 지역마다 차별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지역 의료 접근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일반 의료와 정신건강 의료 두 영역에서 의료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를 17개 광역 시도 단위에서 살펴본다. 먼저 일반 의료 접근성을 시도 간에 비교해 보자. 의료기관 수와 의사 수는 의료 자원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인구 1000명당으로 계산한 의료기관 수와 의사 수는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서울은 인구 대비 의료기관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다.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에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등 광역시가 주로 포함된다. 인구 대비 의사 수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서울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다. 다른 지역은 많아야 4명을 넘지 않는데 서울에서만 5명에 근접한다. 다른 지역보다 적게는 1명, 많게는 3명 가까이 많다.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은 광주, 대구, 대전, 부산 등 모두 광역시뿐이다.

[그림 IV-17]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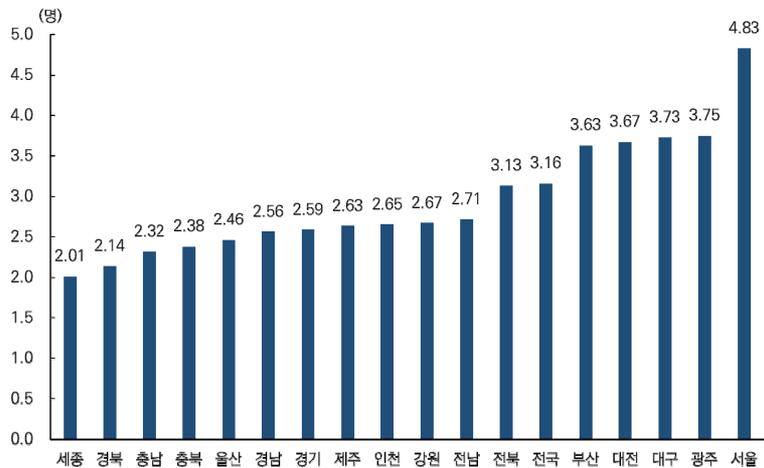


주: 1)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 = (의료기관 수 ÷ 추계인구) × 1,000.

주: 2) 의료기관에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조산원,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포함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그림 IV-18]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022



주: 1)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 (의사 수 ÷ 추계인구) ×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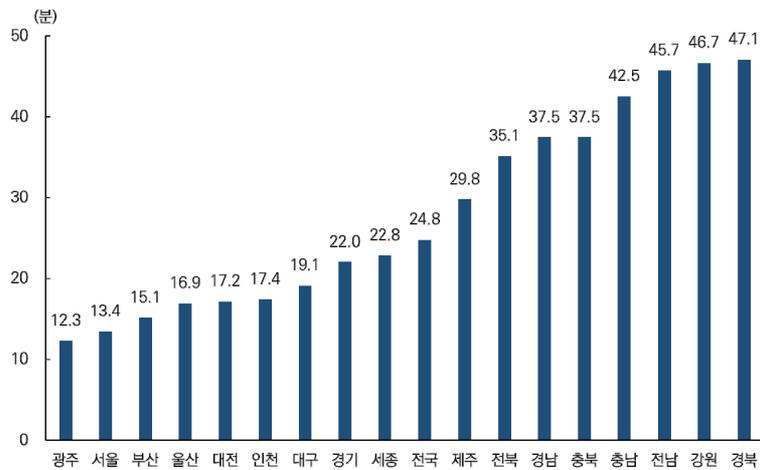
주: 2) 의사에는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포함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IV. 인권통계의 분석: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격차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의료 접근성을 나타내기에 적합하다. 일 평균 종합병원 접근가능 시간은 광주가 12.3분으로 가장 짧다. 광주는 인구 대비 종합병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광주 다음으로 종합병원 접근 시간이 짧은 지역은 서울, 부산, 울산, 대전, 인천, 대구 등 대부분 광역시다. 경북, 강원, 전남, 충남 등 농촌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종합병원 접근 시간이 40분을 넘는다. 이들 지역에서 종합병원을 이용하려면 대도시 지역의 2-3배가량 시간이 소요된다. 전국 평균 종합병원 접근가능 시간은 약 25분 정도이다.

[그림 IV-19] 시도별 종합병원 접근가능 시간,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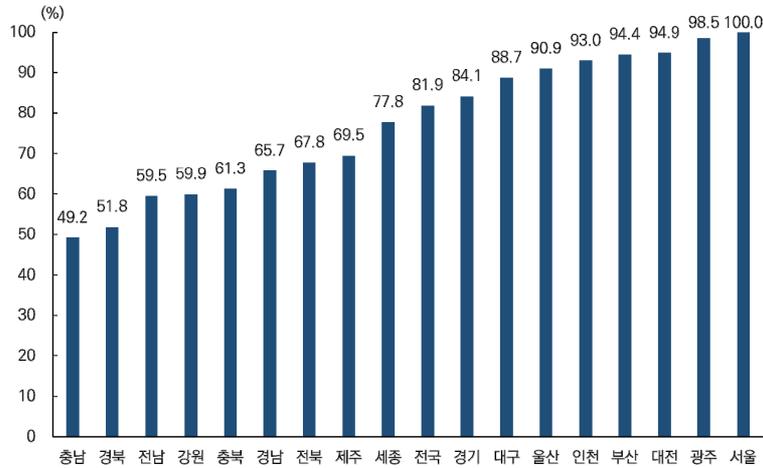


주: 1) 대중교통 기준 일평균(6-20시) 접근가능 시간임.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접근성지표」.

전국 평균 시간인 30분을 기준으로 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시도별로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 보자. 30분 이내 종합병원 접근가능인구 비율은 서울이 가장 높다. 서울 인구 전체가 30분 이내에 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광주는 98.5%로 서울 다음으로 높다. 대전, 부산, 인천, 울산, 대구 등도 90% 안팎의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충남, 경북, 전남, 강원 등은 60%에도 미달한다. 바꾸어 말하면 이들 지역에서는 40%의 인구가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데 30분 이상을 소요해야 한다. 대도시 지역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종합병원 접근가능 시간과 30분 이내 종합병원 접근가능 인구 비율은 지역 간에 비슷한 격차 양상을 나타낸다. 즉 종합병원 접근성은 서울, 광주, 부산, 울산, 대전 등에서 높고 경북, 강원, 전남, 충남 등에서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20] 시도별 30분 이내 종합병원 접근가능인구 비율,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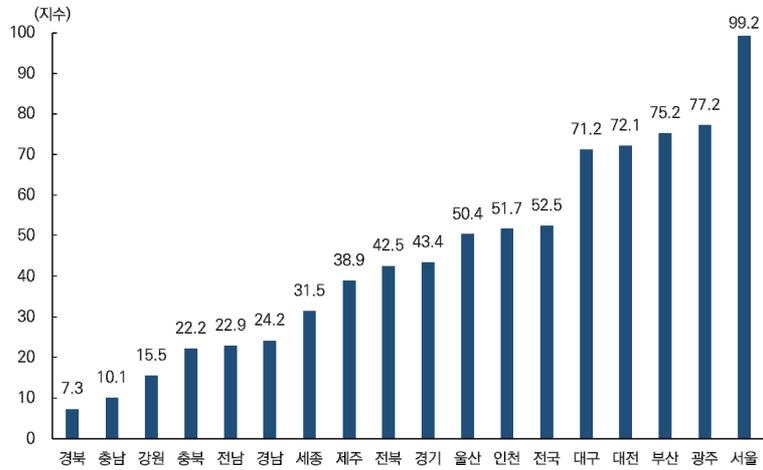


주: 1) 대중교통 기준 일평균(6-20시) 30분 이내 접근가능인구 비율임.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접근성지표」.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 지표, 즉 인구 대비 의료기관 수와 의사 수, 종합병원 접근가능 시간, 30분 이내 종합병원 접근가능인구 비율은 국민의 의료이용 수준을 다양한 차원에서 보여 준다. 그런데 이를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 네 가지 지표를 모두 고려한 일반 의료 접근성 종합 지수를 작성할 수 있다. 이 지수는 각 지표의 최하위 지역과 최상위 지역의 지점값을 각각 0과 100으로 환산하여 100점 만점의 지수를 산출한 뒤 네 가지 지수를 산술평균한 값이다. 이렇게 산출한 종합 지수로 시도별 의료 접근성을 비교해 보자. 종합적인 의료 접근성은 서울이 99.2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이어 광주, 부산, 대전, 대구가 70 점대로 서울 다음으로 높다. 경북, 충남, 강원, 충북, 전남, 경남 등의 종합 의료 접근성은 30점에도 못 미친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과 농촌인구가 많은 도 지역 간의 의료 접근성 격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다.

Ⅳ. 인권통계의 분석: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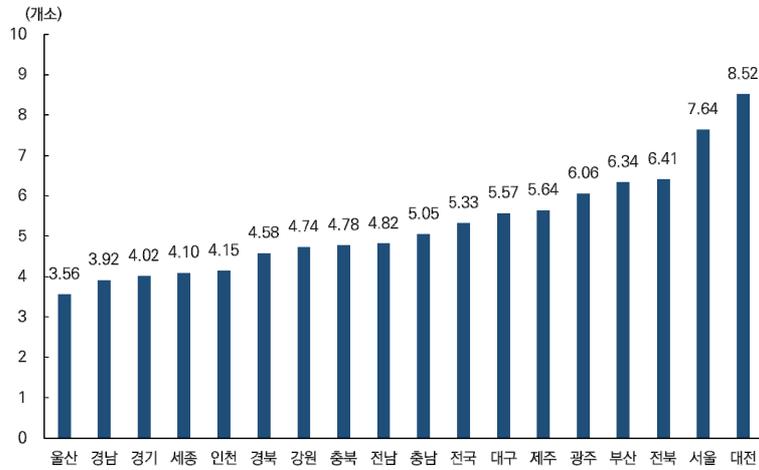
[그림 IV-21] 시도별 의료 서비스 접근성 지수



주: 1) 의료기관 수, 의사 수, 종합병원 접근가능 시간, 종합병원 접근가능 인구 비율의 종합 지수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접근성지표」.

최근 우리 사회가 다변화하면서 우울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신건강 서비스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번에는 정신건강 의료 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어떻게 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인구 대비 정신건강 기관 수를 시도별로 비교해 보자.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기관 수는 대전이 8.52개소로 가장 높다. 서울이 7.64개소로 대전 다음으로 높다. 전북, 부산, 광주도 6개소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전국 평균(5.33개소)을 크게 하회하는 지역은 울산, 경남, 경기, 세종, 인천으로 4개소 안팎 수준에 그친다. 정신건강 전문인력이 얼마나 많은지도 지역별로 비교해 보자.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전문인력 수는 광주가 27.2명으로 가장 많다. 광주 다음으로 높은 전북, 서울, 전남, 부산, 충남, 대전이 20명대에 이른다. 반면 세종, 울산, 충북, 인천은 15명 이하 수준에 그친다. 정신건강 기관과 전문인력 규모를 볼 때 정신건강 의료 자원이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에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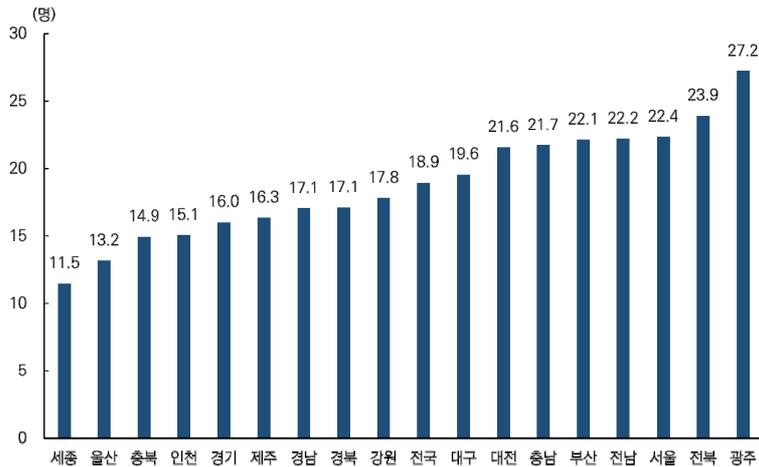
[그림 IV-22]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기관 수, 2021



주: 1)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기관 수 = (정신건강 기관 수 ÷ 추계인구) × 100,000.

자료: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정신건강현황」.

[그림 IV-23]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전문인력 수,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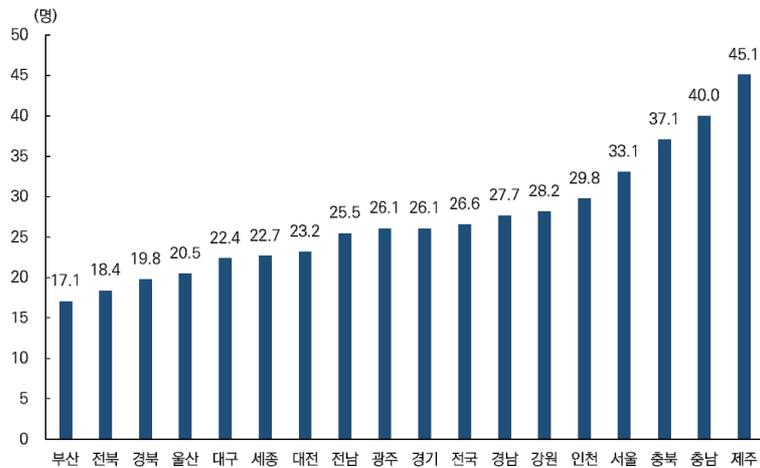
주: 1)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전문인력 수 = (정신건강 전문인력 수 ÷ 추계인구) × 100,000.

자료: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정신건강현황」.

IV. 인권통계의 분석: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격차

앞서 정신건강 의료 자원 수준을 살펴보았다면, 여기서는 정신질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살펴보자. 사례관리자 1인이 담당하는 정신질환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환자가 받을 서비스의 수혜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사례관리자가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다면 정신질환 서비스가 좋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사례관리자 1인당 정신질환자 수는 부산이 17.1명으로 가장 낮다. 전북과 경북이 부산 다음으로 낮는데 20명 미만 수준이다. 정신건강 의료 자원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했던 서울이 사례관리자 1인당 정신질환자 수에서 뒤처진 결과를 보인 것은 특이한 점이다. 부산은 정신건강 자원과 서비스의 질 양면에서 모두 우수한 결과를 보인 유일한 지역이다.

[그림 IV-24] 시도별 사례관리자 1인당 정신질환자 수,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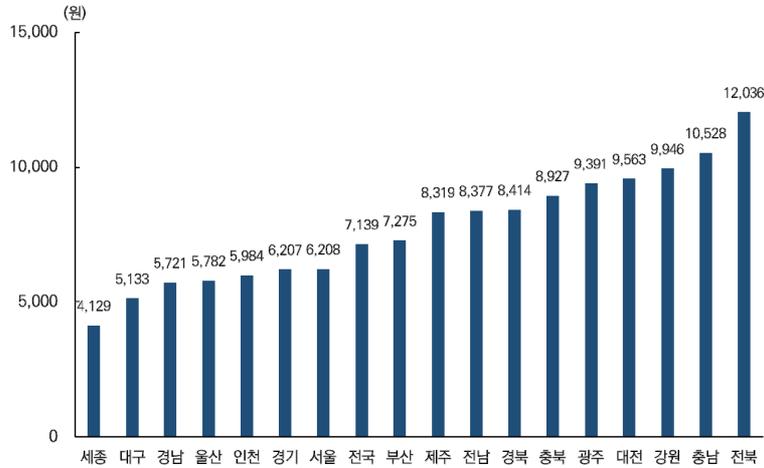


주: 1) 사례관리자 1인당 정신질환자 수 = 등록 정신질환자 수 ÷ 사례관리자 수.

자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정신건강현황」.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도 중요한 변수이다. 총예산을 인구로 나눈 1인당 예산액은 지역사회의 정신보건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1인당 정신보건 예산액은 전북이 12,000원가량으로 가장 높다. 반면 세종, 대구, 경남, 울산, 인천의 1인당 정신보건 예산은 전북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지역 간에 두 배 차이가 난다. 서울은 사례관리자 1인당 정신질환자 수에 이어 인구 대비 정신보건 예산에서도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결과를 보인다.

[그림 IV-25] 시도별 1인당 정신보건 예산액,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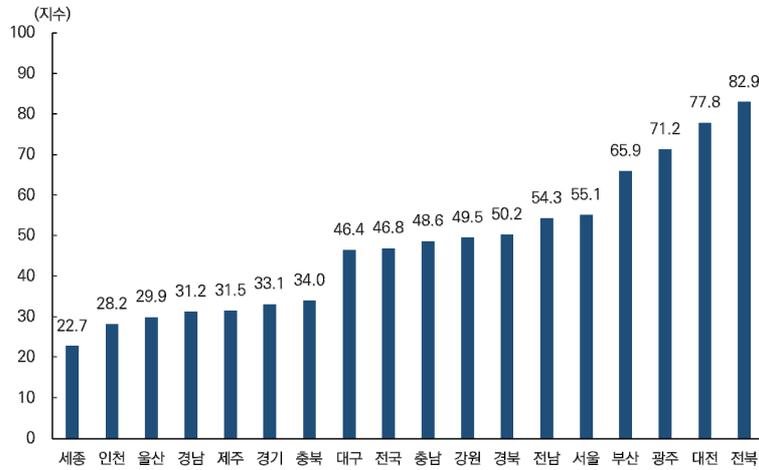


주: 1) 1인당 정신보건 예산액 = 정신보건 총예산 ÷ 추계인구.

자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정신건강현황」.

의료 서비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신보건 서비스에서도 종합 지수를 산출해 볼 수 있다. 네 가지 지표, 즉 인구 대비 정신건강 기관 수와 전문인력 수, 사례관리자 1인당 정신질환자 수, 1인당 정신보건 예산액을 활용하여, 앞서 살펴본 의료 서비스 종합 지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신보건 서비스 종합 지수를 산출하였다. 이 지수로 지역별 정신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비교해 보자. 정신보건 서비스 종합 지수는 전북이 82.9점으로 가장 높다. 전북은 인구 대비 정신건강 기관 수와 전문인력 수, 사례관리자 1인당 정신질환자 수, 1인당 정신보건 예산액 모두에서 고르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북 다음으로는 대전, 광주, 부산이 높게 나타났다. 세종, 인천, 울산, 경남, 제주, 경기, 충북 등은 전국 평균(46.8점)을 크게 하회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서울을 비롯한 광주, 부산, 대전, 대구 등 광역시 지역에서 높고 경북, 충남, 강원, 충북, 전남, 경남 등 광역도 지역에서 낮았다. 정신보건 서비스 접근성은 이와 조금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전북 지역의 정신보건 서비스 역량이 가장 높고 전남, 경북, 강원, 충남 등도 전국 평균 이상 수준이다. 정신보건 서비스에서는 광역시 지역과 광역도 지역 사이의 격차가 일반 의료 서비스만큼 크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IV-26] 시도별 정신보건 서비스 접근성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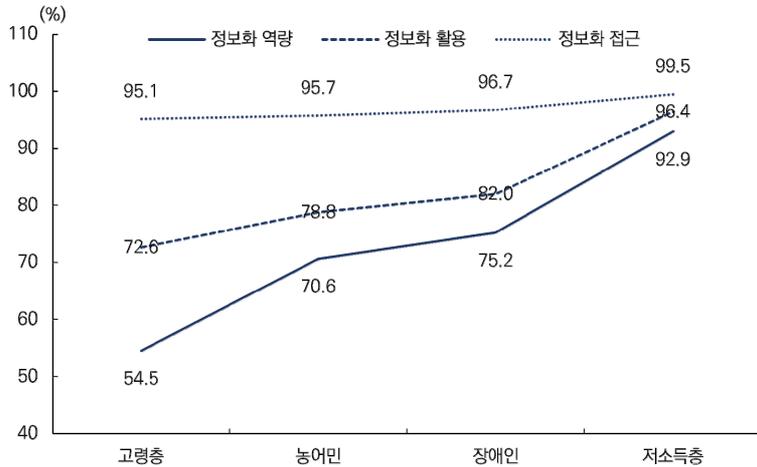
주: 1) 정신건강 기관 수, 정신건강 전문인력 수, 사례관리자 1인당 정신질환자 수, 1인당 정신보건 예산액의 종합 지수임.

자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정신건강현황」.

5 디지털 정보화의 세대 간 격차

최근 디지털 기반의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과 정보 활용 측면에서도 국민들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령 인구의 정보화 역량이 개발되지 못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실시하는 「디지털 정보격차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취약집단 인구의 정보화 역량이 일반 인구에 비해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 조사에서는 일반 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정보화 접근, 정보화 역량, 정보화 활용의 세 가지 측면에서 측정한다. 즉 고령층,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을 포함하는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이 일반 국민에 비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 준다. 이 자료로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 격차를 살펴보자. 아래 [그림 4-2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저소득층을 제외한 고령층, 농어민,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보다 낮다. 이들 세 집단의 정보화 격차는 정보화 역량과 정보화 활용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두 가지에서 고령층의 정보화 수준은 54.5%와 72.6%, 농어민의 정보화 수준은 70.6%와 78.8%, 장애인이 정보화 수준은 75.2%와 82.0%에 그친다. 이들 세 인구집단 가운데서 특히 고령층이 정보화에 더 취약함을 알 수 있다.

[그림 IV-27] 취약계층 정보화 수준, 2022



주: 1) 일반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한 취약계층의 상대적 수준임.

주: 2) 고령층은 만 55세 이상 인구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취약계층의 인구학적 특성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취약계층 내에서도 더 뒤처지는 집단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4-6>을 보면, 취약계층 내에서 여성의 정보화 수준이 일관되게 낮다. 이는 고령층,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을 가리지 않는다. 여성이 남성보다 정보화에 취약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더 큰 격차는 연령집단 사이에 있다. 정보화 격차가 50대에 발생하기 시작해서 60대를 넘어서면 급격하게 커진다. 고령층,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보화 격차가 곧 세대 간 격차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IV. 인권통계의 분석: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격차

〈표 IV-6〉 취약계층 성 및 연령별 정보화 수준, 2022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고령층	접근	97.3	93.7	-	-	-	101.6	98.0	88.0
	역량	64.3	47.8	-	-	-	83.8	56.7	34.6
	활용	75.5	72.2	-	-	-	94.0	79.0	53.5
농어민	접근	97.2	94.7	108.0	106.1	106.0	101.8	92.9	-
	역량	75.7	66.5	152.2	139.2	127.3	91.1	57.0	-
	활용	82.5	76.5	128.4	121.6	112.1	95.6	69.9	-
장애인	접근	97.4	95.6	103.0	100.2	100.2	99.0	93.7	-
	역량	82.4	61.2	121.6	115.8	105.3	78.5	57.3	-
	활용	85.3	77.0	110.5	106.3	103.3	87.3	69.0	-
저소득층	접근	99.7	99.2	105.3	101.9	102.4	97.5	93.9	-
	역량	96.9	89.1	134.8	114.6	103.1	79.8	60.1	-
	활용	98.5	94.5	132.0	120.4	106.7	88.0	70.1	-

주: 1) 일반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한 취약계층의 상대적 수준임.

주: 2) 고령층은 만 55세 이상 인구임.

주: 3)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의 60대는 60세 이상을 의미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참고문헌

- 강경화, 구미영, 김정애, 김형숙, 남우근, 황지원, 빈순아 (2022)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간호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20) 『감염병 시기의 인권: 온라인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22)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 김민정. (2020).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의 혐오표현 규제. 방송문화연구, 32(1), 7-54.
- 김성연, 윤진철, 임소연, 전근배, 정다운, 조아라, 최한별(2020)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인권 피해사례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김성이·김정옥·서상희·최홍조·이희영·한진옥·서수인·이예지. 2020. 『인권 기반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사례연구』. 성남: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 김수아, 김민정, 이동후, & 홍성일. (2020).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쟁점과 대안: 규제기관담당자, 시민단체 활동가, 연구자 및 피해 경험자 심층 면접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01, 203-230.
- 김수아. (2015).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페미니즘 연구, 15(2), 279-317, 10.21287/iif.2015.10.15.2.279
- 김용훈. 2019.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조항의 헌법적 의의: 미국에서의 관련 논의를 참고하여.” 『동아법학』 84: 1-36.
- 김종우. 2019. “사회적 표상으로서의 인권: 차별금지법 보도에 드러난 인권 담론을 중심으로.” 『인권연구』 2(1): 1-33.
- 김학준 (2017). 웃음과 폭력: 혐오 없는 웃음은 가능한가.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편), <그런 남자는 없다: 혐오사회에서 한국 남성성 질문하기> (282-300쪽). 서울: 오월의 봄
- 김현준. 2016. “환경재난과 인권의 법적 문제.” 『토지공법연구』 73(2): 313-335.
- 노진철. 2014. “불확실성 시대의 위험들과 정치에 대한 요구 증대.” 『사회와이론』 7-39.
- 리얼미터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단 편 . (2019). 혐오표현에 대한 청소년 인식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https://library.humanrights.go.kr/search/detail/CATTOT000000048314>
- 박미숙·추지현 2017.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총서 17-AA-03).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승호. (2019). 혐오표현의 개념과 규제방법. 법학논총, 31(3), 45-88.
- 박희제. 2014. “위험사회에서 세계시민주의로: 울리히 벡의 (기술)위험 거버넌스 전망과 한

- 국의 사회학.” 『사회사상과 문화』 30: 83-120.
- 백, 올리히. 1997. 『위협사회: 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 홍성태 역. 새물결.
- 서재호, 이정훈, 2018. 지방자치단체 인권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32(4): 165-192.
- 성옥준. (2014). 스마트시대의 정보리터러시와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5(2), 53-75.
- 시민건강연구소. 2020. 『인권중심 코로나19 시민백서』 서울: 시민건강연구소.
- 어유경, 이윤경, 남궁은하, 서재희, 이선희 (2021) 『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연지영, & 이훈. (2020). 혐오가 유머를 만날 때: 타인 혐오를 증폭시키는 유머와 한국 사회의 젠더갈등에 대한 함의. 한국정치학회보, 54(4), 219-250.
- 유희진. 2014. “재난 시 인간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 UN 국제법위원회의 작업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10(1): 1-27.
- 윤성욱 (2019). 혐오표현 규제와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 5권 1호. 57-94.
- 이설희, 김수아, 홍남희. (2020). 온라인 성차별적 혐오표현의 특징과 내용 규제 쟁점. 미디어, 젠더 & 문화, 35(3), 61-103, 10.38196/mgc.2020.09.35.3.61
- 이승현,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헌법적 이해”, 『공법연구』 44(4), 2016.
- 이정은. (2018). 한국사회 인권의 제도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주주의와 인권, 18(2), 221-252.
- 이종임, 박진우, & 이선민. (2021). 청년 세대의 분노와 혐오 표현의 탄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의 ‘혐오-언어’ 표현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2(2), 5-37.
- 이충은. (2019). 충청남도 인권기본 조례에 관한 연구-시행 1주년 평가와 향후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58, 343-370.
- 이한태·전우석. 2015. “한국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16(4): 121-145.
- 인권정책연구소, 2019.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현황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정책연구소, 2022.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 및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전학선. 2016. “인간안보를 통한 인권보장 강화.” 『서울법학』 24(1): 67-106.
- 정다영. (2018). 혐오표현과 민주주의. 법학논총, 31(2), 123-164.
- 정영선. (2020). 지방정부 인권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고찰. 동북아법연구, 13(3), 547-575.

- 조금주(2016). 학생인권조례 분석 및 학생인권 조사 개발 방향. *청소년학연구*, 23(2), 299-320.
- 최종선 (2018). 국내외 혐오표현 규제 법제 및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5권 3호, 33-57.
- 최혜지, 원영희, 남기철, 이해연 (2021)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인권보장 실태』. 국가인권위원회.
-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2020.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 한국인사이트연구소 (2020) 『코로나19와 혐오의 팬데믹』. 국가인권위원회.
- 홍관표. (2021). 차별금지법 제정 방안에 관한 검토. *이화젠더법학*, 13(2), 1-53.
- 홍성수, 2012.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대한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12(3): 305- 336.
-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https://library.humanrights.go.kr/search/detail/CATTOT000000040129>
-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 홍성수. "일반논단: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법과 사회* 50 (2015): 287-336.
- 홍성수. (2019). 혐오 (hate) 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혐오에 관한 법과 정책. *법학연구*, 30(2), 191-228.
- 홍주현, & 나은경. (2016). 온라인 혐오표현의 확산 네트워크 분석: 이슈 속성별 확산 패턴 및 혐오표현의 유형과 강도. *한국언론학보*, 60(5), 145-175.
- 황옥경, 김형모, 이영애, 정선영, 노은선, 이서현, 조영실 (2021)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보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AMNESTY International (2020) *RESPONSES TO COVID-19 AND*
-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2022) *'Mental health shapes my life': COVID-19 & kids' wellbeing*.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 Bassina Farbenblum & Laurie Berg (2020) "We might not be citizens but we are still people": Australia's disregard for the human rights of international students during COVID-19, *Australian Journal of Human Rights*, 26:3, 486-506,
- Clay, K. C., Abdelwahab, M., Bagwell, S., Barney, M., Burkle, E., Hawley, T. & Rains, M. (2022). The effe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human rights practices: Findings from the Human Rights Measurement Initiative's 2021 Practitioner Survey. *Journal of Human Rights*, 21(3),

317-333.

-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020) Statement on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ndemic an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20/1.
- Douglas, M and Aaron Wildavsky, 1982. *Risk and Cultur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ECHR (2023) *Factsheet: COVID-19 health crisis*.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FRA (2022) *SOCIAL RIGHTS AND EQUALITY IN THE LIGHT OF THE RECOVERY FROM THE COVID-19 PANDEMIC*.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 GANHRI, OHCHR & UNDP (2021) COVID-19 AND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OHCHR.
- House of Commons, House of Lords Joint Committee on Human Rights (2020) *The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human rights implications*. The House of Commons: UK.
- Huang, Y., & Zhao, N. (2020).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depressive symptoms and sleep quality during COVID-19 outbreak in China: a web-based cross-sectional survey. *Psychiatry research*, 288, 112954.
-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2022) *Pandemic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 Kim, J., & Lee, J. (2023). The Politics of Quarantine: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Negative Social Affects in the Early Stage of COVID-19 in South Korea. *Korea Observer*, 54(3).
- Knight, K., Han, Hye Jung., Wurth, M., Saadoun, S., Sleaf, Bridget., Cerimovic, E., Margolis, H., Bergsten, S. Seong-Eun., Hardman, N., & Ahmed, A. Kayum. (2023) *The Covid-19 Pandemic: Three Years In*. Human Rights Watch.
- Lombardo, C., Guo, L., Solomon, S., Crepaz-Keay, D., McDaid, S., Thorpe, L., ... & Van Bortel, T. (2023). Inequalities and mental health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in the UK: a mixed-methods exploration. *BMC Public Health*, 23(1), 1830.
- Lupton, D. (Ed.). (1999). *Risk and sociocultural theory: New directions and perspectiv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jumdar, S. (2022) *How COVID-19 Restrictions Affected Religious Groups Around the World in 2020*. Pew Research Center.
- OHCHR & WHO (2020) Interim Guidance COVID-19: FOCUS ON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 OHCHR (2020a) TOPICS IN FOCUS: EMERGENCY MEASURES AND COVID-19.
- OHCHR (2020b) TOPICS IN FOCUS: COVID-19 AND WOMEN'S HUMAN RIGHTS.
- OHCHR (2020c) TOPICS IN FOCUS: COVID-19 AND THE HUMAN RIGHTS OF LGBTI PEOPLE
- OHCHR (2020d) TOPICS IN FOCUS: COVID-19 AND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 OHCHR (2020e) TOPICS IN FOCUS: CIVIC SPACE AND COVID-19.
- OHCHR (2020f) TOPICS IN FOCUS: Business and Human Rights in times of COVID-19.
- OHCHR, Human Rights Treaties Branch (2020) Compilation of statements by human rights treaty bodies in the context of COVID-19.
- Roberts, ME, Brandon MS, and Dustin T. 2014. "stm: R package for structural topic models." *R package* 1:12.
- SHRC (2020) *COVID-19, Social Care and Human Rights: Impact Monitoring Report*. Scottish Human Rights Commission.
- STATES' HUMAN RIGHTS OBLIGATIONS: PRELIMINARY OBSERVATIONS*. AMNESTY International.
- UN (2020) *COVID-19 and Human Rights: We are all in this together*. United Nations.
- Vasak, K. 1977 "Human Rights: A Thirty-Year Struggle: the Sustained Efforts to give Force of law to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ESCO Courier* 30:11, Paris: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WHO (2020a) *Addressing Human Rights as Key to the COVID-19 Response*. World Health Organization.
- WHO (2020b) *COVID-19 YOUTH SURVEY 2020: REPORT*. Global Shapers Community (Copenhagen Hub, Dublin Hub and Harare Hub), IFMSA & HILA Alliance(GAPMIL/UNESCO).
- Wildavsky, A., and Dake, K. 1990. Theories of risk perception: Who fears

what and why?. *Daedalus* 41-60.

Wilkinson, I. 2001. "Social Theories of Risk Perception: At Once Indispensable and Insufficient." *Current Sociology* 49(1): 1-22.

Zinn, J. O. (Ed.). 2009. *Social theories of risk and uncertainty: An introduction*. Malden, MA: John Wiley & Sons.

부록 1: I의 다문화 척도에 활용된 문항 목록

1) 인권 존중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다음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점 척도)

- 1) 본인의 인권
- 2)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 3)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다음 집단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점 척도)

- 1) 여성
- 2) 아동·청소년
- 3) 노인
- 4) 장애인
- 5) 이주민(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2) 권리 존중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가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4점 척도)

- 1) 신체의 자유(불법적인 불심검문, 연행, 구금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
- 2) 사상·양심의 자유
- 3) 종교의 자유
- 4)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
- 5) 집회·결사의 자유
- 6)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 7) 공공 행정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 8)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9)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차별받지 않을 권리)
- 10) 주거권(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
- 11) 사회보장권(빈곤 해결, 소득 보장)
- 12)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돌봄, 요양보호, 활동 지원 등)

- 13) 노동권(일할 권리, 공정한 노동조건 보장, 부당한 해고로부터의 보호)
- 14) 건강권(건강하게 생활할 권리, 큰 경제적 부담없이 병원을 이용할 권리)
- 15) 교육권(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권리)
- 16) 안전권(범죄, 폭력, 사고,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17) 환경권(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18) 문화권(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3) 인권침해 경험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 ① 폭행이나 모욕적 언행
- ② 정치적 의사 표현의 제지, 방해, 비난, 처벌 등
- ③ 종교 선택이나 활동의 자유 제한
- ④ 단체 결성이나 가입의 자유 제한
- ⑤ 집회나 시위의 자유 제한
- ⑥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 강요
- ⑦ 법집행 또는 행정절차에서의 차별적 대우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인권침해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 ① 안전의 위협(질병·감염병 및 자연재해 제외)
- ② 경제적인 이유로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함
- ③ 일터(직장) 또는 일자리와 관련된 부당한 처우를 받음
- ④ 주변 환경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움(소음, 악취, 빛 공해, 일조량, 대기 등)
- ⑤ 편의 시설 부족 또는 거리가 멀어서 문화예술 시설(영화관, 공연장 등) 이용 못 함
- ⑥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에서 원치 않는 사생활 공개나 모욕적 대우를 받음

4) 차별 경험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 2) 임신 또는 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 3) 종교를 이유로
- 4) 사상 또는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로

- 5) 장애를 이유로
- 6)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 7) 직업이나 소득 등 경제적 지위를 이유로
- 8)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이유로
- 9) 학력이나 학벌을 이유로
- 10)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을 이유로
- 11) 키, 몸무게, 외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 12) 미혼(비혼), 이혼, 사별 등 혼인상황을 이유로
- 13) 한부모, 미혼(비혼) 모/부 등 가족상황을 이유로
- 14) 질병 및 병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 15) 출신지역을 이유로
- 16)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5) 지역 인권제도 필요성

귀하는 지금 거주 중이신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조례나 기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인권기본조례
- (2) 학생인권조례
- (3) 지역 인권위원회
- (4) 인권영향평가제도
- (6) 인권제도에 대한 인지

귀하는 우리나라 헌법에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4점 척도)

귀하는 지금 거주 중이신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조례나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4점 척도)

- (1) 인권기본조례
- (2) 학생인권조례

- (3) 지역 인권위원회
- (4) 인권영향평가제도
- (7) 인권 지식

귀하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4점 척도)

귀하는 본인이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4점 척도)

8) 인권 의견

귀하는 다음의 상반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에서 반대 4점 척도)

- (1) 기업들에게 인권 존중 책임 및 구제에 대한 법적 의무 부여
- (2)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 (3) 외국인도 세금 납부시 보편적 사회보장 서비스 대상으로 수용
- (4) 이주노동자가 고용주 동의 없이 일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현재의 고용허가제 개정
- (5)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노동법 관련 조항(규정) 적용
- (6)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 (7) 안전한 임신 유지/종결에 관련된 구체적인 법안 제정
- (8) 노숙자, 장애인,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주거지원(임대주택 등)
- (9) 말기 환자에게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제도 도입
- (10) 말기 환자에게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제도 도입

9) 인권 활동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해소하고자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1) 인권침해 또는 차별 피해자 조언·상담
-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 활동
- 3) 소수자, 약자를 위한 기부

- 4) 인권단체 회원 가입·활동
- 5) 인권문제와 관련한 글쓰기/댓글 달기
- 6) 인권 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
- 7) 온라인 또는 거리에서 인권 캠페인이나 집회

부록 2

지역명	법령명	제정·개정구분	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시행규칙유무	혐오표현 관련 규제	표현의 자유	성별	장애인	다문화
서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제7888호	2021. 3. 25	2021. 3. 25	0	<p>제6조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4항에서 예외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6조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진다.</p>	<p>제7조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p>	<p>제6조 ① 학생은 성별·종교·나이·사회적 신분·출신지역·출신국가·출신민족·언어·장애·용모 등 신체조건·임신 또는 출산·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인종·경제적 자유·피부색·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성적 지향·성별 정체성·병력·징계·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p> <p>제8조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은 장애 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문화가정 학생·아주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예체능학생·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p> <p>제21조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장애 학생·다문화가정 학생·외국인 학생·성소수자 학생 일하는 학생 등</p>	<p>제6조 ① 학생은 성별·종교·나이·사회적 신분·출신지역·출신국가·출신민족·언어·장애·용모 등 신체조건·임신 또는 출산·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인종·경제적 자유·피부색·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성적 지향·성별 정체성·병력·징계·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p> <p>제8조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문화가정 학생·아주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예체능학생·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p> <p>제21조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장애 학생·다문화가정 학생·외국인 학생·성소수자 학생 일하는 학생 등</p>	

											<p>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8조 ⑥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의 인문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일하는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 대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8조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p> <p>제28조 ⑦ 교육감 학교의 실무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하고 경멸할 수 있는 기회를 미연히 그에게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타법개정	조례	제6180호	2023. 8. 1.	2023. 8. 1.	0	제20조 ③ 교육7만 중 시자와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로 차별적 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① 학생은 상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취사항,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7조 ② 교육감과 학교는 빈곤 장애, 다문화 등 가정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① 교육감과 학교는 빈곤 장애, 다문화 가정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① 학생은 상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취사항,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7조 ② 교육감과 학교는 빈곤 장애, 다문화 등 가정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① 교육감과 학교는 빈곤 장애, 다문화 가정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	-														
울산	-														
경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제7593호	2023. 4. 7.	2023. 4. 7.	0	제5조 ③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말이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 ① 학생은 상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	제5조 ① 학생은 상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	제5조 ① 학생은 상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			

한국의 인권통계 2023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과 평가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책을 강구해야 하며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8조 ⑥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전북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타법개정	조례	제5256호	2023. 4. 28.	2023. 4. 28.	X	제17조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③ 학교의 장은 학교 공간의 성 인자적 살계를 통해 성 평등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본교 장애, 다문화가정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38조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본교 장애	제5조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본교 장애, 다문화가정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38조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본교 장애	

											<p>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교부적응 학생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p> <p>제88조 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아니 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 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제정	조례	제275호	2021. 1. 8	2021. 1. 8	0	<p>제6조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p>	<p>제8조 ① 학생은 정당한 사유없이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장애, 용모나 신체조건, 정계, 학업 성적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p>	<p>제6조 ④ 도교육감과 학교장 등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여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p> <p>제8조 ② 도교육감과 학교장 등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p>	

											<p>모나 신체조건 장애 학업 성취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p> <p>제8조 ② 도교육감과 학교장 등은 빈곤 장애 학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운동선수 학교 부적응학생 등 제하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p> <p>제8조 ③ 도교육감과 학교장 등은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p> <p>20조 ② 도교육감과 학교장 등은 빈곤 장애 다문화가정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조손가정 운동선수 학교 부적응학생 등 제하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p> <p>제8조 ⑥ 도교육감과 학교장 등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칙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학 기회 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20조 ② 도교육감과 학교장 등은 빈곤 장애 다문화가정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세종	-											

지역명	법령명	제정 개정구분	종류	공표번호	공표일자	시행일자	시행규칙유무	이주민 (명시된 경우)	북한이탈주민 (명시된 경우)	성소수자	특정종교인	특정지역출신인
서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제7888호	2021. 3. 25.	2021. 3. 25.	0	<p>제28조 ⑥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전입학 기화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8조 ⑦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조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옹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자유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p> <p>제21조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일하는 학생 등 경제적 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8조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일하는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p>	<p>제5조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옹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자유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p> <p>제16조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족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p>	<p>제5조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옹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자유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p>

한국의 인권통계 2023

										학생이라 한대)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 학생의 성적사항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타법개정	조례	제180호	2023. 8. 1.	2023. 8. 1.	0			제20조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②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②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대전	-											
울산	-											
경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7593호	2023. 4. 7.	2023. 4. 7.	0			제5조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제5조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제5조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장차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장차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강원	-										
충북	-										
충남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	조례	제4780호	2020. 7. 10.	2020. 7. 10.	0	<p>제28조 ⑤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인권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교육감, 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정을 강구해야 하며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제28조 ⑥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p>	<p>제5조 ② 학생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년, 나이,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성,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 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장차적 의견, 질병 이력, 실화된 징계, 교육과정 선택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p> <p>제28조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학생, 성소수자 학생, 일하는 학생, 임신출산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라 할 때에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p>	<p>제5조 ② 학생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년, 나이,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성,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 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장차적 의견, 질병 이력, 실화된 징계, 교육과정 선택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p> <p>제5조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관, 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p>	<p>제5조 ② 학생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년, 나이,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 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장차적 의견, 질병 이력, 실화된 징계, 교육과정 선택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p>

한국의 인권통계 2023

										를 적절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 ⑦ 교육감 학교의 장과 교장은 학생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때에도 본인의 의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전북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타법 개정	조례	제5256호	2023. 4. 28.	2023. 4. 28.	X		제6조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일사적 장해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교부작용 학생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하는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제정	조례	제2755호	2021. 1. 8.	2021. 1. 8.	O	제5조 ④ 도교육감과 학교장 등은 일사적 장해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⑤ 도교육감과 학교장 등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	제5조 ④ 도교육감과 학교장 등은 일사적 장해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① 학생은 정당한 사유없이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장애, 용모나 신체조건, 장애, 학업성적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15조 ① 학생은 세계관, 인성관 또는 가족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8조 ① 학생은 정당한 사유없이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장애, 용모나 신체조건, 장애, 학업성적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p>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색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 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세종	-											

한국의 인권통계 2023

| 인쇄일 | 2023년 11월 30일

| 발행일 | 2023년 11월 30일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문의전화 | 02)2125-9797

| F A X | 02)2125-0913

ISBN : 978-89-6114-390-5 93310 비매품